

檔 號	/	/	保存 年限
--------	---	---	----------

駐韓國代表處經濟組 函

機關地址：03186首爾市鍾路區世宗大路
149號光化門大廈6樓
承辦人：林陳洲
電話：82-2-399-2756
傳真：82-2-732-9874
Email：korea@moea.gov.tw

受文者：經濟部國際貿易局

發文日期：中華民國108年3月29日
發文字號：韓經字第1080329041號
速別：最速件
密等及解密條件或保密期限：
附件：如文(另以電子郵件傳送)

主旨：有關韓國決定對我國、中國、日本及義大利產製「格拉新紙」(Glassine Paper)展開反傾銷調查事，續報請鑒察。

說明：

- 一、相關文號：鈞局本(108)年3月28日貿雙一字第1087008774號函，本組本年3月26日韓經字第1080326023號函諒蒙鈞察。
- 二、頃接獲韓國貿易委員會(KTC)來函略以，該委員會於本年3月27日決定對我國、中國、日本及義大利產製「格拉新紙」(Glassine Paper)展開反傾銷調查，韓方依「1994年關稅暨貿易總協定第6條執行協定」(反傾銷協定)第12.1條及韓國關稅法施行令第60.3條規定正式通知我方。
- 三、本案涉案產品稅則號碼為「韓國調和關稅系統」(Harmonized Tariff System of Korea, HSK) 4806.40.1000及4806.40.9000，產品範圍及管制分類號碼(Control Code Number, CCN) 之定義均為暫定(詳附件產品範圍指南)，利害關係人可於本年4月24日前向該委員會提出意見。
- 四、本案指定受調廠商為我國之中華紙漿股份有限公司及中國

國際貿易局 108/03/31



1087009256

韓國貿易委員會第 2019-6 號公告中譯資料

對臺灣、中國、日本及義大利產製格拉新紙 (Glassine Paper)
啟動傾銷事實及國內產業損害調查公告

貿易委員會決定將依關稅法施行令第 60 條第 3 項規定，對臺灣、中國、日本及義大利產製格拉新紙 (Glassine Paper) 啟動傾銷事實及國內產業損害調查。

2019 年 3 月 27 日

貿易委員會 委員長

一、申請人及申請日期

(一)申請人：Hansol Paper Co., Ltd.

(二)申請日期：2019 年 2 月 8 日

二、調查內容

(一)調查對象產品

1. 名稱：格拉新紙 (Glassine Paper)

- 調查範圍：塗抹顏料及黏結劑後，經超級壓光 (Super-calendering)過程提高透明度之特殊紙，包含利用相同原料及生產工程，但工程條件不同之其他透明光澤紙及半透明光澤紙。

- 稅則分類：HSK 4806.40.1000、4806.40.9000

* 上述稅則號碼僅供為參考，未來將依據調查對象產品之範圍、物理特性及用途，可追加或調整。

2. 利害關係人自此公告公布日起 4 週以內，可向貿易委員會提交產品調查範圍及管制分類號碼 (Control Code Number, CCN) 相關意見，貿易委員會可與申請人協議調整產品調查範圍。

(二) 調查對象廠商

1. 傾銷事實調查

(1) 將依「WTO 反傾銷協定」第 6.10 條及「關稅法施行令」第 12 條第 1 項規定，使用進出口通關資料篩選調查對象供應商。

- 調查對象供應業商

臺灣：Chung Hwa Pulp Corp.

中國：UPM Specialty Papers

日本：Oji F-Tex Co., Ltd. / Japan Pulp & Paper

義大利：Cham Paper Group Italia S.p.A. /

Sappi Italy Operations S.p.A.

(2) 若上述調查對象供應商接受調查，或未被選為調查對象之供應商自願接受調查，自出口國政府及韓國貿易委員會取得「參與調查申請書」後，須於本公告公布日起 3 週以內向韓國貿易委員會提交「參與調查申請書」。

- 若未選為調查對象之供應商自願接受調查，向韓國貿易委員會提交「參與調查申請書」，且貿易委員會接受申請，將依「關稅法施行令」第 65 條第 2 項規定適用個別傾銷差率，若貿易委員會不接受其申請，則適用其他供應商傾銷差率。
- 未被選為調查對象供應商之供應商及在調查期間以後對韓國出口之上述國家新供應商等「其他供應商」，將依「關稅法施行令」第 65 條第 2 項規定適用加權平均傾銷差率。

2. 國內產業損害調查

- 國內同種產品之生產商、調查對象產品進口商、需求商、流通商及海外供應商等利害關係人。

(三) 調查對象期間

1. 傾銷事實調查：2017 年 10 月 1 日至 2018 年 9 月 30 日（1 年）

- 但考慮申請人與被控訴人意見、調查簡易度、發現新資料等，可以調整期間。

2. 國內產業損害調查：2015 年 1 月 1 日至 2018 年 12 月 31 日（4 年）

- 必要時可將調查期間延長至國內產業損害裁定日前之可利用

資料期間」。

三、未來調查計畫

(一) 調查日程

1. 啟動調查日：本公告公布日
2. 初步調查：自本公告公布日起 3 個月以內
3. 最終調查：自貿易委員會初步調查結果提交日翌日起 3 個月以內

* 初步調查及最終調查期間可以各延長 2 個月。

(二) 調查程序

1. 問卷調查

- 貿易委員會為調查傾銷事實及國內產業損害事實，展開初步調查後，向利害關係人、調查對象供應商及供應國政府寄送調查問卷。
- 將依「關稅法施行令」第 64 條第 1 項規定，賦予調查對象供應商 40 天以上之答復期限。

2. 實地調查

- 針對提交調查問卷等協助貿易委員會調查程序之利害關係人，為驗證提交資料可實施實地調查。
- 若外國調查對象供應商及出口國政府同意時，將依需求計畫實施實地調查。

3. 召開公聽會：在最終調查期間，公布包含公聽會日期、地點及參加對象等內容之公聽會計畫。

4. 利害關係人會議：貿易委員會可與申請人及被控訴人召開會議，就設定調查對象產品範圍及計算傾銷差率等議題進行討論。

四、利害關係人參與調查程序

- (一) 除申請人外之其他國內生產商、出口國公協會或團體、國內進口商及需求商等利害關係人，如有意願參與調查程序，須自本公告公布日起 3 週以內向貿易委員會（傾銷調查課及產業損害

調查課) 提交可證明利害關係人之文件，申請參與調查程序。

(二)未向貿易委員會申請參與，或貿易委員會未接獲申請書資料之利害關係人，可能無法獲得貿易委員會提供之調查問卷及公聽會等調查相關資訊。

(三)申請參與調查之利害關係人可以書面提交調查相關意見，惟倘其意見及主張無實際證據，將無法作為貿易委員會考慮之對象。

(四)相關利害關係人可閱覽利害關係人向貿易委員會所提交之資料(營業機密資料除外)。

五、使用允許利用之資料

(一)若利害關係人在期限內不提交相關資料，或拒絕、妨礙調查以及因其他事由無法調查或驗證資料時，將依「關稅法施行令」第64條第5項規定，使用允許利用之資料，決定其傾銷差率，及是否造成國內產業損害。

(二)提交資料單位

提交單位	貿易委員會產業損害調查課	貿易委員會傾銷調查課
地址	Rm. 705, 13-1dong, Government Complex-Sejong, 402 Hannuri-daero, Sejong-si, Korea	
電話	044-203-5861	044-203-5873
傳真	044-203-4815	044-203-4815

* 啟動台灣、中國、日本及義大利產製格拉新紙傾銷事實及國內產業損害調查之檢討報告(公開版本)及「調查參與申請書」與「調查對象範圍指南」，可參照貿易委員會官網(www.ktc.go.kr)之貿易救濟>貿易救濟調查進行>反傾銷調查。

공

고

公 告

● 무역위원회공고제2019-6호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한솔제지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2019년 2월 8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글라신지 (Glassine paper)

- 조사범위: 안료와 바인더 등을 도포한 후 슈퍼캘린더링 공정을 거쳐 투명도를 높인 종이로, 원
재료 및 생산공정은 유사하나 공정조건을 달리하여 생산한 그 밖의 투명광택지나 반투명광택지
를 포함함

- 관세품목분류: HSK 4806.40.1000, 4806.40.9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
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대만) 청화펄프(Chung Hwa Pulp Corp.)

- (중국) 유피엠(UPM Specialty Papers)

- (일본) 오지 에프(Oji F-Tex Co., Ltd.), 제펜 펄프(Japan Pulp & Paper)

- (이탈리아) 참페이퍼(Cham Paper Group Italia S.p.A.), 사피(Sappi Italy Operations S.p.A.)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17년 10월 1일 ~ '18년 9월 30일(1년)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15년 1월 1일 ~ '18년 12월 31일(4년)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	
- 전 화	044-203-5861	044-203-5873
- FAX	044-203-4815	044-203-4815

*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 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Glassine Paper)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2019년 2월

한솔제지주식회사

목 차

I. 조사신청개요

1. 신청취지	- 2 -
2. 신청인	- 3 -
3. 피 신청인	- 4 -
4. 조사신청물품	- 4 -
5. 국내시장현황	- 5 -

II.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에 관한 사항

1. 조사신청물품	- 9 -
2. 국내생산품	- 14 -
3.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비교	- 16 -

III. 신청인이 신청자격 유무에 관한 사항

1.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라는 사실	- 17 -
2. 국내산업의 대표성기준 충족 사실	- 17 -
3. 신청인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사실 유무	- 17 -
4.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국내생산자의 특수 관계 사실 유무	- 17 -

IV.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증빙에 관한 사항

1. 덤핑수입사실에 관한 증빙	- 18 -
2. 조사신청물품 수입량의 누적적 평가	- 35 -
3.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증빙	- 37 -
4. 국내산업의 피해우려에 관한 증빙	- 50 -
5.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에 관한 증빙	- 54 -
6. 조사신청물품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빙	- 54 -

< 비공개정보 목록 및 비공개사유 >	- 66 -
< 증빙자료 목록 >	- 73 -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Glassine Paper)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본 신청인은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로부터 글라신지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 및 별채 부록 첨부서류에는 본인의 제조원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비밀로 취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2 월

신 청 인 : 한 술 제 지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이 상 훈 (인)

대 리 인 : 법 무 법 인 출 립
변 호 사 김 태 우 (인)
더인터내셔널트레이드컨설팅
공인회계사 김 성 태 (인)
공인회계사 정 채 원 (인)

무 역 위 원 회 귀중

I. 조사신청 개요

1. 신청취지

한술제지주식회사(이하 “신청인”)는 국내에서 조사신청물품과 동종물품인 글라신지를 생산하는 유일한 생산자입니다.

신청인이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로부터 불공정한 저가 수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물품은 글라신지로 주로 식음료, 생활용품, 때배 등 다양한 라벨 스티커 뒷면 대지용 및 초콜릿, 비스킷 등 여러 가지 식품, 담배, 약품, 금속 부품 등에 대한 보호 포장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최근 피신청인들은 전 세계적 인 제지 수요 감소와 더불어 자국 내 판매 및 수출 실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사신청물품과 같은 특수종이를 수출국내의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신청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펄프가격이 직전년도 동기 대비 25% 증가하였고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량은 28%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매출수입 및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영업 손실이 증가하는 등 막대한 산업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불공정한 덤핑수출이 지속되는 경우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생산중단이 불가피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덤핑률에 상당하는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 신청인

(2017년도 기준)

신청인	한솔제지주식회사
회사설립연월일	1965년 1월 19일
대표자	이상훈
본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B동
공장	장항공장: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49
주 소	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50
	천안공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새종로 4186
공장	신당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126번길 60 (신일동)
자본금	119,013 백만 원
주요주주 및 지분율	한솔홀딩스(주) 30.5%, KB자산운용 8.3%, 국민연금 7.0%, 우리사주조합 1.8%
총매출액	1,539,435 백만 원
조사신청물품 매출액	[****] 백만 원
주요생산제품	클라신지, 인쇄용지, 산업용지, 특수지
종업원수	1,088명

- [첨부 1] 대리인 선임장 사본 각 1부
 [첨부 2] 신청인의 주요 연락처 각 1부
 [첨부 3] 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첨부 4] 신청인의 주주명부 사본 각 1부
 [첨부 5] 신청인의 이사회 명부 사본 각 1부
 [첨부 6] 신청인의 감사보고서 각 1부

3. 피 신청인

공급국	공급자명(수출자 생산자)	덤핑률
대만	Chung Hwa Pulp Corp.(주1)	28.2 %
중국	UPM Specialty Papers	18.4 %
일본	Oji F-Tex Co.,Ltd.	58.5 %
이탈리아	Cham Paper Group Holding AG (주2)	55.5 %

(주1) Chung Hwa는 Yuen Foong Yu Group의 제지 및 펄프부문과 2012년에 합병하였으며 Yuen Foong Yu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

(주2) 벨기에에 본사를 둔 Sappi Europe S.A의 이탈리아 소재 자회사임.

신청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상기 4개사가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시장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첨부 7] 피 신청인의 연락처

4. 조사신청물품

가. 조사신청물품명

○품명: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클라신지(Classine Paper)

○관세분류번호¹⁾ 및 기본관세율

관세분류번호	품명	기본 관세율	WTO 협정관세율
4806-40-1000	클라신지	8%	0%
4806-40-9000	기타	8%	0%

[첨부 8] 조사신청물품 해당 HS코드(한국기준, 2018년 개정)에 대한 해설

1) 한국 및 유럽의 관세분류번호는 클라신지와 기타의 투명팽대지나 반투명팽대지를 분리하고 있으나 일본, 중국 및 대만의 관세분류번호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나. 조사신청물품의 범위(정의)

조사신청물품의 범위에는 글라신티 및 그밖의 투명광택지나 반투명광택지(Glassine and other glazed transparent or translucent paper)가 모두 포함됩니다.

조사신청물품은 바인더와 안료 등의 물질을 도포한 후 슈퍼캘린더 공정을 거쳐 투명도를 높인 종이로, 원재료 및 생산공정이 유사하나 공정조건(롤 온도, 압력 등)을 달리하여 생산한 그 밖의 투명광택지²⁾나 반투명광택지를 포함합니다.

조사신청물품은 투명도, 평활도, 유분흡착도 등에 따라 라벨용 또는 기타 보호포장용으로 사용됩니다.

5. 국내시장현황

가. 수입자 및 수요자

조사신청물품의 주요 수입자는 [*****]와 [*****]등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입장에서 정확한 수입자별 수입량은 파악할 수 없으나, 신청인의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주요 수입자별 수입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수입자>

2) 미주지역은 글라신티와 원재료 및 생산공정이 흡사하나 공정조건을 달리하여 생산한 제품을 SKK지 (Super Calendered Kraft Paper)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단위: 톤)

수 입 자	조사대상 기간 수입량	조사대상 기간 수입비중(%)
[*****]	[*****]	[**]%
[*****]	[*****]	[**]%
[*****]	[*****]	[**]%
[*****]	[*****]	[**]%
기타	[*****]	[**]%
전체	22,677	100 %

자료: 신청인 내부 자료

조사신청물품은 물성과 규격 특성상 주로 식음료, 생활용품, 택배 등 다양한 라벨 스티커 뒷면 매지용 및 포장용으로 사용되며 신청인의 내부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주요 실수요자별 수요량 및 수요량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수요자>

(단위: 톤)

수 요 자	조사대상 기간 수요량	조사대상기간 수요량비중(%)
[*****]	[*****]	[**]%
[*****]	[*****]	[**]%
[*****]	[*****]	[**]%
[*****]	[*****]	[**]%
[*****]	[*****]	[**]%
[*****]	[*****]	[**]%
기타	[*****]	[**]%
전 체	[*****]	100%

자료: 신청인 내부자료

[첨부 9] 주요 수입자 / 수요자 연락처

II.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에 관한 사항

1. 조사신청물품

가.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조사신청물품은 글라스지와 그밖의 투명광택지나 반투명광택지 (Glassine and other glazed transparent or translucent paper)로 라벨용 또는 보호포장 (식품, 약품 등)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조사신청물품은 바인더와 안료 등의 물질을 도포한 후 슈퍼캘린더 공정을 거쳐 투명도를 높인 종이로, 원재료 및 생산공정이 유사하나 공정조건 (롤 온도, 압력 등)을 달리하여 생산한 그 밖의 투명광택지⁴⁾나 반투명광택지를 포함합니다.

조사신청물품은 표면이 매끄럽고 투명한 박엽지로서 평량(Basis weight)⁵⁾, 두께(Thickness)⁶⁾ 및 수분함수율(Moisture)⁷⁾, 평활도(Smoothness)⁸⁾, 유분흡착도(Oil Absorbency)⁹⁾ 등 물리적 특성 및 투명도(Transparency)¹⁰⁾와 같은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신청물품은 투명도가 높아 자동라벨기계 등에 사용이 가능한

4) 비주지역은 글라스지와 원재료 및 생산공정이 흡사하나 공정조건을 달리하여 생산한 제품을 SCK지 (Super Calendered Kraft Paper)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5) 평량: 종이규격의 구성하는 기본특성인 평량은 단위면적당 종이의 무게로 보통 1㎡당 무게를 의미하며 GSM(g/㎡)로 표기됨.

6) 두께: 종이 한 장의 높이를 말하는 두께는 두께측정기에서 0.05kgf/cm²의 압력으로 측정하며, 단위는 1/1,000mm로 표시함.

7) 수분함수율은 종이 중량 대비 수분의 함유중량비율(%)로 측정됨

8) 평활도: 종이표면이 얼마나 평평하고 매끄러운가를 나타내며 거칠음도(Roughness)와 상반된 개념임.

9) 유분흡착도: 종이에 유분이 흡착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Cobb Unger Method로 측정함.

10) 투명도: 종이의 투명한 정도로 종이에 투과한 빛의 양을 입사광의 양으로 나누어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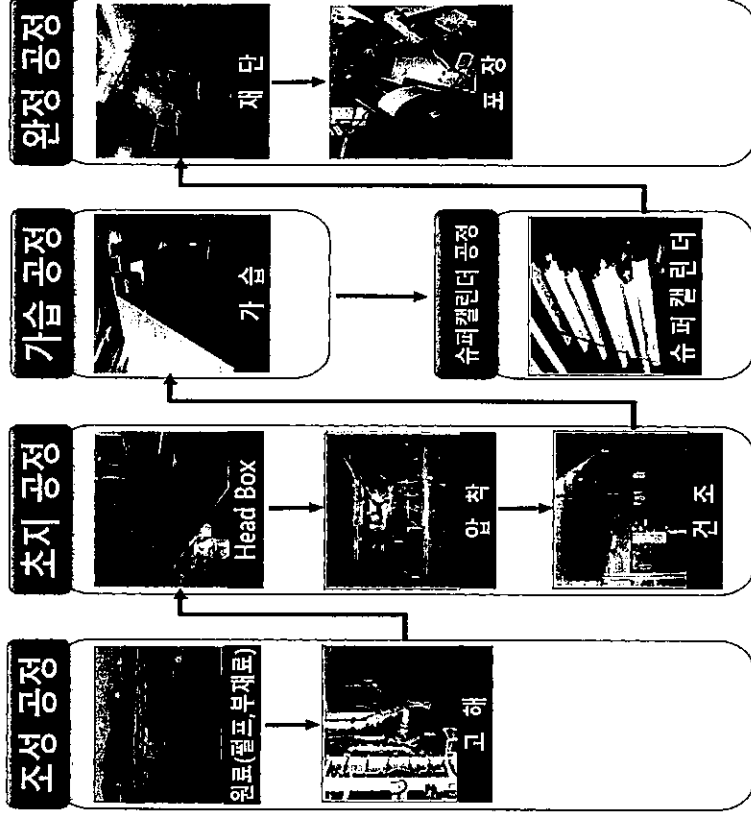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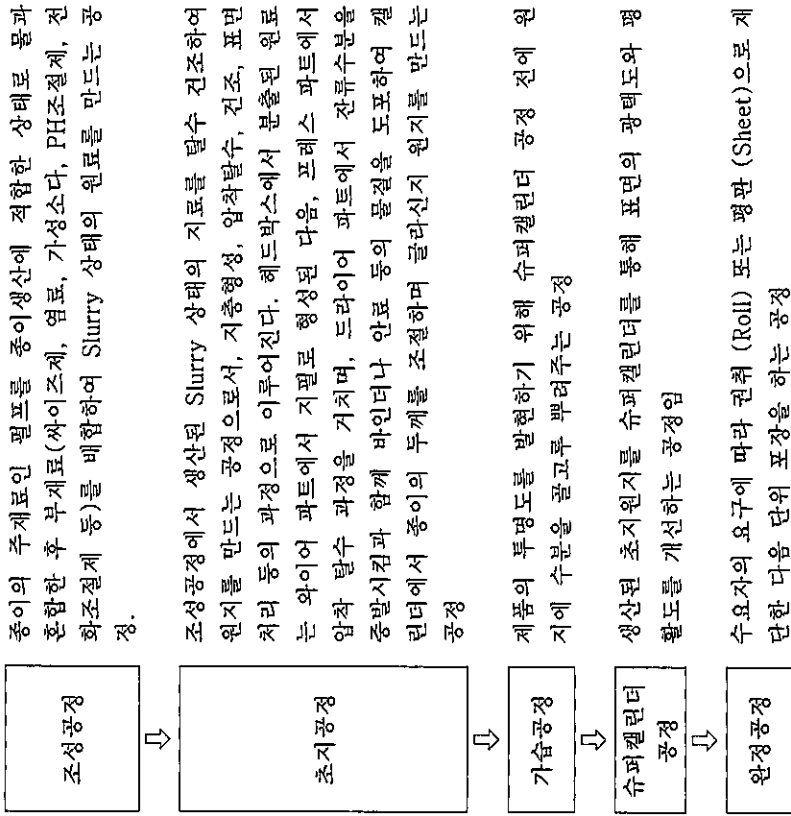
종이로서 식음료, 생활용품, 택배 등 다양한 라벨스티커 뒤편 대지용으로 사용되며 초콜릿, 비스킷 등 여러 가지 식품, 담배, 약품, 금속 부품 등에 대한 보호 포장에 사용됩니다.

특기할 사항으로 종이제품은 용도별/수요자별로 요구되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철강제품과 달리 표준 산업 규격(KS, JIS 등)을 따르기 보다는 각각의 생산자가 정한 브랜드별 제품 특성을 수요자들이 선택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제조자의 브랜드별 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국의 표준 산업 규격에서는 종이제품이 요구하는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시험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수요자는 동 시험방법에 따른 브랜드별 물성표 또는 제품소개자료¹¹⁾를 기준으로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글라스지라 하더라도 판매상 또는 수입편장에는 브랜드명과 규격만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1) 중빙목록 [첨부 12]의 피 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 물성표 및 제품소개자료

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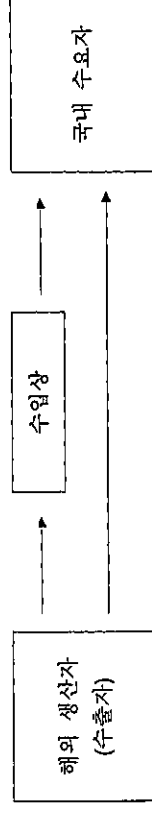
다.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조사신청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두께편차, 수분함수율, 투명도, 평활도 및 유분 함착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동종물품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저가로 수입된 조사신청물품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이는 곧 국내에서 생산된 동종물품과 조사신청물품 사이에 품질의 편차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신청물품의 품질은 국내생산품과 유사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의 품질 평가 역시 무차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신청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국내시장에서 상호 대체적으로 사용되며, 조사신청물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이 급감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국내 수요자의 제품선택은 궁극적으로 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유통경로

조사신청물품의 유통경로는 국내 수입상이 해외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수요자가 직접 해외 수출자로부터 수입합니다.



2. 국내생산품

가. 국내동종물품명 및 정의

신청인의 국내동종물품명 및 정의는 조사신청물품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상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3] 신청인의 국내생산품 소개자료

나.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는 조사신청물품과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조사신청물품의 해당 내용 및 신청인의 제품소개자료 [첨부 13] 및 품질기준표준서[첨부 13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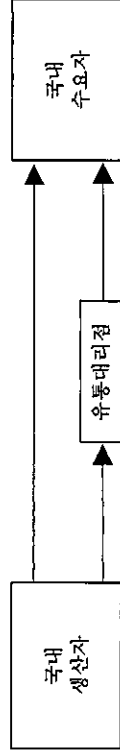
신청인의 국내생산품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은 피 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과 동일합니다.

라.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신청인의 국내생산품은 품질 면에서 조사신청물품과 특이할 만한 차이가 없으며, 소비자 평가 또한 유사하기 때문에 상호 대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 유통경로

국내생산품의 유통경로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생산품을 생산하여 직접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유통대리점을 통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비교

가. 물리적 특성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기술연구소가 국내시장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 등을 비교 평가한 결과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든 항목에 걸쳐 동등·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첨부 13B] 클라신지 경쟁사 품질분석 비교표

나.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신청인의 기술연구소의 클라신지 경쟁사 품질분석 비교표 [첨부 13B]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이 동등·유사하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도 소비자의 구매를 결정짓는 차별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생산품을 대체했다는 점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 무차별하다는 것 이외에도 가격이 조사신청물품의 구매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다.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 간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III. 신청인이 신청자격 유무에 관한 사항

1.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라는 사실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과 동종물품인 글라신지의 국내 유일한 생산자로서, 관세법 제5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 5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국내산업의 대표성기준 충족 사실

신청인은 국내 유일한 생산자로서,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의 수입 사실 유무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첨부 14] 신청인의 확인서

4. 조사신청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국내생산자간의 특수관계 사실 유무

신청인과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 관계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조사신청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첨부 14] 신청인의 확인서

IV.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증빙에 관한 사항

1. 덤핑수입사실에 관한 증빙

조사신청물품의 수출자별 수출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입증자료 입수가 곤란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수입 가능한 조사신청물품의 수출국별로 수입 가능한 정상가격과 덤핑조사 대상기간¹²⁾ 평균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덤핑수입 사실에 관한 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일 본

<정상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톤)

정상가격	조 정 사 항				조정된 정상가격
	국내운임	해상운임	수출비용	해상보험료	소계
1,986.7	21.5	***]	16.1	***]	***]
					*****]

(1) 정상가격

본 조사신청물품은 라벨지나 포장용 자재로 사용되는 중간재로서 제조업체에 직접 판매되는 중간제이고 수요가 많지 않은 특수지로서 가격정보 지에 공개되는 자료가 없으며 현지 지류 유통상과 코트라¹³⁾에 의뢰하여 일 본 내 내수가격을 조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관련증빙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¹²⁾ 덤핑조사대상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로 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음.

¹³⁾ 신청인이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 조사신청물품에 대한 현지 내수가격 조사원조 요청(첨부 32) 참조.) 하였으나 해당 제품은 중간재로 유통가격은 가격 입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첨부 33) 참조.)

신청인은 이러한 시장상황이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국내생산 물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덤핑조사 대상기간 중 일본의 제3국 수출 중 수출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으로 수출한 평균수출가격(JPY 219.4/Kg)에 평균환율(JPY110.4/US\$)을 적용하여 조정 전 정상가격 (US\$1,986.7/톤)을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15] 일본산 조사신청물품의 월별 중국수출가격

(2) 조정사항 - 수출 국내운송비용

국내운송비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 (일본)¹⁴⁾에서 산정한 수출을 위한 국내운송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트럭 당 국내운송비 (US\$ 323)를 운송중량 (15톤)¹⁵⁾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16]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일본)

(3) 조정사항 - 해상운임

해상운임은 신청인의 거래처로부터 입수한 [*****]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17] 해상운임 입증자료

(4) 조정사항 - 수출비용.

¹⁴⁾ World Bank는 전세계 무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무역에 필요한 국가별 정보(Doing Business)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국가별 수출입과 관련된 비용 및 소요시간에 대한 정보(Trading Across Border)에서 다루고 있음.

¹⁵⁾ World Bank는 운송비를 15톤 기준으로 조사함(A standardized shipment of 15 metric tons of containerized auto parts (HS 8708))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 (일본) (첨부-16 참조)에서 산정한 상하역로, 부두사용료 등 수출비용(US\$ 191) 및 통관료 및 수출서류 작성비용(US\$ 50)을 운송중량 (15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조정사항 - 해상보험료.

해상보험료는 수출금액의 [***]%¹⁶⁾로 산정하였습니다.

<덤핑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톤)

덤핑가격	조 정 사 항				조정된 덤핑가격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국내운임	수출비용	
1,262.9	[***]	[***]	21.5	16.1	[***]
					[*****]

(1) 덤핑가격

조정 전 덤핑가격은 조사대상기간 중 일본산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금액 (US\$ 2,681천)과 수입중량 (2,123톤)을 기준으로 평균수입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10] 관세청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통계자료

(2) 조정사항 - 해상운임

해상운임은 퍼 신청인의 생산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JIFU현과 근접한 일본 Tokyo항과 부산항의 해상운임 요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¹⁶⁾ 해상보험요율 = CIF × 부보율([***]% × 보험요율([***]%로 산정되었으며 보험료율은 신청인이 적용하는 기본요율[첨부-16A 참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첨부 17] 해상운임 입증자료

(3) 조정사항 - 수출 국내운송비용

국내운송비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 (일본)에서 산정한 수출을 위한 국내운송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트럭 당 국내운송비 (US\$ 323)를 운송중량 (15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조정사항 - 수출비용.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 (일본) (첨부-16 참조)에서 산정한 상하역료, 부두사용료, 통관료등 수출비용(US\$ 191) 및 수출서류 작성비용(US\$ 50)을 운송중량 (15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조정사항 - 해상보험료.

해상보험료는 수출금액의 [***%]¹⁷⁾로 산정하였습니다.

<덤핑률 산정>

(단위: US\$/톤)

조정된 정상가격(a) [****]	조정된 덤프가격(b) [****]	덤프차액 (c=a-b) [****]	과세가격 (d) 1,262.9	덤프률 (e=c/dx100) 58.5%
--------------------------	--------------------------	---------------------------	------------------------	-----------------------------

17) 해상보험료율 = CIF x 부보율([**])% x 보험요율([**])%로 산정되었으며 보험료율은 신청인이 적용하는 기본요율[첨부-16A 참조]를 적용하였습니다.

2) 중국

<정상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톤)

정상가격 [****]	조 정 사 항			조정된 정상가격 [****]
	국내운송비		소계	
	11.9		11.9	

(1) 정상가격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의 중국시장 [*****]에 한국시장에 주로 수출되는 클라신지 [*****] 직접 입수한 중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조정 전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중국 현지 무역상을 통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은 없었다고 합니다.¹⁸⁾

동 중국판매 가격이 증치세를 포함한 도착도 가격이기 때문에 국내판매가격(CNY [****]/톤)에 조사대상기간 평균환율(CNY 6.53/US\$)을 적용하고 증치세(16%)¹⁹⁾를 제외한 조정 전 정상가격(US\$ [****]/톤)을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18] 중국 국내 판매가격 입증자료

(2) 조정사항 - 국내운송비.

18) 현지 유통상을 통한 가격 조사 확인서 [첨부 18A] 참조.

19) 중국정부는 2018년 5월 기준으로 증치세율을 17%에서 16%로 인하하였기 때문에 16%를 적용함.

주요 수출자인 [*****]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운송비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 (중국 상하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출을 위한 국내운송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트럭 당 국내운송비(US\$ 179)를 운송중량 (15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19]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중국, 상하이)

<덤평균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톤)

덤평균가격	조 정 사 항					조정된 덤프가격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국내운임	수출비용	증치세	
1,377.0	[***]	[***]	11.9	20.3	219.7	[***]
						[*****]

(1) 덤프가격

조정 전 덤프가격은 중국내 국내판매 가격정보 입수 시점과 가장 근접한 2018년 9월의 중국산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금액(US\$ 481천)과 수입중량 (349.3톤)을 기준으로 본당 평균수입가격(US\$ 1,377.0/톤)을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10] 관세청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통계자료

(2) 조정사항 - 해상운임

해상운임은 피 신청인의 생산공장이 [*****] 중국 Shanghai항과 부산항의 해상운임 요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17] 해상운임 입증자료

(3) 조정사항 - 해상보험료.

해상보험료는 수출금액의 [**]%²⁰⁾로 산정하였습니다.

(4) 조정사항 - 수출 국내운송비용

국내운송비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 (중국, 상하이) (첨부-19 참조)에서 산정한 수출을 위한 트럭당 국내운송비(US\$ 179)를 운송중량 (15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조정사항 - 수출비용.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 (중국, 상하이)(첨부-19 참조)에서 산정한 상하역료, 부두사용료등 수출비용(US\$ 275) 및 통관료 및 수출서류 작성비용(US\$ 30)을 운송중량 (15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6) 조정사항 - 환급 불가 증치세

중국은 조사신청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매입증치세(16%)²¹⁾에 대하여 전액 환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가격에서 동 증치세 포함금액(16%)을 차감하였습니다.

²⁰⁾ 해상보험료율 = CIF × 부보율([**])% × 보험요율([**])%로 산정되었으며 보험료율은 신청인이 적용하는 기본요율(첨부-16A 참조)를 적용하였습니다.

²¹⁾ 중국정부는 2018년 5월 1일 기준으로 증치세율을 17%에서 16%로 인하하였기 때문에 16%를 적용함.

[첨부 20] 글라신지 수출 증치세 환급관련 규정

<덤핑률 산정>

(단위: US\$/톤)

조정된 정상가격(a) [****]	조정된 덤핑가격(b) [****]	덤핑차액 (c=a-b) [****]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18.4%
			1,377.0	

3) 이탈리아

<정상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톤)

정상가격	조정사항				조정된 정상가격
	국내운임	해상운임	수출비용	해상보험료	
1,980.9	81.7	0.0	0.0	0.0	81.7
					1,899.2

(1) 정상가격

본 조사신청물품은 라벨지나 포장용 자재로 사용되는 중간재로서 제조업체에 직접 판매되는 중간재이고 수요가 많지 않은 특수지로서 가격정보지에 공개되는 자료가 없으며 현지 지류 유통상과 코트라에 의뢰하여 이탈리아 내 내수가격을 조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관련증빙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시장상황이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국내생산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덤핑조사 대상기간 중 이탈리아의 조사신청물품의 제3국 수출 중 수출물량이 가장 많은 국가인 독일에 수출한 평균가격(Euro 1.664/Kg)에 평균 환율(Euro 0.84/US\$)을 적용하여 조정된 정상가격(US\$1,980.9/톤)을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21] 이탈리아산 조사신청물품의 독일수출가격

(2) 조정사항 - 수출 국내운송비용

국내운송비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이탈리아)에서 산

정한 이탈리아부터 독일과 인접한 오스트리아까지의 운송비를 기준으로 트럭 당 국내운송비(US\$ 1,225)를 운송중량 (15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22]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이탈리아)

(3) 조정사항 - 해상운임

상기에서와 같이 이탈리아에서 독일과 인접한 오스트리아까지 육상운송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상운임은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4) 수출부대비용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이탈리아)(첨부-22 참조)에 이탈리아 자료가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EU역내 수출을 기준으로 수출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비용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5) 조정사항 - 해상보험료.

해상운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상보험료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덤핑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톤)

덤핑가격	조 정 사 항				조정된 덦핑가격
	해상운임 [***]	해상보험료 [***]	국내운임 0.0	수출비용 11.6	소계 [***]
1,277.3					[****]

(1) 덦핑가격

조정 전 덦핑가격은 조사 대상기간 중 이탈리아산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금액(US\$ 1,792천)과 수입중량 (1,403톤)을 기준으로 평균수입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10] 관세청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통계자료

(2) 조정사항 - 해상운임

해상운임은 피 신청인의 공장과 가장 인접한 이탈리아 베니스항과 부산항의 해상운임 요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17] 해상운임 입증자료

(3) 조정사항 - 수출 국내운송비용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이탈리아) (첨부-22 참조)에서 산정한 수출을 위한 트럭 당 국내운송비가 독일수출을 위한 운송비 기준으

로 작성되었으며 신청인이 이탈리아 국내운송비 자료를 입수할 수가 없어서 보수적으로 국내운송비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4) 조정사항 - 수출비용.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이탈리아)(첨부-22 참조)에 이탈리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OECD High Income 국가의 평균 상하역료, 부두사용료, 통관료 등 수출비용(US\$ 139.1) 및 수출서류 작성 비용(US\$ 35.2)을 운송종량 (15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조정사항 - 해상보험료.

해상보험료는 수출금액의 [***]%(22)로 산정하였습니다.

<덤핑률 산정>

(단위: US\$/톤)

조 정 된 정상가격(a)	조 정 된 덤프가격(b)	덤프차액 (c=a-b)	파세가격 (d)	덤프률 (e=c/dx100)
1,899.2	[****]	[****]	1,277.3	55.5%

22) 해상보험료율 = CIF × 부보율([***])% × 보험료율([**])%로 산정되었으며 보험료율은 신청인이 적용하는 기본요율[첨부-16A 참조]를 적용하였습니다.

4) 대만

<정상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톤)

정상가격 [****]	조 정 사 항			조정된 정상가격 [****]
			소계	

(1) 정상가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조사신청물품은 중간재로서 제조업체에 직접 판매되는 중간재이고 수요가 많지 않은 특수지로서 가격정보지에 공개되는 자료가 없으며 현지 지류 유통상과 코트라에 의뢰하여 대만 내수가격을 조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관련증빙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시장상황이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국내생산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은 대만산 조사신청물품의 정상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대만내의 판매가격 대신 구성가격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구성가격은 통상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기타의 비용 및 이윤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톤)

적	요	단가	환산계수	투입단가	비고
재료비	Soft Pulp	***	***%	***	(주1)
	Hard Pulp	***	***%	***	
	부재료비		***%	***	(주2)
Utility	포장재료비		***%	***	
	전력	***	81.8%	***	
	Steam	***	64.2%	***	(주3)
노무비		***	45.7%	***	
감가상각비		***	***%	***	(주4)
기타경비			***%	***	(주5)
제조원가				***	
판매비 및 제무비용			7.4%	***	(주6)
이윤			4.3%	***	
구성가격				***	

(주1) 조사신청물품은 SOFT 및 HARD 펄프를 사용하고 있는 바 구매단가는 RISI²³⁾가 발표한 덤핑조사 대상기간 중 대만수입의 평균수입가격²⁴⁾에 수입부대비용²⁵⁾을 가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신청물품의 1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펄프소요량은 신청인이 2017년 신청인의 실제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23] 동아시아 펄프 수입가격(RISI)

[첨부 24]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대만)

(주2) 부재료비 및 포장비는 주요재료인 펄프 재료비와 연동하여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2017년 생산실적을 토대로 부재료 및 포장재료비가 펄프재료비에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신청인의 2017년 생산실적을 토대로 조사신청물품 1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노무비, 전기료 및 중기사용료 (대부분 [*****])를 한국과 대만간의 노무비, 전기료 및 디젤유 차이비율²⁶⁾을 적용하여 산

23) RISI(www.risiinfo.com)는 Forest 산업 (PULP 및 종이제품)의 저렴한 시장조사전문기관이다.

24) RISI가 발표한 대만이 포함된 East Asia 수입가격을 적용

25) World Bank-Doing Business 2019(대만)에서 발표한 국내 운송비용(US\$ 300) 및 상하역비, 통관료 등 수입부대비용(US\$340.4)을 운송중량(15톤)을 적용 (첨부-24 참조)

26) 국가 간 에너지가격 조사기관(www.globalpetroleumprices.com)(첨부-25 참조) 및 미국노무비용

정하였습니다.

(주4) 신청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 및 대만의 주요생산설비는 [*****]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청인과 피 신청인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의 차이는 [*****].

(주5) 기타경비는 인적경비와 물적경비로 구분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2017년 생산실적을 토대로 기타경비가 노무비 및 감가상각비에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6)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제무비용 포함) 및 합리적인 이윤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만의 조사신청물품의 제조 및 판매자인 청화펄프의 2017년도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원가 대비 판매 및 관리비율 및 제무비용의 비율 및 세전이익률을 산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첨부 27] 청화펄프의 판매비율 및 세전이익률 등의 산정

[첨부 28] 청화펄프의 2017년 감사보고서

제조사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International Labor Comparison (첨부-26 참조)

구분	Unit	한국	대만	환산율
전력	US\$/KWh	0.11	0.09	81.8%
DIESEL	US\$/liter	1.23	0.79	64.2%
인건비	US\$/Hour	20.72	9.46	45.7%

<덤핑가격 및 산정근거>

(단위: US\$/톤)

덤핑가격	조 정 사 항				조정된 덤핑가격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국내운임	수출비용	
1,263.3	[***]	[***]	20.0	22.4	[****]

(1) 덤핑가격

조정 전 덤핑가격은 조사대상기간 중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금액(US\$ 15,706천)과 수입총량 (12,432톤)을 기준으로 평균수입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10] 판세청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통계자료

(2) 조정사항 - 해상운임

해상운임은 대만 Taichung항과 부산항의 해상운임 요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첨부 17] 해상운임 입증자료

(3) 조정사항 - 수출 국내운송비용

국내운송비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대만) (첨부-24 참조) 에서 산정한 수출을 위한 트럭 당 국내운송비(US\$ 300)를 운송총량 (15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조정사항 - 수출비용.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대만) (첨부-24 참조)에서 산정한 상하역료, 부두사용료, 통관료 등 수출비용(US\$ 187.7) 및 통관 및 수출서류 작성비용(US\$ 147.7)을 운송총량 (15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조정사항 - 해상보험료.

해상보험료는 수출금액의 [***]%(27)로 산정하였습니다.

<덤핑률 산정>

(단위: US\$/톤)

조 정 된 정상가격(a)	조 정 된 덤핑가격(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x100)
[****]	[****]	[****]	1,263.3	28.2%

27) 해상보험료 = CIF × 부보율([***])% × 보험요율([***])%로 산정되었으며 보험료율은 신청인이 적용하는 기본요율[첨부-16A 참조]를 적용하였습니다.

2. 조사신청물품 수입량의 누적적 평가

조사신청물품 수출국인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의 예상 덤핑률이 각각 28.2 %, 18.4 %, 58.5 % 및 55.5 % 이므로 미소기준인 2%를 초과하고 있으며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불량도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량 대비 대만 53.0%, 중국 7.8%, 일본 6.7% 및 이탈리아 3.7%로 미소수입량 기준인 3%를 각각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월까지 일본, 중국 및 이탈리아산 수입물량은 적전년도 동기간 대비 각각 55%, 159% 및 117%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은 톤당 [***]천원에서 [***]천원으로 수입품간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으며 국내생산품 가격인 [***]천원보다 저가로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요자들은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용도, 물리적 특성, 소비자의 평가가 유사한 동종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령 제 63조 제3항에 따라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조사신청물품의 저가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을 누적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특기할 사항으로 기타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평균수입가격은 조사신청물품의 평균수입가격 대비 현저히 고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종제품의 수입가격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기타국가의 수입물량은 조사신청물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 덤핑률, 수입비중 및 가격비교 >

구 분	덤핑률	수입물량비중 (2017년)	가격경쟁 (2017년)	
			수입가격 (US\$/톤)	재판매가격 (천원/톤)
○ 조사신청물품(평균)		71.2%	1,206	[***]
- 대만산	28.2%	53.0%	1,188	[***]
- 중국산	18.4%	7.8%	1,251	[***]
- 일본산	58.5%	6.7%	1,267	[***]
- 이탈리아산	55.5%	3.7%	1,258	[***]
○ 기타국 수입품		28.8%	1,651	[***]
○ 국내생산품				[***]

자료: 수입물량 및 수입가격: 관세청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²⁸⁾

(주1) 수입가격(US\$)은 CIF 수입가격임(US\$/톤)

(주2) 조사신청물품(평균) 및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천원/톤)
= 수입가격 × 환율 × (1 + 관세율 + 통관제비용 [***]²⁹⁾)

(주3) 국내생산품 재판매가격(천원/톤) = 내수출하금액÷ 내수출하량

²⁸⁾ 관세청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 통계 [첨부 10] 참조

²⁹⁾ 통관제비용은 신청인이 원재료 수입 시 실제 지급한 컨테이너터미널사용료 (Terminal Handling Charge), 부두사용료(wharfage), 청소료(Cleaning Charge), 서류작성료(Document Fee) 및 통관수수료등 수입부대비용을 수입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였음 [첨부 29] 참조

2) 수입 가격

(1)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 하락

조사신청물품의 CIF 수입가격은 2015년 톤당 US\$ 1,297에서 2016년 US \$1,248, 2017년 US\$ 1,206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3/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하여 펄프가격이 25%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 상승률은 10%에 불과합니다.

(2) 저가 덤핑물량의 수입에 의한 국내생산품 판매가격 하락.

조사신청물품의 원화 판매가격은 2015년 [***]천 원으로 국내생산품의 평균판매가격 [***]천 원보다 [***]% 높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2016년 평균판매가격을 8% 인상하였으나 조사신청물품의 저가수입으로 인하여 원화 판매가격이 1% 하락함에 따라 가격차이는 [***]%로 역전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이 심화되어 재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6% 하락하자 신청인은 시장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가격경쟁에 참여한 결과 국내출하가격은 [***]천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3%의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1-9월 중 펄프가격 상승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가격 및 재판매가격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직전년도 동기 간 대비 28% 증가하고 국내생산품 평균가격과의 차이가 [***]% 벌어짐에 따라 신청인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에서 [***]%로 급감하였습니다.

비록 국내생산품의 재판매가격이 외견상으로는 상승했지만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가격으로 인하여 원가상승을 보전하는 인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곧 조사신청물품의 약탈적인 저가수출로 인해 팔면 필수불가결한 영업손실이 급증하여 결국엔 국내동종물품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신청인의 반덤핑 제소는 불가피합니다.

<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 >

(단위: 백만원, 천원/톤)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7년 9월		'18년 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대만	수입금액	14,427		15,498	7.4%	16,151	4.2%	12,484	13,516	8.3%	
	평균수입가격(CIF)	1,403		1,389	△1.0%	1,343	△3.3%	1,349	1,399	3.7%	
	원화재판매가격	1,000		990	△1.0%	990	△3.3%	962	990	3.7%	
중국	수입금액	1,084		1,436	32.5%	2,505	74.4%	1,578	4,809	204.8%	
	평균수입가격(CIF)	2,048		1,888	△7.8%	1,414	△25.1%	1,377	1,618	17.5%	
	원화재판매가격	1,000		990	△7.8%	690	△25.1%	672	790	17.5%	
일본	수입금액	2,390		2,207	△7.7%	2,173	△1.5%	1,571	2,334	48.6%	
	평균수입가격(CIF)	1,652		1,642	△0.6%	1,432	△12.8%	1,416	1,361	△3.9%	
	원화재판매가격	1,000		990	△0.6%	890	△12.8%	852	820	△3.9%	
이탈리아	수입금액	715		598	△16.2%	1,190	98.7%	704	1,493	112.1%	
	평균수입가격(CIF)	1,671		1,592	△4.7%	1,422	△10.7%	1,449	1,416	△2.3%	
	원화재판매가격	1,000		953	△4.7%	850	△10.7%	862	840	△2.3%	
대사국 평균	수입금액	18,616		19,740	6.0%	22,019	11.5%	16,337	22,152	35.6%	
	평균수입가격(CIF)	1,467		1,448	△1.3%	1,363	△5.8%	1,362	1,488	5.6%	
	원화재판매가격	1,000		980	△1.3%	920	△5.8%	920	980	5.6%	
기타수입국	수입금액	1,000		1,010	1.2%	1,020	6.1%	1,050	1,100	13.8%	
	평균수입가격	1,000		1,020	7.6%	1,040	△2.7%	1,050	1,120	6.0%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한국은행 환율자료, 신청인 내부 자료

(주1) 조사신청물품의 국내 원화 재판매 단가 = 달러수입가격(CIF)×연평균 환율×[1+판매율(0%)+통관제비용[***]30]

(주2) 기타수입국의 국내 원화 재판매 단가 = 달러수입가격(CIF)×연평균 환율×[1+판매율(0%)+통관제비용[***]31]

(주3) 국내생산품의 평균가격 = 국내출하금액/국내출하물량

(주4) 원화재판매가격,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및 국내생산품 평균가격은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금액을 1,0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생산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2015년 [***]톤에서 조사신청물품의 텀핑수입으로 인하여 2016년에는 [***]톤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고정비 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량을 증대한 결과 생산량이 [***]톤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9월까지 신청인이 통제할 수 없는 펄프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조사신청물품의 텀핑수입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자 영업손실을 축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생산량을 줄인 결과 2018년 1-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생산량이 42% 감소하였습니다.

30, 31) 통관제비용은 신청인이 원재료 수입 시 실제 지급한 컨테이너터미널사용료 (Terminal Handling Charge), 부두사용료(wharfage), 청소료(Cleaning Charge), 서류작성료(Document Fee) 및 통관수수료등 수입부대비용을 수입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였음 [첨부 29] 참조

<생 산 현 황>

(단위 : 톤)

구분	년도	16년		17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10,000	10,000	0.0%	10,000	0.0%	7,500	0.0%
생 산 량(b)	10,000	8,890	△11.0%	10,280	15.6%	7,689	△42.4%
가동률(b/a)	[***]%	[***]%	△6.0%p	[***]%	7.5%p	[***]%	△23.7%p

자료: 신청인 내부자료

(주1)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임(이하 동일)

(주2) 생산능력은 설비 도입 시 적용된 기술사양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음.

- 일간 생산능력(A): *** 톤 (*****)
- 클리닉지 생산비율(B): *** % (*****%)
- 생산능력=(A)*365일*(B)

(주3) 생산능력(a) 및 생산량(b)는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금액을 10,0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판매

신청인은 해외시장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해외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신청인의 국내 생산품의 국내출하량은 [***]톤이었으나 조사신청물품의 텀핑수입으로 인하여 2016년 [***]톤으로 직전년도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적극적으로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

을 통하여 전기 대비 국내판매량을 9% 증가하였으나 조사신청물품의 저가 수입이 지속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가격경쟁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원재료인 펄프의 전 세계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판매가격의 상승을 기대하였으나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원가상승률이 미달하는 국내판매가격이 형성됨에 따라 가격경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국내 판매량은 직전년도 동기대비 43%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현황>

(단위 : 톤, 백만 원)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17년	18년	증감률	
총출하 (a=b+c+d+e)	물량	1,000	802	△19.5%	887	10.3%	649	322	△39.1%
	금액	1,000	852	△14.4%	918	7.2%	672	443	△34.7%
국내출하(b)	물량	1,000	833	△16.7%	908	9.1%	676	332	△42.7%
	금액	1,000	894	△10.4%	951	6.1%	716	433	△39.3%
수출(c)	물량	-	-	-	-	-	-	-	-
	금액	-	-	-	-	-	-	-	-
자가소비(d)	물량	100	24	△76.1%	52	118.2%	18	90	388.2%
	금액	100	20	△79.5%	43	108.7%	15	92	518.0%
기타출고(e)	물량	100	41	△59.4%	53	31.5%	17	16	△6.7%
	금액	100	38	△61.7%	47	22.6%	14	17	16.3%

자료 : 신청인 내부자료

(주1) 신청인은 현재까지 해외수출한 실적이 없음.

(주2) 기타출고는 타 공장으로부터 반출 완제품 입고 후 재가공을 위한 출고 외주추가가공을 위한 반출이 포함되어 있음.

(주3) 총출하(a=b+c+d+e), 국내출하(b), 자가소비(d) 및 기타출고(e)는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금액을 1,000 또는 100으로 변환

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라. 재고

재고량은 2015년 [***]톤에서 2016년 [****]톤으로 18%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톤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1-9월까지 펄프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조사신청물품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원가인상요인을 국내판매가격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업 손실 폭이 확대되자 불가피하게 생산량과 판매량을 축소한 결과 재고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하였으나 재고율은 6%p 상승하였습니다.

<재고 현황>

(단위 : 톤)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17년	18년	증감률
총출하(a)		1,000	802	△19.5%	887	10.3%	649	398	△39.1%
재고(b)		100	82	△18.3%	163	99.6%	179	167	△6.6%
재고율(b/a)		[***]%	[***]%	0.0%p	[***]%	3.4%p	[***]%	[***]%	6.1%p

자료 : 신청인 내부자료

(주1) 기말재고=기초재고량+생산량-국내출하량-자가소비-기타출고

(주2) 총출하(a) 및 재고(b)는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금액을 1,000 또는 1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마. 손익

조사신청물품의 텀핑수입으로 인해 신청인의 동종물품의 영업손익은 2015년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해 나가기 위하여 신청인은 강도 높은 원가절감노력을 통하여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동종물품의 영업손익을 [***]원 수준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2018년 1-9월까지 펄프가격이 25% 이상 급등하였으나 텀핑수입의 증가로 인해 국내판매가격은 전년도 동기 대비 6% 증가에 머물러 영업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하여 클라신지 영업의 증단을 고려할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조 사 신 청 물 품 손 익 현 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7년	18년	증감률	
매출액(a)		10,000	8,961	△10.4%	9,506	6.1%	7,159	4,346	△39.3%
매출원가(b)		10,000	7,259	△27.2%	7,642	5.3%	5,599	4,036	△27.9%
매출총이익(c=a-b)		적자	후자전환	후자전환	후자확대	48.7%	후자	적자전환	적자전환
판매비와관리비(d)		10,000	9,124	△8.8%	9,847	7.9%	7,079	4,033	△43.0%
영업이익(e=c-d)		적자	적자완소	적자감소	적자완소	적자감소	적자	적자확대	적자확대
영업이익률(e/a)		[**%]	[**%]	22.9%p	[**%]	0.6%p	[**%]	[**%]	△17.3%p

자료: 신청인 내부자료

(주) 조사신청물품의 손익현황은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금액을 10,0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바. 제 조 원 가

국내생산품의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대상 기간에 걸쳐 50% 이상으로 제조원가가 제조원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2018년에는 주원료인 펄프의 국제 가격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재료비가 2018년 1-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 하면서 전체 제조원가 역시 26 %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이 적극적인 원가절감을 추진한 결과 단위당 노무비 및 가공비는 2015년 [***]천 원에서 2017년에는 [****]천 원으로 17%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9월 중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원재료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사신청물품의 저가수입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단위당 제조원가>

(단위 : 천원/톤)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17년	18년	증감률	
제조비(a)		1,000	924	△7.6%	850	△8.0%	832	1,195	43.7%
노무비(b)		1,000	936	△6.4%	854	△8.8%	834	1,732	107.6%
경 비(c)		1,000	795	△20.5%	830	4.4%	821	702	△14.6%
제조원가 (d=a+b+c)		1,000	872	△12.8%	842	△3.5%	829	1,043	25.9%

자료: 신청인 내부자료

(주) 단위당 제조원가는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금액을 1,0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32) 2018년 1-9월까지 Soft Wood Pulp는 적전년도 동기대비 US\$ 662/톤에서 US\$ 902/톤으로 36% 상승하였으며 Hard Wood Pulp는 US\$644/톤에서 US\$799/톤으로 24% 상승하였음[첨부-30] 참조

사.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신청인은 2016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외에 조사신청물품의 저가수입으로 인한 국내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현재 운영설비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소규모의 투자이외에 본격적인 투자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설비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8년	증감률
설비투자		1,000	2,073	107.3%	545	△73.7%	100	335
연구개발		1,000	889	△11.1%	944	6.3%	722	333
								△53.8%

자료: 신청인의 내부자료

(주1)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 금액은 추적이 가능한 국내동종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금액과 공동투자금액 중 회사 전체 생산량 대비 국내동종물품 생산량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 설비투자 현황은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금액을 1,0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아. 고용 및 임금

신청인은 제지산업의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의 효율화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7년 3월 1일부터 자회사인 한솔아트원제지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경쟁력이 없는 오산공장과 남원사업소부문을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전사적으로 명예퇴직 및 청년고용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감행한 결과 신청인의 평균임금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 및 임금 현황>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8년	증감률
연평균 고용인원 (명)	생산직	100	90	△10.0%	90	0.0%	70	△22.2%
	일반직	100	75	△25.0%	100	33.3%	50	△50.0%
	계	100	86	△14.3%	93	8.3%	64	△30.8%
연평균 1인당 임금 (천원)	생산직	10,000	11,905	19.0%	10,852	△8.8%	10,592	3.0%
	일반직	10,000	11,356	13.6%	10,011	△11.8%	8,789	△6.1%
	평균	10,000	11,604	16.0%	10,390	△10.5%	9,259	△1.9%

자료: 신청인 전사 기준 내부 회계자료

(주1) 생산직 고용인원은 글라신지를 생산하는 천안공장의 생산직 인원수를 천안공장의 생산량기준으로 안분하였으며 일반직 인원은 전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주2) 연평균 고용인원 및 연평균 1인당 임금은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금액을 각각 100 및 10,0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주요 원자재 가격

조사신청물품의 주원료인 국제 펄프 가격은 2015년 730천 원에서 2016년 645천 원으로 12% 하락하였으나 2017년에는 78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하였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펄프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하였으나 조사신청물품의 저가수입으로 인하여 국내판매가격에 원가상승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가격>

(단위 : 천원/톤)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17년	18년
주요 원자재가격								
- Softwood Pulp		729	695	△4.7%	805	15.8%	753	985
- Hardwood Pulp		730	595	△18.5%	765	28.6%	734	872
- 평균펄프가격		730	645	△11.6%	785	21.7%	743	929
국내생산품가격		1,000	1,076	7.6%	1,047	△2.7%	1,039	1,123
								60%

자료: 국제펄프가격(RIS) [첨부-30] 참조, 신청인의 내부 회계자료

(주1) 국내생산품가격 = 국내출하금액/국내출하물량

(주2) 국내생산품가격은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값을 1,0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4. 국내산업의 피해우려에 관한 증빙

가. 조사신청물품의 대한민국 수출의 현저한 증가율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은 2015년 12687톤에서 2016년 13637톤으로 직전년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16151톤으로 직전년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1-9월까지 조사신청물품 수입으로 인하여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사신청물품의 대한민국 수출의 현저한 증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조사신청물품의 대한민국 수출현황>

(단위 :톤, 천원/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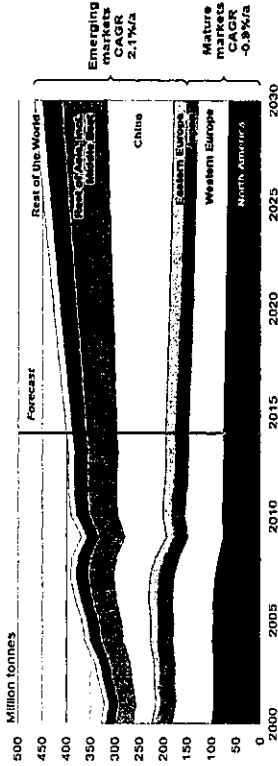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17년	18년
물 량(a)		12,687	13,637	7.5%	16,151	18.4%	11,994
금 액(b) (백만 원)		18,616	19,740	6.0%	22,019	11.5%	16,337
단 가(b/a)		1,467	1,448	△1.3%	1,363	△5.8%	1,362
							1,488
							5.6%

자료: 관세청 수출입통계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한국은행 환율자료

나. 조사신청물품의 공급국 생산 및 수출여력

제지산업 연구기관인 POYRY의 세계산림산업의 시장전망보고서(Future Outlook for The Forest Industry)[첨부 31]에 따르면 종이와 판지의 세계시장수요는 2030년 467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중국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및 남미 등 개발도상국 시장수요는 연 1-2% 성장하는 반면 북미시장과 피 신청국가인 유럽 및 일본 선진국의 시장수요는 연평균 1~2% 지속적으로 규모 감소가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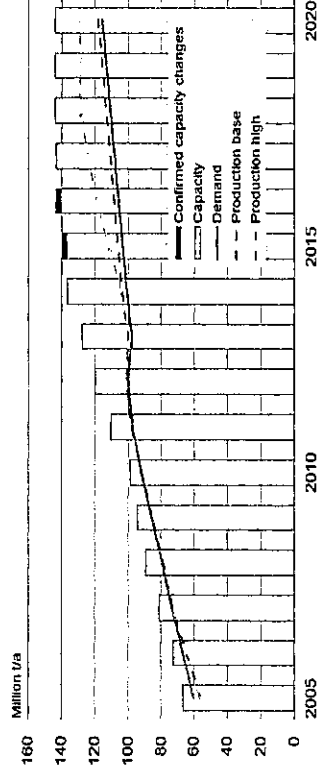
<중이와 판지의 세계수요>



(자료 : 세계 산림 산업의 시장전망 (Future Outlook for The Forest Industry))

또한 중국시장은 2012년 이후 국내시장수요증가율을 초과하는 실비 투자로 인하여 생산능력의 30%이상의 공급과잉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포함한 해외시장에 덤핑수출 지속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 제지시장 수급현황>



(자료 : 세계 산림 산업의 시장전망 (Future Outlook for The Forest Industry))

따라서 피 신청인은 수요 감소 및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 저중인 클라신지 생산 비중을 늘려 덤핑 수출을 지속할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에 대한 피 신청인의 생산 및 수출여력에 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파악은 쉽으나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향후에도 수입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조사신청물품의 한국내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사신청물품은 국내생산품과 재료 품질 기능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는 반면 국내생산품의 적정판매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수입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반덤핑 조치가 없을 경우 조사신청물품의 약탈적인 저가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감소, 수익성 등 악화로 국내동종물품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2015년에는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은 [***]천 원으로 국내생산품의 톤당 [***]천 원보다 [***]%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신청인이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가격을 인상하자 조사신청물품의 덤핑 수입이 심화되었고 그로인해 조사신청물품의 원화 재판매가격은 국내생산품의 평균가격 대비 [***]%낮았고 2017년에 그 차이는 [***]%로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펄프가격이 적전년도 동기 대비 25% 인상되었으나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은 6% 인상에 그쳐 신청인은 급증하는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조사신청물품과 경쟁하는 저가 판매물량을 축소함에 따라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과 국내평균가격의 차이는 [***]%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신청 물품의 수입가격>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17년	18년
조사신청물품 수입가격(CIF) (US\$/톤)	평균	1,297	1,248 △3.8%	1,206 △3.4%	1,197	1,318 10.2%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 (천 원/톤)	1,000	982 △1.3%	928 △5.8%	928	980
국내생산품 평균판매가격 (천 원/톤)	재판매가격	1,000	1,076 7.6%	1,047 △2.7%	1,059	1,123
	평균판매가격	1,000	1,076 7.6%	1,047 △2.7%	1,059	1,123

자료: 관세청수출입통계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한국은행 환율자료
신청인 내부자료.

(주1) 조사신청물품의 국내 원화 재판매 단가 = 달러수입가격(CIF)×연평균 환율×[1+판매율(0%+통관제비용[***]33)]

(주2) 국내생산품가격 평균판매가격 = 국내출하금액/국내출하물량

(주3)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 및 국내생산품 평균판매가격은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도 설정하여 금액을 1,0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조사신청물품의 재고현황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 공급국의 재고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3) 통관제비용은 신청인이 원재료 수입 시 실제 지급한 컨테이너터미널사용료 (Terminal Handling Charge), 부두사용료(wharfage), 청소료(Cleaning Charge), 서류작성료(Document Fee) 및 통관수수료등 수입부대비용을 수입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였음 [첨부 29] 참조

5.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에 관한 증빙

신청인은 클라신자를 2013년부터 상업적인 생산 및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조사신청물품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빙

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은 절대적 수량에 있어 서나 상대적 점유율에 있어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신청 물품의 수입량은 2015년 12,687톤에서 2017년 16,151톤으로 27% 증가하였고 국내소비에 차지하는 점유율 역시 2015년 [***]%였으나 2017년 [***] %로 3년간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은 직전년도 동기 대비 28% 증가한 반면에 국내생산품 출하량과 기타국가의 수입량은 각각 43% 및 13%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수지인 조사신청물품은 국내소비가 점진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은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여 국내생산품의 출하량 및 국내소비점유율은 급격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 현황 >

구분	년도	(단위 : 천, 백만 원)			
		15년	16년	17년	1-9월 18년
국내소비(a=b+c)	물량	10,000	9,340	9,507	7,553
	금액	10,000	9,383	9,253	7,692
총수입(b=c+d)	물량	23,383	22,482	22,676	17,274
	금액	37,214	35,304	34,201	25,931
조사신청물품수입(c)	물량	12,687	13,637	16,151	11,994
	금액	18,616	19,740	22,019	16,337
대만산	물량	10,283	11,156	12,026	9,252
	금액	14,427	15,498	16,151	12,484
중국산	물량	529	761	1,771	1,146
	금액	1,084	1,436	2,505	1,578
일본산	물량	1,447	1,344	1,517	1,110
	금액	2,390	2,207	2,173	1,571
이탈리아산	물량	428	376	837	486
	금액	715	599	1,190	704
기타수입(d)	물량	10,696	8,845	6,525	5,280
	금액	18,598	15,564	12,182	9,654
국내생산품출하(e)	물량	1,000	833	908	676
	금액	1,000	806	921	716
국내소비 정유 율	조사신청물품수입(c/a)	100%	100%	100%	100%
	대만산	100%	100%	100%	100%
	중국산	100%	100%	100%	100%
	일본산	100%	100%	100%	100%
	이탈리아산	100%	100%	100%	100%
	기타수입(d/a)	100%	100%	100%	100%
	국내생산품출하(e/a)	100%	100%	100%	100%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한국은행 환율자료, 신청인 내부 자료.

(주) 국내소비(a=b+c) 및 국내생산품출하(e)는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물량 및 금액을 10,000 또는 1,0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1)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생산품에 비해 저가판매 여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5년에는 국내생산품의 가격은 톤당 [****]천 원으로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인 [****]천 원 보다 [**]%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신청인이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가격을 인상하자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이 심화되었고 그로인해 조사신청물품의 원화 재판매가격은 국내생산품의 평균가격 대비 [**]% 낮았고 2017년에 그 차이는 [**]%로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3/4분기에는 펄프가격이 적전년도 동기 대비 25% 인상되었으나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은 6% 증가에 그쳐 신청인은 급증하는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조사신청물품과 경쟁하는 저가 판매를 축소함에 따라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과 국내평균가격의 차이는 [**]%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과 국내생산품 공장도판매가격 비교>

(단위 : 천원/톤)

구분	년도	15년	16년	증감율	17년	증감율	17년 1-9월	18년 1-9월	증감율
O 조사신청물품 공장판매가격(a)									
- 대만		1,000	987	△1.3%	929	△5.8%	928	980	5.6%
- 중국		1,000	990	△1.0%	957	△3.3%	952	997	3.7%
- 일본		1,000	992	△7.8%	691	△25.1%	672	790	17.5%
- 이탈리아		1,000	994	△0.6%	867	△12.8%	857	824	△3.9%
- 기타수입국 재판매 가격		1,000	953	△4.7%	851	△10.7%	867	847	△2.3%
O 국내생산품 공장도판 매가격(b)		1,000	1,012	1.2%	1,074	6.1%	1,052	1,196	13.8%
O 차이(c=a - b)		1,000	1,076	7.6%	1,047	△2.7%	1,059	1,123	6.0%
- 대만		1,000	987	△1.3%	929	△5.8%	928	980	5.6%
- 중국		1,000	990	△1.0%	957	△3.3%	952	997	3.7%
- 일본		1,000	992	△7.8%	691	△25.1%	672	790	17.5%
- 이탈리아		1,000	994	△0.6%	867	△12.8%	857	824	△3.9%
- 기타수입국		1,000	953	△4.7%	851	△10.7%	867	847	△2.3%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한국은행 환율자료, 신청인 내부 자료.

(주1)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 = 달러수입가격(CIF)×연평균환율×[1+판매세율(0%+통관세비용[***]34)]

(주2) 기타수입국의 국내 원화 재판매 단가 = 달러수입가격(CIF)×연평균환율×[1+판매세율(0%+통관세비용[***]35)]

(주3) 국내생산품 공장도 판매가격 = 내수출하금액÷ 내수출하량

34), 35) 통관세비용은 신청인이 원제로 수입 시 실제 지급한 컨테이너터미널사용료 (Terminal Handling Charge), 부두사용료(wharfage), 청소료(Cleaning Charge), 서류작성료(Document Fee) 및 통관수수료등 수입부대비용을 수입금액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였음 [첨부 29] 참조

(주4)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및 국내생산품 공장도판매가격은 비교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물량 및 금액을 1,0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2)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생산품 가격 하락 초래 여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5년에는 국내생산품의 가격은 통당 [****]천 원으로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인 [****]천 원 보다 [***]%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영업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2016년 판매 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8%인상하였으나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은 반대로 1%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조사신청물품의 텀핑수입이 지속되어 조사신청물품의 통당 재판매 가격이 통당 [***]천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6%이상 하락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국내생산품의 적정가격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텀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생산품의 가격은 3%하락 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1-9월까지 조사신청물품의 주요원료인 펄프가격이 직전년도 동기대비 25%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 인상은 6%에 불과하여 신청인은 가격경쟁을 포기하고 동기간 생산 및 판매량을 43% 감축하고 클라신지 사업의 포기 여부를 검토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 >

(단위 : 천원/톤)

구분	년도	15년	16년	증감율	17년	18년	증감율
○ 조사신청물품 판매가격	평	1,000	987	△1.3%	928	980	5.6%
- 대만		1,000	990	△1.0%	957	997	3.7%
- 중국		1,000	992	△7.8%	691	790	17.5%
- 일본		1,000	994	△0.6%	867	824	△3.9%
- 이탈리아		1,000	953	△4.7%	851	847	△2.3%
○ 국산품공장도판매 가격(b)		1,000	1,076	7.6%	1,047	1,123	6.0%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한국은행 환율자료
신청인 내부 자료

(주1) 조사신청물품 평균제판매가격(a) = 달러수입가격(CIF)×연평균환율×[1+
관세율(0%+통관제비용[***]36)]

(주2) 국산품공장도 판매가격(b) = 내수출하금액+ 내수출하량

(주3) 조사신청물품 제판매가격 및 국내생산품 공장도판매가격은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불량 및 금액을 1,000으로 변환하
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
을 제시하였습니다.

36) 통관제비용은 신청인이 원재료 수입 시 실제 지급한 컨테이너미비발사용료 (Terminal
Handling Charge), 부두사용료(wharfage), 청소료(Cleaning Charge), 서류작성료(Document
Fee) 및 통관수수료등 수입부대비용을 수입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였음 [첨부
23] 참조

(3)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생산품 가격인상여부

국내생산품의 적정판매가격은 2015년 톤당 [****]천 원 2016년 톤
당 [****]천 원 및 2017년에는 톤당 [****]천 원으로 2015년에서 2017
년까지 국내생산품의 실제판매가격은 적정판매가격 대비 각각 [****]천
원 [****]천 원 [****]천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8년 1-9월까지 펄프가격이 직전년도 대비 25% 인상되었으
나 조사신청물품의 덩핑수입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통제할 수없는 원가인상
요인을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급증하여 국내판
매 및 생산량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생산품의 실제판매가격과 적정판매가격 비교>

(단위: 천원/톤)

구분	년도	15년	16년	증감율	17년	증감율	18년	증감율
○ 국내생산품 매가격(a)	적정판	1,000	886	△11.4%	856	△3.3%	1,043	23.9%
- 제조원가		1,000	872	△12.8%	842	△3.5%	929	25.9%
- 단위당 판매관리비		1,000	1,096	9.6%	1,079	△1.6%	1,044	△0.8%
○ 국내생산품 매가격(b)	실제판	1,000	1,076	7.6%	1,047	△2.7%	1,059	6.0%
○ 차액(a-b)		1,000	477	△52.3%	447	△6.2%	889	131.8%

자료: 신청인 내부자료

(주1) 국내생산품 적정판매가격(a)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매관리
비) ÷ (1 - 적정 영업이익률)

(주2) 적정 영업이익률은 클라신지와 동일한 슈퍼클렌다 공정에서 생산되
며 덩핑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37의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률(***%)을 적용하였음.³⁸⁾

(주3) 판매관리비는 신청인의 동종물품의 판매에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전사 공통비용의 합계 금액이 제조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7.1-9 [***]% 및 2018.1-9 [***]% 적용)

(주4) 국내생산품 실제판매가격(b) = 내수출하금액÷ 내수출하량

(주5) 국내생산품 적정판매가격 및 국내생산품 실제판매가격은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금액을 1,0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조사신청물품 수입으로 인한 수입상실

조사신청물품의 저가 수입으로 인하여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억제로 인한 수입상실금액은 2015년 [*****]원 2016년 [*****]원 2017년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 2018년 1-9월까지 펄프가격이 직전년도 동기대비 25%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원가인상요인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하여 수입상실금액은 직전년도 동기대비 33%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반면 고객 상실로 인한 수입 상실은 2015년 [*****]원 2016년 [*****]원 및 2017년 [*****]원으로 가격에 의한 수입 상실보다 고객 상실로 인한 수입 상실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조사신청물품보다 품질 및 납기 면에서 유리한 국산 제품이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37) [*****]는 [*****]에 사용되는 [*****]토시 클라신지와 같이 동일한 수퍼칼렌다 공정에
서 생산되고 있음.

38) [첨부 34] 참조.

수입대체에 실패하고 시장점유율을 상실하여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이는 고객 상실로 인한 수입 상실을 매해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신청인은 클라신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국내시장은 전부 수입제품에 의해 공급하게 되어 신청인의 클라신지 사업포기 이후 수입 가격은 급등할 것입니다.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억제로 인한 수입상실>

(단위: 톤, 천원/톤)

구분	년도	15년	16년	증감율	17년	증감율	17년 1-9월	18년 1-9월	증감율
국산품 실제가격(a)		1,000	1,076	7.6%	1,047	△2.7%	1,059	1,123	6.0%
적정판매가격(b)		1,000	886	△11.4%	856	△3.3%	842	1,043	23.9%
단위당수입상실(c= b-a)		1,000	477	△52.3%	448	△6.1%	376	870	131.7%
판매수량(d)		1,000	833	△16.7%	908	9.1%	676	382	△42.7%
수입상실(e=c×d) (백만 원)		1,000	397	△60.3%	407	2.6%	254	337	32.6%

(주1) 국산품 실제가격(a) = 내수출하금액÷ 내수출하량

(주2) 국내생산품 적정판매단가(b)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매관리비) ÷ (1 - 적정 영업이익률)

(주3) 국산품 실제가격(a) 부터 수입상실(e)은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금액을 1,0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상실로 인한 수입상실>

(단위 : 톤, 천원/톤)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적정판매량(a)		1,000	934	957	725	756	4.2%
실제판매량(b)		1,000	833	908	676	387	Δ42.7%
판매상점수량(c=a-b)		1,000	1,049	1,012	782	1,174	50.3%
적정판매단가(d)		1,000	888	856	842	1,043	23.9%
수입상실(e=c×d)		1,000	922	867	658	1,224	86.1%

(주1) 적정판매량 = 연도별 총 소비량 X 적정시장 점유율([**]%)

(주2) 2013년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클라신지 제품의 국산화를 통한 사업 계획서상 목표시장점유율([**]%)을 적용하여 적정판매량으로 산정함.

(주3) 국내생산품 적정판매단가(b)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매관리비) ÷ (1 - 적정 영업이익률)

(주4) 적정판매량(a)부터 수입상실(e)은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도로 설정하여 금액을 1,0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라. 조사신청물품 수입이외의 요인이 국내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등에 미친 영향

(1) 조사신청물품이외의 수입이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신청물품 이외의 수입물품의 평균판매가격은 조사신청물품의 평

관 수입 가격대비 19%-45% 고가로서 기타국가로부터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저가수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사신청물품 및 기타국가 수입물품의 판매가격>

(단위 :천원/톤)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조사신청물품 평균 판매가격		1,000	987	929	928	980	5.6%
기타국가 수입물품의 평균판매가격		1,000	1,012	1,074	1,052	1,106	13.8%
차이		[**]%	[**]%	[**]%	[**]%	[**]%	37.6%
차이비율		[**]%	[**]%	3.1%p	[**]%	[**]%	10.4%p

(주1) 조사신청물품 판매가격 = 달러수입가격(CIF)×연평균환율×[1+관세율(0%+통관제비용[**]40)]

(주2) 기타국가 수입물품의 평균판매가격 = 달러수입가격(CIF)×연평균환율×[1+관세율(0%+통관제비용[**]41)]

(주3) 조사신청물품 평균판매가격 및 기타국가 수입물품 평균판매가격은 비공개 수치로 2015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금액을 1,000으로 변환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로 계산한 환산 값을 제시하였습니다.

40), 41) 통관제비용은 신청인이 원재료 수입 시 실제 지급한 컨테이너터미널사용료 (Terminal Handling Charge), 부두사용료(wharfage), 청소료(Cleaning Charge), 서류작성료(Document Fee) 및 통관수수료등 수입부대비용을 수입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였음 [첨부 29] 참조

(2) 수요 감소 또는 소비형태변화가 있었는 지와 그로인해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라신지는 식음료 생활용품 테배 등 다양한 라벨스티커 뒷면 대지용으로 사용되며 초콜릿 비스킷 등 여러 가지 식품 담배 약품 금속 부품 등에 대한 보호 포장용으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내 시장수요는 2016년 이후 매년 2-3%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되는 신문용지나 인쇄용지와 달리 수요가 증가하는 글라신지 국내시장의 전망은 긍정적이나 조사신청물질의 무차별적인 덤핑수입의 급증으로 인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은 신청인은 글라신지 사업철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외국생산자 및 국내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이 있었다면 그 내용 및 이들 간의 경쟁이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파악하기로 덤핑행위 이외의 글라신지에 대해 적용되는 무역 제한적 관행은 없습니다.

(4) 기술개발로 인해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신청물질 및 동종물품에 대하여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만한 혁신한 기술개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Glassine Paper)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 비공개정보 목록 및 비공개 사유 -

페이지	비밀취급 요청정보	법적 근거	비공개 사유
3	(표) 신청인에 관한 사항	②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의 조사신청물질 매출액 신청인의 조사신청물질판매액은 영업기밀, 회계자료로서 대외공개 시 경쟁력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
5-6	(표) 주요수입자 및 본문의 수입자명	③	* 비공개 요청항목 : 수입자명 수입량 및 수입비중 개인정보보호법에 강하게 따라 무역회사는 수입자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신청인이 영업 과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자료이며, 수출자들이 해당 정보를 악용하여 수입량이 많은 수입상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신청인의 국내시장점유율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수입량이 적은 수입상은 수출자에게 접근하여 수입물량 확대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6	(표) 주요수요자	③	* 비공개 요청항목 : 수요자명 수요량 및 수요량 비중 신청인의 고객을 포함한 영업기밀 자료로서 대외공개 시 경쟁력 하락요인 초래
7	(표) 국내생산자에 관한 사항	②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의 국내생산량 신청인은 국내에서 유일한 생산자이므로 대외공개 시 타 경쟁사가 악용하여 신청인의 시장점유율에 안정성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고 해당 자료는 신청인의 영업 및 회계 기밀 자료로 대외 공개가 불가함.
7-8	(표) 국내수급현황 및 본문의 국내수요량과 시장점유율	②	* 비공개 요청항목 : 국내수요 물량 및 금액 시장점유율 해당 정보는 신청인의 핵심역량에 관한 영업 및 회계

공개본

		기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국내에서 유일한 생산자이므로 해당 정보 공개 시 신청인의 기밀 정보가 쉽게 노출되므로 해당 사항은 비공개가 불가피함.	
18-19	일본 정상가격 조정사항 중 해상운임	④ 해당 정보는 신청인의 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정보의 공개 시 해당 자료를 제공한 자의 일본 내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	
20, 23, 28, 33	일본/중국/이탈리아/대만 임펄가리산정에서 사용된 해상운임	② 신청인이 여분기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된 해상운임 가격정보로 공개 시 구매 경쟁력 약화소지가 있음.	
18, 20, 21, 23, 24, 28, 29, 33, 34	일본/중국/이탈리아/대만 정상가격 및 임펄가리산정에 사용된 해상보험료 요율 및 금액	② 신청인의 실제 해상보험료 지급증빙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임	
22	중국의 정상가격	* 비공개 요청 항목 : 신청인의 중국내 정상가격 및 정보 입수 경로 ④ 해당 정보는 신청인의 해외 영업망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로 해당 사실이 공개될 경우 재공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재공자의 현지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23	중국 정상가격 조정요소 중 국내운송비	* 비공개 요청 항목 : 중국 국내운송비를 조정하기 위한 중국 수출자의 위치 ④ 해당 정보는 신청인의 해외 영업망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로 해당 사실이 공개될 경우 재공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재공자의 현지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30, 31, 32	대만의 정상가격	⑤ 정상가격 중 제로비 (제로수입가격) (비공개사유: ⑤) : 동 자료는 유료 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자료로서 대외공개는 자보재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① 정상가격 중 부제로비~제로원가 (비공개사유: ①) : 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의 제조원가를 이용한 구성가격으로 산출되어 제조원가 정보를 벤치마크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신청인의	

공개본

		생산노하우를 빼앗길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정보는 비공개가 불가피함.	
18, 20, 21, 22, 23, 25, 28, 29, 30, 33	조정된 정상가격, 조정된 임펄가리	① ② ④ ⑤ 상기에 기술된 정상가격 조정요소 및 임펄가리 조정요소의 이유로 비공개가 불가피함.	
35, 36, 39, 40, 52, 53, 55-59, 64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 및 가격산정근거	② 재판매가격은 신청인의 대외공개하지 않는 회계자료인 통관제비용을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해당 정보는 영업 기밀 자료를 포함하므로 공개가 불가함.	
35, 36, 39, 40, 48, 52, 53, 62, 55-60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② 신청인의 대외공개하지 않는 판매실적을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해당 정보는 영업 기밀 자료이므로 공개가 불가함.	
39, 52, 55-58	조사신청물품 원화재판매가격과 국내생산품 가격비교	② 조사신청물품의 원화재판매가격과 국내생산품 가격의 차이비용을 공개할 경우 피신청인은 본인의 수출가격으로 원화재판매가격을 쉽게 추정한 후 가격차이 비용을 이용하여 국내생산품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가 불가함.	
36, 40, 57, 64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및 가격산정근거	② 신청인의 대외공개하지 않는 회계자료인 통관제비용을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해당 정보는 영업 기밀 자료를 포함하므로 공개가 불가함.	
38, 42, 43, 55	국내생산품 출하 물량 및 금액	② 신청인의 대외공개하지 않는 판매실적을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해당 정보는 영업 기밀 자료이므로 공개가 불가함.	
38, 55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용 및 금액	② ⑤ 신청인의 국내생산품 출하는 대외공개 되지 않는 영업실적자료임. 또한, 신청인은 국내 시장의 유일한 생산자이므로 본 정보의 공개시 신청인의 생산량, 국내 시장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공격적 가격정책을 통한 수입물량의 확대도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음.	

공개본

37-39 54, 55	조사신청물품 및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점유율	② ⑤	본자료는 대외공개 되지 않는 영업신적자료임. 또한, 신청인은 국내 시장의 유일한 생산자이므로 본 자료의 공개시 신청인의 생산량, 국내 시장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공격적 가격정책을 통한 수입물량의 확대로 국내 시장을 차지하지 할 수 있음.
41, 42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및 생산능력 신장근거	② ⑤	신청인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정보 및 해당 정보에 대한 근거 자료는 비공개 회계자료로 회사 영업 및 회계 기밀 정보임. 또한, 본 자료의 공개시 경쟁자는 신청인의 생산규모 및 가동률에 따른 경험 추정치를 이용하여 고정제조원가 및 변동제조원가를 추산할 수 있어 사업전략에 상당한 자료가 예상됨.
42-44	신청인의 총출하, 가 자회사, 기타출고 및 제조량에 관한 정보	② ⑤	신청인의 영업상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 기밀 정보임. 판매량 및 재고량이 공개될 경우 기 공개자료인 수입량을 이용하여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 및 국내 전체 시장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공격적 가격정책을 통한 수입물량의 확대로 국내 시장을 차지하지 할 수 있음.
44, 45	조사신청물품의 손익현황	②	해당 항목은 신청인의 영업상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 기밀 정보임.
45, 46	조사신청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	①	해당 항목은 신청인의 영업상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 기밀 정보임. 본 정보의 공개시 피신청인은 벤치마킹하거나 악용하여 신청인이 신청인이 시장 경쟁력을 할 우려가 있음.
47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① ②	해당 항목은 신청인의 영업상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 신청인이 이를 벤치마킹하거나 악용하여 신청인이 시장 경쟁력을 할 우려가 있음.
48	고용 및 임금 현황	① ②	해당 항목은 신청인의 영업상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 신청인이 이를 벤치마킹하거나 악용하여 신청인이 시장 경쟁력을 할 우려가 있음.
60, 61	국내생산품의	①	

공개본

	적정판매가격 및 신장근거	②	신청인의 내부 비밀자료인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및 하이글로스 계층의 평균영업이익률을 이용하여 산정되었으며, 대외 공개 시 피신청인의 공격적 가격정책을 통한 수입물량의 확대로 국내 시장을 차지하지 하여 신청인의 영업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
61, 62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요인으로 인한 수입상실	① ②	비공개 정보인 국내생산품 평균가격(실제가격), 적정판매가격 및 판매(출하)수량을 이용하여 산출되었으며 비공개가 불가피함 대외 공개 시 피신청인의 공격적 가격정책을 통한 수입물량의 확대로 국내 시장을 차지하지 하여 신청인의 영업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
61-63	고액상실로 인한 수입상실	① ②	비공개 정보인 국내생산품 적정판매가격 및 판매(출하)수량을 이용하여 산출되었으며, 더구나 적정판매량은 신청인의 사업계획서상의 목표시장점유율을 이용하였으므로 비공개가 불가피함.
	[첨부 3] 신청인 법인등기 부등본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신청인의 기타 이해관계자의 접근 가능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밀 취급이 필요함.
	[첨부 4] 신청인의 주주명 부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의 주주명부 공시되지 않은 개인주주 및 기타 법인 주주 주식수 및 지분율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본 정보가 누출될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첨부 7] 피 신청인의 연 락처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피 신청인의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락처는 수취인 정보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본 정보가 누출될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우려됨.
	[첨부 9] 주요 수입자/수 요자 연락처	③	* 비공개 요청항목 : 주요 수입자/ 수요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락처는 수취인 정보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본 정보가 누출될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우려됨.

공개본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의 품질규격표준서 신청인의 품질표는 고객에게만 요청시에 교부하는 자료로서 대외 공개시 제품경쟁력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⑤	
	【첨부 13B】 클라신지 경쟁사 품질분석 비교표		* 비공개 요청항목 : 클라신지 경쟁사 품질분석 비교표 신청인이 경쟁사와의 품질분석비교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표로서 대외 공개시 제품경쟁력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⑤	
	【첨부 16A】 해상보험료 입증자료		* 비공개 요청항목 : 해상보험료 입증자료 신청인이 실제 해상보험료 지급증빙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임.	②	
	【첨부 17】 해상운임 요율 표		비공개 요청항목 : 해상운임 요율표 일본/중국/이탈리아/대만 등 평가대상지에서 사용된 해상운임: (비공개사유 ②) 신청인이 매분기 경쟁 입찰 을 통해 결정된 해상운임 가격정보로 공개 시 구매 경쟁력 악화소지가 있음. 나고야 -> 상하이 운임: (비공개사유 ④) 해당 정보는 신청인의 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정보의 공개 시 해당 자료를 제공한 자의 일본 내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② ④	
	【첨부 18】 중국 국내판매 가격 입증자료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국내판매가격 입증자료 동 정보는 신청인의 고객을 통해 입수한 자료로서 자료제공자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④	
	【첨부 18A】 중국 현지 가격 조사 (확인서)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현지 가격 조사 (확인서) 동 정보는 신청인의 고객을 통해 입수한 자료로서 자료제공자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④	
	【첨부 23】 동아시아지역			⑤	

공개본

			* 비공개 요청항목 : 동아시아지역 펄프수입가격 동 자료는 유료 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자료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첨부 29】 수입부대비용 입증자료		* 비공개 요청항목 : 수입부대비용 입증자료 신청인이 원재료 수입시 실제 지급한 지급증빙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임.	②	
	【첨부 30】 국제유통가격		* 비공개 요청항목 : 국제유통가격 해당 자료는 유료 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자료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⑤	
	【첨부 32】 코트라 가격 조사 협조 요청		* 비공개 요청항목 : 코트라 가격 조사 협조 요청 동 정보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 공개 시 부당한 개인 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음.	④	
	【첨부 33】 코트라 대한 화인 요청 답변		* 비공개 요청항목 : 코트라 가격 조사 협조 요청 동 정보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 공개 시 부당한 개인 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음.	④	
	【첨부 34】 한솔제지 적정 영업이익률 자료		신청인의 제품별 영업이익률 자료로, 해당부분은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	②	
	【첨부 35】 한솔제지 클라신지 사업계획서		신청인의 내부 영업 비밀자료를 활용한 국내 시장 분석 및 입찰 전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 시 이를 경쟁자가 악용한 시장 침해의 소지가 다분함.	⑤	

*비공개정보 구분 <관계법 시행규칙 제 15조>

- ① 제조원가
- ②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 ③ 거래상의 성명 주소 및 거래장
-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Glassine Paper)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 증빙자료 목록 -

- [첨부 1] 대리인 선임장 사본
- [첨부 2] 신청인의 주요 연락처
- [첨부 3] 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
- [첨부 4] 신청인의 주주명부
- [첨부 5] 신청인의 이사회 명부
- [첨부 6] 신청인의 감사보고서
- [첨부 7] 피 신청인의 연락처
- [첨부 8] 조사신청물품 해당 HS코드 (한국기준 2018년 개정)에 대한 해설)
- [첨부 9] 주요 수입자 / 수요자 연락처
- [첨부 10] 관세청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통계자료
- [첨부 11] 한국은행 발표 연도별 평균환율 자료
- [첨부 12] 피 신청인의 물성표 및 제품소개자료
- [첨부 13] 신청인의 국내생산품 소개자료
- [첨부 13A] 신청인의 품질규격표준서
- [첨부 13B] 글라신지 경쟁사 품질분석서 비교표
- [첨부 14] 신청인의 확인서
- [첨부 15] 일본산 조사신청물품의 월별 중국수출가격
- [첨부 16]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일본 Tokyo)
- [첨부 16A] 해상보험료 요율 입증자료
- [첨부 17] 해상운임입증자료
- [첨부 18] 중국 국내판매가격 입증자료
- [첨부 18A] 중국 현지 가격 조사 (확인서)
- [첨부 19]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중국 Shanghai)
- [첨부 20] 글라신지 수출 증치세 환급관련 규정
- [첨부 21] 이탈리아산 조사신청물품의 독일수출가격
- [첨부 22]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이탈리아)
- [첨부 23] 동아시아 펄프수입가격
- [첨부 24]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대만)
- [첨부 25] 한국과 대만간 전기료 및 디젤유 가격비교

- [첨부 26] 한국과 대만간 시간당 노무비 비교
- [첨부 27] 청화펄프의 판관비 및 세전이익률 등의 산정
- [첨부 28] 청화펄프의 2017년 감사보고서
- [첨부 29] 수입부대비용 입증자료
- [첨부 30] 국제펄프가격 (2015-2018년 9월)
- [첨부 31] Future Outlook for the Forest Industry.
- [첨부 32] 코트라 가격 조사 협조 요청
- [첨부 33] 코트라 대만 확인 요청 답변
- [첨부 34] 한솔제지 적정영업이익률 자료
- [첨부 35] 한솔제지 클라신지 사업계획서

I. 조사신청 개요	1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1
2. 조사신청물품 및 국내생산품	2
3.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4
4. 국내수급 현황	5
5. 비밀취급여부 검토	6
II. 조사개시 여부 검토	9
1. 조사신청 자격 유무	12
2. 국내산업의 대표성 충족 여부	12
3. 덤핑사실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13
4.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13
5.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14
6.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 해당 여부	14
III. 종합 검토의견	16
IV. 조사실 결정사항	17

< 참고자료 >

1.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사실 관련 증빙자료	21
2.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 관련 증빙자료	27
3. 신청인이 제출한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 증빙자료	32
4. 산업통상자원부(섬유화학탄소과) 의견	36
5.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 신청서 - 비공개정보 목록 및 비공개 사유	38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 여부

검토보고서

(조사번호: 구제 23-2019-1호)

2019. 3.

무역조사실

I. 조사신청 개요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판세청 수입통관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합산된 조사대상물품 수입량,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은 아래와 같이 기준연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 하되, 기준연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 (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① 국내소비(수요)물량, 국내소비(수요)금액, 생산능력, 생산량, (총)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임금: 10,000
- ② 국내생산품출하량, 국내생산품출하금액, 톤당 원화재판매가격, 톤당 국내생산품 판매가격, 총출하, 톤당 제조원가, 톤당 (원)재료비·노무비·경비, 설비투자비, 국내생산품의 실제판매가격과 적정판매가격: 1,000

- ③ 자가소비, 기타출고, 재고, 연구개발비, 고용인원: 1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조사대상물품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란에 증감현황을 표시함

- 기준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축소 또는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가. 신청취지

- '19.2.8. 한솔제지주식회사는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의 덤핑(신청인 제시 덤핑률: 18.4~58.5%)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함

나. 신청인

- 한솔제지주식회사

- 대리인: 법무법인 올림(변호사 김태우), 더인터넷내셔널트레이드컨설팅 (공인회계사 김성태)

(17년 기준)

구분	신청인	한솔제지주식회사
설립일		'65.1.19.
대표자		이상훈
주소	본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B동
	자본금	119,013백만원
주요 주주 및 지분율		한솔홀딩스㈜ 30.5%, KB자산운용 8.3%, 국민연금 7.0%, 우리사주조합 1.8%
매출액	전체	1,539,435백만원
	동종물품	xxx백만원
주요 생산제품		글라신지, 인쇄용지, 산업용지, 특수지
종업원수		1,038명

* 자료: 조사신청서

다. 피신청인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신청인 제시 증명률
대만	청화펄프(Chung Hwa Pulp Corp.) ¹⁾	28.2%
중국	유피엠(UPM Specialty Papers)	18.4%
일본	오지 에프(Oji F-Tex Co., Ltd.)	58.5%
이탈리아	참 페이퍼(Cham Paper Group Holding AG) ²⁾	55.5%

* 자료: 조사신청서

2. 조사신청물품 및 국내생산품

가. 조사신청물품

- 품명: 글라신지 (Glassine paper)

- 관세품목분류: HSK 4806.40.1000, 4806.40.9000
- 관세율: 기본관세율 8.0%, WTO협정세율 0%(04년 발효)

- 정의: 안료와 바인더³⁾ 등을 도포한 후 슈퍼켈린더링 공정⁴⁾을 거쳐 투명도를 높인 종이로, 원재료 및 생산공정은 유사하나 공정조건⁵⁾을 달리하여 생산한 그 밖의 투명광택지나 반투명광택지를 포함함

- 물리적 특성: 평활도(Smoothness)⁶⁾, 투명도(Transparency)⁷⁾, 평량(Basis weight)⁸⁾, 두께(Thickness)⁹⁾, 수분함수율(Moisture)¹⁰⁾, 유분흡착도(Oil absorbency)¹¹⁾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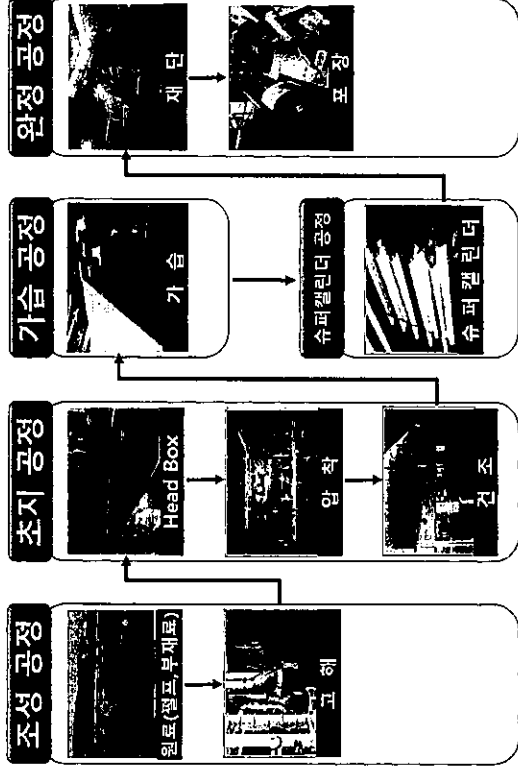
1) 청화펄프(Chung Hwa Pulp Corp.)는 2012년 Yuen Foong Yu Group의 제지 및 펄프부문과 합병하였으며, Yuen Foong Yu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
2)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는 Sappi Europe S.A의 이탈리아 소재 자회사임
3) 안료와 펄프의 집착력, 차단성(스피커가 글라신지 대지와 잘 떨어지게 하는 성질) 등을 높이기 위한 성분
4) 원지를 다단의 가열한 롤 사이로 통과시켜 높은 압력을 가해 투명도, 평활도 등을 개선하는 공정
5) 롤의 온도, 압력 등
6) 종이의 표면이 얼마나 평평하고 매끄러운가를 나타내며, 거칠도(Roughness)와 상반되는 개념임
7) 종이의 투명한 정도를 종이에 투과한 빛의 양을 입사광의 양으로 나누어 표시함
8) 단위면적당 종이의 무게로 보통 1㎡ 당 무게를 의미하며, GSM(g/㎡)으로 표기됨
9) 종이 한 장의 높이를 말하며 두께측정기에서 0.05kgf/㎝의 압력으로 측정함
10) 종이의 총량 대비 수분의 함유중량 비율(%)로 측정함
11) 종이에 유분이 흡착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Cobb-Unger Method로 측정함

- 용도: 식품료, 생활용품, 택배 등 다양한 라벨스티커 뒷면 대지용이나 식품, 약품, 금속부품 등에 대한 보호포장에 주로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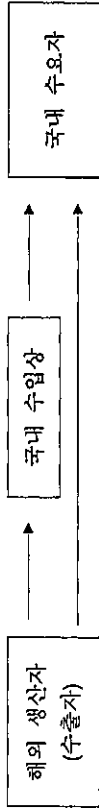
○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 ① 조성공정: 종이의 주원료인 펄프를 물과 부재료(전분, PVA 등)를 혼합하여 생산에 필요한 슬러리(Slurry) 상태로 만드는 공정
- ② 초지공정: 조성공정에서 생산된 원료를 지층형성, 압착탈수, 건조, 표면처리 등의 과정을 통해 글라신지 원지로 만드는 공정
- ③ 가습공정: 제품의 투명도를 발현하기 위해 원지에 수분을 끌고루 빼려주는 공정
- ④ 슈퍼켈린더공정: 원지를 다단의 가열한 슈퍼켈린더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높은 압력을 가해 투명도, 평활도 등을 개선하는 공정
- ⑤ 완정공정: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롤(Roll) 또는 시트(Sheet)로 재단포장하는 공정

< 제조공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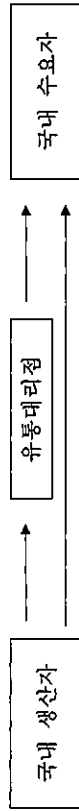


- 유통경로: 조사신청물품은 국내 수입상이 해외 생산자(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수요자가 직접 해외 생산자(수출자)로부터 수입함



나. 국내생산품

- 품명 및 정의: 조사신청물품과 같음
- 물리적 특성 등: 신청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 및 용도,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이 동일 또는 유사함
-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신청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과 국내 생산품은 구입할 만한 차이가 없으므로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함
- 유통경로: 신청서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은 국내생산자가 직접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통대리점을 통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함



3.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가. 국내생산자

('17년 기준)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한솔제지주식회사	xxx
합계	xxx
비 중(%)	
한솔제지주식회사	100
합계	100

* 자료 : 조사신청서

나. 조사신청물품 수입자

- xxx, xxx, xxx 톤

다. 조사신청물품 수요자

- xxx, xxx, xxx 톤

4. 국내수급 현황

- 신청서에 의하면, 국내의 클라신지 수요·공급은 '17년 xxx톤으로 국내소비 100.0%, 수출 0.0%이며, 국내공급 xx.x%, 수입 xx.x%임

년도		'15년	'16년	'17년	'17년 1~9월	'18년 1~9월
구분	수량	10,000	9,340	9,562	7,253	7,553
	금액	10,000	9,383	9,253	7,018	7,699
수요	물량	0	0	0	0	0
	금액	0	0	0	0	0
공급	물량	10,000	9,340	9,562	7,253	7,553
	금액	10,000	9,383	9,253	7,018	7,699
합계	물량	10,000	9,340	9,562	7,253	7,553
	금액	10,000	9,383	9,253	7,018	7,699
국내	물량	1,000	833	908	676	382
	금액	1,000	894	951	716	433
해외	물량	23,383	22,482	22,676	17,274	19,995
	금액	37,214	35,304	34,201	25,991	31,712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6.6%	△6.2%	△1.4%	2.4%	4.2%
		△6.2%	△6.2%	△1.4%	2.4%	4.2%
		-	-	-	-	-
		-	-	-	-	-
		△16.7%	△16.7%	9.1%	9.1%	△42.7%
		△10.4%	△10.4%	6.1%	6.1%	△39.3%
		△3.9%	△3.9%	0.9%	0.9%	15.8%
		△5.1%	△5.1%	△3.1%	△3.1%	22.0%

* 자료: 조사신청서

* 국내소비=내수판매+수입, 국내공급=내수판매+수출

5. 비밀취급여부 검토

< 검토할 사항 >

- 비밀취급 요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성격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인 경우,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인이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요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성격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 (검평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6.5조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1조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2조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가. 비밀취급 요청 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조사신청서

나. 이해관계인 제출서류의 정당한 사유 제출 여부

- 신청인은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다. 비밀취급 자료 공개시 제출자 및 이해관계인 이익의 침해우려 여부

- 신청인은 조사신청서 및 별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제조원가,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거래선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비밀정보의 제공자, 가격정보 및 시황에 관한 사항 등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비공개정보 목록 및 비공개사유에 대해 제출함
- 조사실은 신청서상의 비공개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정보를 직접 영업에 활용하거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 및 신청인에게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함

II. 조사개시 여부 검토

< 검토할 사항 >

-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 조사에 찬성한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의 대표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 덤핑사실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 해당 여부
 - 미소덤핑마진 또는 미소수입물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산업의 피해가 경미한지 여부
 -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 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

< 관계 법규 >

- 관세법시행령 제59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 ②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 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 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사업으로 한다.
- ③ 제1항에서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관제 법규 >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영 제59조제2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원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③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또는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제기분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관제 법규 >

○ 관세법시행령 제60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개시)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조사개시 전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개시)

②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1.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③ 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여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영 제59조제1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1. 조사신청 자격 유무

- 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 한솔제지주식회사는 조사신청물품의 국내 생산자이며, 조사대상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와 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 한솔제지주식회사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내('18.8.9~'19.2.8.)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으므로 국내산업에 해당함
- 따라서 신청인은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는 조사신청 자격이 있음

2. 국내산업의 대표성 충족 여부

- 해당 국내산업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섬유화학탄소과)에 확인한 결과,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생산자는 한솔제지주식회사 1개사업
- 따라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함

< 국내생산자 찬·반 의견 현황 >

(’17년 기준)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비 중(%)	찬·반 의견
한솔제지주식회사	xxx	100	찬성
합계	xxx	100	

* 자료 : 조사신청서

3. 덤핑사실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신청인은 대만 28.2%, 중국 18.4%, 일본 58.5%, 이탈리아 55.5%의 덤핑률을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 정상가격에 관한 증빙으로 구성가격 산출내역¹²⁾, 현지조사 유통가격 자료¹³⁾, 제3국 수출가격¹⁴⁾을 제출하였으며, 조정요소로 내륙 및 해상 운반비 등을 제시하고 World Bank-Doing Business¹⁵⁾ 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함
- 수출가격과 파세가격에 대한 증빙자료로 관세청 수입통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조정요소로 내륙 및 해상운반비, 수출항비용, 해상보험료 등을 제시하고 견적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함
- 조사신청서에 제시된 증빙자료는 WTO 반덤핑협정 제5.2조에 따른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며, 동 협정 제5.3조에 따른 각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 따라서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4.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신청인은 ‘15년부터 ‘18년 9월까지 국내생산품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국내판매량, 시장점유율, 재고율, 판매가격, 손익, 제조원가, 설비투자, 연구개발, 고용, 임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음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가동률,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재고율은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12) 신청인은 대만의 시장 상황이 관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RUS(시장조사전문기관)와 World Bank-Doing Business 2019(대만) 자료 등을 기반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함

13) 신청인은 xxx를 기반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

14) 신청인은 일본, 이탈리아의 시장 상황이 관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각 제3국 수출증 수송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 독일로 수출한 가격을 제출함

15) World Bank는 전세계 무역증진을 위해 무역에 필요한(Doing Business) 국가별 정보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국가별 수출입과 관련된 비용 및 소요시간에 대한 정보를 Trading Across Border에서 다루고 있음

- 신청서에 제시된 증빙자료는 WTO 반덤핑협정 제5.2조에 따른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며, 동 협정 제5.3조에 따른 각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 따라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에 대한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5.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신청인은 '15년부터 '18년 9월까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 시장 점유율 및 판매가격 자료와 국내생산품의 국내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가격, 적정판매량 및 적정판매가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음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은 '16년부터 국내생산품 보다 저가에 판매되었으며,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국내생산품은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음

- 신청서에 제시된 증빙자료는 WTO 반덤핑협정 제5.2조에 따른 '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며, 동 협정 제5.3조에 따른 각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 따라서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6.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 해당 여부

가. 미소덤핑마진 또는 미소수입물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제시한 공급국의 덤핑률은 18.4 ~ 58.5%로서 미소마진 기준16)을 초과하므로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6) 덤핑차액이 덤핑가격의 100분의 2 미만

- 조사신청일 직전 1년17)('18.1.1.~'18.12.31.)의 총 수입물량 대비 조사신청 물품의 수입비중은 77.8%18)로서 미소수입물량 기준19)을 초과하므로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국내산업의 피해가 경미한지 여부

- 신청인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으며, 고객 상실로 인한 매출액 상실 추정치가 xxx억원('17년)에 달한다고 주장함

- 또한, 조사신청물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인상이 억제되었으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매출액 상실 추정치가 xxx억원('17년)에 달한다고 주장함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15년 xxx억원, '16년 xxx억원, 17년 xxx억원, '18년 9월 xxx억원의 직자가 지속되고,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므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경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17) 미소수입물량 여부는 조사신청일 직전 정보이용이 가능한 1년을 대상으로 판단함(산업피해조사 실무 지침 III.2.마)

18) 조사신청일 직전 1년간 총 수입물량 27,045톤 중 내만산 13,077톤(48.4%), 중국산 4,626톤(17.1%), 일본산 2,122톤(7.8%), 이탈리아산 1,222톤(4.5%) (자료: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19)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 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Ⅲ. 종합 검토의견

- 신청인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사신청 자격이 있고, 국내산업의 대표성을 충족하며,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본전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Ⅳ. 조사실 결정사항

1. 조사대상물품

- 품명: 글라신지 (Glassine paper)

- 관세품목분류: HSK 4806.40.1000, 4806.40.9000 ²⁰⁾ - 관세율: 기본관세율 8.0%, WTO협정세율 0%(04년 발효)
--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조사범위 : 안료와 바인더²¹⁾ 등을 도포한 후 슈퍼캘린더링 공정²²⁾을 거쳐 투명도를 높인 종이로, 원재료 및 생산공정은 유사하나 공정조건²³⁾을 달리하여 생산한 그 밖의 투명광택지나 반투명광택지를 포함함

*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및 물품통제코드(CCN)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2. 조사대상기간

-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 관세법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라 '17.10.1.부터 '18.9.30.까지로 하되, 추후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15.1.1.부터 '18.12.31.까지로 하되, 국내 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가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²⁰⁾ 한국 및 유럽의 관세분류번호는 '그 밖의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광택지(4806.40.9000)'를 별도 분류하고 있으나 대만, 중국 및 일본의 관세분류번호는 이를 분류하지 않고 있음

²¹⁾ 안료와 펄프의 정작성, 차단성(스티커가 글라신지 대지와 잘 떨어지는 성질) 등을 높이기 위한 성분

²²⁾ 종이를 다단의 가열한 롤 사이로 통과시켜 높은 압력을 가하는 공정

²³⁾ 롤의 온도, 압력 등

- 이와 관련 신청인은 국내산업 피해의 증빙으로 '15.1.1.부터 '18.9.30.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함

< 관련 규정 >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신청 · 조사 · 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무역위원회 고시 제2011-3호)
- 제3조(조사대상기간)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또는 보조금등 지급 사실에 관한 조사는 6월 이상의 기간을,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무역위원회 예규 제2010-2호, I.총칙. 2. 조사대상기간)
-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대상기간은 통상 조사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부터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개시결정 시점까지 자료가용이 가능한 기간임²⁴⁾

3. 조사대상자

-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신청인 제시 덤핑률
대만	청화펄프(Chung Hwa Pulp Corp.)	28.2%
중국	유피엠펜(JPM Specialty Papers)	18.4%
일본	오지 에프(Oji F-Tex Co., Ltd.) 제팬 펄프(Japan Pulp & Paper)	58.5%
이탈리아	참 페이퍼(Cham Paper Group Italia S.p.A.) 사피(Sappi Italy operation S.p.A.)	55.5%

* 자료: 조사신청서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상기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²⁵⁾ · 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판보에 게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 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피해 조사를 실시하며, 실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수행함

24) '10년 이후 최종판정한 원심 19건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은 조사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4년간이었음 (3년간 3건, 3년6월간 5건, 4년간 11건)

25)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무역구제조사 진행 > 반덤핑 조사건명 > 결의서/답변서 참조

4. 조사기간

- 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판정을 하되,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판정을 하되,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5. 이해관계인 참가 신청

-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명평부문은 명평 조사과,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토록 함

참고 1 신청인이 제출한 명평사실 관련 증빙자료

1. 신청인 제시 명평률

- 신청인은 대만, 중국, 일본, 이탈리아 공급자에 대하여 각각 28.2%, 18.4%, 58.5%, 55.5%의 공급국별 명평률을 제시함

(단위: USD/톤)

공급국	조정된 정상가격(A)	조정된 수출가격(B)	명평차액 (C=A-B)	과세가격 (D)	명평률 (E=C/D×100)
대만	xxx	xxx	xxx	1,263.3	28.2%
중국	xxx	xxx	xxx	1,377.0	18.4%
일본	xxx	xxx	xxx	1,262.9	58.5%
이탈리아	1,899.2	xxx	xxx	1,277.3	55.5%

2. 명평사실에 관한 증빙자료

가. 대만

1)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 정상가격: 신청인은 중간제이자 특수지인 조사신청물품에 대한 일반 유통 가격정보가 없는 시장상황을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26)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해 정상가격으로 제시함

- Soft 및 Hard 펄프의 대만 수입가격²⁷⁾에 수입비용²⁸⁾, 부재료비 및 포장 재료비²⁹⁾ 등의 부대비용을 더해 제조원가를 추산한 후, 피신청인의 2017년 손익계산서에서 추산한 관리비 및 판매비, 이윤을 합해 산정함

26)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 (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27) 펄프 및 종이제품 관련 저명한 시장조사전문기관인 RISI(www.risinfo.com)가 발표한 자료중 대만이 포함된 East Asia 수입가격을 적용함

28) World Bank-Doing Business 2019(대만)에서 발표한 국내운송비용(US\$ 300) 및 상하역비, 통관료 등의 수입부대비용(US\$340.4)에 운송중량(15톤)을 적용함

29) 신청인의 2017년 생산실적을 기반으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조정요소: 구성가격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원천적으로 운반비 등의 조정요소가 포함되지 않음

< 조정된 정상가격 >

정상가격 (A)	조정요소 (B)	조정된 정상가격 (C=A-B)
xxx	0	xxx

(단위: USD/톤)

2) 수출가격 및 조정요소

- 수출가격: 신청인은 수출가격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관세청 수입통계자료상 관련 세번 수입단가를 제출함
- 조정요소: 내륙운반비 및 수출항비용³⁰⁾, 해상운반비³¹⁾, 해상보험료³²⁾를 조정요소로 반영함

< 조정된 수출가격 >

수출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수출가격(C=A-B)
	내륙운반비	수출항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1,263.3	20.0	22.4	xxx	xxx

(단위: USD/톤)

3) 파세가격

- 파세가격은 관세청 수입통계자료상 대만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CIF 가격 기준이므로 이를 파세가격으로 함

30) 내륙운반비 및 수출항비용은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대만) 자료를 기초로 산정함
31) 해상운반비는 xxx에 근거하여 산정함
32) 해상보험료는 신청인이 적용하고 있는 기본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나. 중국

1) 정상가격

- 정상가격: 신청인은 xxx에 근거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함
- 조정요소: 정상가격의 도착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가격의 내륙운송비를 적용함

< 조정된 정상가격 >

(단위: USD/톤)

정상가격 (A)	조정요소(B) (내륙운반비)	조정된 정상가격 (C=A-B)
xxx	11.9	xxx

2) 수출가격 및 조정요소

- 수출가격: 신청인은 수출가격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관세청 수입통계자료상 관련 세번 수입단가를 제출함
- 조정요소: 내륙운반비 및 수출항비용³³⁾, 해상운반비³⁴⁾, 해상보험료³⁵⁾, 증치세³⁶⁾를 조정요소로 반영함

< 조정된 수출가격 >

(단위: USD/톤)

수출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수출가격(C=A-B)
	내륙운반비	수출항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증치세
1,377.0	11.9	20.3	xxx	xxx	219.7

33) 내륙운반비 및 수출항비용은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중국, 상하이) 자료를 기초로 산정함
34) 해상운반비는 xxx에 근거하여 산정함
35) 해상보험료는 신청인이 적용하고 있는 기본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36)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16%를 적용해 산정함 (중국정부는 2018년 5월 1일 기준으로 기존 17%였던 증치세율을 16%로 인하)

3) 파세가격

- 파세가격은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자료상 중국으로부터 수입가격이 CIF가격 기준이므로 이를 파세가격으로 함

다. 일본

1)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 정상가격: 신청인은 중간제이자 특수지인 조사신청물품에 대한 일반 유통 가격정보가 없는 시장상황을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3)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3국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제시함
- 덤핑조사대상기간 중 일본이 조사대상물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중국으로의 평균수출가격을 기초로 제3국수출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무역협회의 해외 통계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함

- 조정요소: 내륙운반비 및 수출항비용³⁸⁾, 해상운반비³⁹⁾, 해상보험료⁴⁰⁾를 조정요소로 반영함

< 조정된 정상가격 >

(단위: USD/톤)

정상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운반비	수출항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1,986.7	21.5	16.1	xxx	xxx	xxx

2) 수출가격 및 조정요소

37) "통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 (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38) 내륙운반비 및 수출항비용은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일본) 자료를 기초로 산정함

39) 해상운반비는 신청인이 거래지로부터 입수한 xxx을 기준으로 산정함

40) 해상보험료는 신청인이 적용하고 있는 기본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수출가격: 신청인은 수출가격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관세청 수입통계자료상 관련 세번 수입단가를 제출함
- 조정요소: 내륙운반비 및 수출항비용⁴¹⁾, 해상운반비⁴²⁾, 해상보험료⁴³⁾를 조정요소로 반영함

< 조정된 수출가격 >

(단위: USD/톤)

수출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수출가격(C=A-B)
	내륙운반비	수출항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1,262.9	21.5	16.1	xxx	xxx	xxx

3) 파세가격

- 파세가격은 관세청 수입통계자료상, 일본으로부터 수입가격이 CIF가격 기준이므로 이를 파세가격으로 함

라. 이탈리아

1) 정상가격 및 조정요소

- 정상가격: 신청인은 중간제이자 특수지인 조사신청물품에 대한 일반 유통 가격정보가 없는 시장상황을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4)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3국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제시함
- 덤핑조사대상기간 중 이탈리아가 조사대상물품을 가장 많이 수출한 독일로의 평균수출가격을 기초로 제3국수출가격을 산정하고, EURO STAT 통계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함

41) 내륙운반비 및 수출항비용은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일본) 자료를 기초로 산정함

42) 해상운반비는 xxx에 근거하여 산정함

43) 해상보험료는 신청인이 적용하고 있는 기본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44) "통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 (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 조정요소 : 내륙운반비용(45)을 조정요소로 반영함

< 조정된 정상가격 >

(단위 : USD/톤)

정상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운반비	수출항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1,980.9	81.7	0	0	0	1899.2

2) 수출가격 및 조정요소

- 수출가격: 신청인은 수출가격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관세청 수입통계자료상 관련 세번 수입단가를 제출함
- 조정요소: 수출항비용(46), 해상운반비(47), 해상보험료(48)를 조정요소로 반영함
- < 조정된 수출가격 >

(단위: USD/톤)

수출가격 (A)	조정요소(B)				조정된 수출가격(C=A-B)
	내륙운반비	수출항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	
1,277.3	0(49)	11.6	xxx	xxx	xxx

3) 파세가격

- 파세가격은 관세청 수입통계자료상, 일본으로부터 수입가격이 CIF가격
기준이므로 이를 파세가격으로 함

- 45) 내륙운반비는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이탈리아)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이탈리아 독일이 내륙으로 인접해 있음을 감안해 수출항비용, 해상운반비, 해상보험료는 산정하지 않음
- 46) 수출항비용은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9(이탈리아) 이탈리아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OECD High Income 국가의 평균 상하역로, 부두사용료, 통관료 등 수출비용(US\$ 139.1) 및 수출서류 작성비용(US\$ 35.2)을 운송수량 (15톤)을 기준으로 산정함
- 47) 해상운반비는 xxx에 근거하여 산정함
- 48) 해상보험료는 신청인이 적용하고 있는 기본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49) 신청인은 이탈리아 내륙운반비 자료를 입수할 수 없자, 보수적 판단 하에 국내운송비를 조정
요소에 반영하지 않음

참고 2 신청인이 제출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 관련 증빙자료

1.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에 관한 자료

< 제판매가격 현황 >

(단위: 백만원, 천원/톤)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7년 1~9월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대만	수입금액	14,427	15,498	7.4%	16,151	4.2%	12,484	13,516	8.3%
	평균수입가격(CIF)	1,403	1,389	△1.0%	1,343	△3.3%	1,349	1,399	3.7%
	원화제판매가격	1,000	990	△1.0%	952	△3.3%	962	992	3.7%
중국	수입금액	1,084	1,436	32.5%	2,505	74.4%	1,578	4,809	204.8%
	평균수입가격(CIF)	2,048	1,888	△7.8%	1,414	△25.1%	1,377	1,618	17.5%
	원화제판매가격	1,000	992	△7.8%	692	△25.1%	672	790	17.5%
일본	수입금액	2,390	2,207	△7.7%	2,173	△1.5%	1,571	2,334	48.6%
	평균수입가격(CIF)	1,652	1,642	△0.6%	1,432	△12.8%	1,416	1,361	△3.9%
	원화제판매가격	1,000	994	△0.6%	862	△12.8%	852	824	△3.9%
이탈리아	수입금액	715	599	△16.2%	1,190	98.7%	704	1,493	112.1%
	평균수입가격(CIF)	1,671	1,592	△4.7%	1,422	△10.7%	1,449	1,416	△2.3%
	원화제판매가격	1,000	953	△4.7%	852	△10.7%	862	842	△2.3%
조사대상 공급국	수입금액	18,616	19,740	6.0%	22,019	11.5%	16,337	22,152	35.6%
	평균수입가격(CIF)	1,467	1,448	△1.3%	1,363	△5.8%	1,362	1,438	5.6%
	원화제판매가격	1,000	982	△1.3%	924	△5.8%	928	980	5.6%
기타수입국 제판매가격		1,000	1,012	1.2%	1,074	6.1%	1,052	1,194	13.8%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1,000	1,076	7.6%	1,042	△2.7%	1,059	1,122	6.0%

* 자료: 조사신청서

(주1) 제판매가격=달러수입가격(CIF)×연평균환율×(1+관세율+통관제비용)

① 관세율=0%(WTO 양허세율 적용)

② 통관제비용=신청인이 원재료 수입시 실제 지급비용의 비율(수입부대비용/수입
금액×100=1%)

(주2) 국내생산품의 평균가격 = 국내출하금액/국내출하물량

2.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에 관한 자료

< 국내소비 현황 >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a=b+c)	물량	10,000	9,340	△6.6%	9,567	2.4%	7,253	7,553	4.2%
	금액	10,000	9,383	△6.2%	9,253	△1.4%	7,018	7,692	9.7%
총수입 (b=c+d)	물량	23,383	22,482	△3.9%	22,676	0.9%	17,274	19,995	15.8%
	금액	37,214	35,304	△5.1%	34,201	△3.1%	25,991	31,712	22.0%
조사신청물품 수입(c)	물량	12,687	13,637	7.5%	16,151	18.4%	11,994	15,399	28.4%
	금액	18,616	19,740	6.0%	22,019	11.5%	16,337	22,152	35.6%
대만산	물량	10,283	11,156	8.5%	12,026	7.8%	9,252	9,658	4.4%
	금액	14,427	15,498	7.4%	16,151	4.2%	12,484	13,516	8.3%
중국산	물량	529	761	43.9%	1,771	132.7%	1,146	2,972	159.3%
	금액	1,084	1,436	32.5%	2,505	74.4%	1,578	4,809	204.8%
일본산	물량	1,447	1,344	△7.1%	1,517	12.9%	1,110	1,715	54.5%
	금액	2,390	2,207	△7.7%	2,173	△1.5%	1,571	2,334	48.6%
이탈리아산	물량	428	376	△12.1%	837	122.6%	486	1,054	116.9%
	금액	715	599	△16.2%	1,190	98.7%	704	1,493	112.1%
기타수입(d)	물량	10,696	8,845	△17.3%	6,525	△26.2%	5,280	4,596	△13.0%
	금액	18,598	15,564	△16.3%	12,182	△21.7%	9,654	9,560	△1.0%
국내생산품 출하(e)	물량	1,000	833	△16.7%	908	9.1%	676	387	△42.7%
	금액	1,000	898	△10.4%	951	6.1%	716	435	△39.3%
조사신청물품 수입(c/a)	물량	xx.x%	xx.x%	6.4%p	xx.x%	7.7%p	xx.x%	xx.x%	13.0%p
	금액	xx.x%	xx.x%	5.6%p	xx.x%	2.1%p	xx.x%	xx.x%	0.1%p
대만산	물량	xx.x%	xx.x%	1.0%p	xx.x%	3.5%p	xx.x%	xx.x%	7.9%p
	금액	xx.x%	xx.x%	0.0%p	xx.x%	0.5%p	xx.x%	xx.x%	2.5%p
일본산	물량	xx.x%	xx.x%	△0.1%p	xx.x%	1.6%p	xx.x%	xx.x%	2.4%p
	금액	xx.x%	xx.x%	△4.1%p	xx.x%	△8.9%p	xx.x%	xx.x%	△4.0%p
기타수입(d/a)	물량	xx.x%	xx.x%	△2.3%p	xx.x%	1.2%p	xx.x%	xx.x%	△8.9%p
	금액	xx.x%	xx.x%	△2.3%p	xx.x%	1.2%p	xx.x%	xx.x%	△8.9%p

* 자료: 조사신청서

3.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

가. 생산량 및 가동률

< 생산량 및 가동률 >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물량	10,000	10,000	0.0%	10,000	0.0%	7,500	7,500	0.0%
	금액	10,000	10,000	△11.0%	10,280	15.6%	7,689	4,421	△42.4%
생산량(b)	물량	xx.x%	xx.x%	△6.0%p	xx.x%	7.5%p	xx.x%	xx.x%	△23.7%p
	금액	xx.x%	xx.x%	△6.0%p	xx.x%	7.5%p	xx.x%	xx.x%	△23.7%p

* 자료: 조사신청서

나. 판매 및 재고현황

< 판매현황 >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 (a=b+c+d+e)	물량	1,000	803	△19.5%	887	10.3%	649	393	△39.1%
	금액	1,000	856	△14.4%	916	7.2%	676	443	△34.7%
국내출하 (b)	물량	1,000	833	△16.7%	908	9.1%	676	387	△42.7%
	금액	1,000	898	△10.4%	951	6.1%	716	435	△39.3%
수출 (c)	물량	0	0	-	0	-	0	0	-
	금액	0	0	-	0	-	0	0	-
자가소비 (d)	물량	100	24	△76.1%	52	118.2%	18	90	388.2%
	금액	100	24	△79.5%	43	108.7%	18	92	518.0%
기타출고 (e)	물량	100	41	△59.4%	53	31.5%	17	16	△6.7%
	금액	100	38	△61.7%	43	22.6%	14	12	16.3%

* 자료: 조사신청서

< 재고현황 >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a)	물량	1,000	803	△19.5%	887	10.3%	649	393	△39.1%
	금액	1,000	856	△14.4%	916	7.2%	676	443	△34.7%
재고(b)	물량	100	82	△18.3%	163	99.6%	179	167	△6.6%
	금액	xx.x%	xx.x%	0.0%p	xx.x%	3.4%p	xx.x%	xx.x%	6.1%p

* 자료: 조사신청서

다. 손익

< 손익현황 >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10,000		8,961	△10.4%	9,506	6.1%	7,159	4,346 △39.3%
매출원가(b)		10,000		7,259	△27.2%	7,642	5.3%	5,599	4,036 △27.9%
매출총이익(c=a-b)		적지		후자	흑자전환	후자	48.7%	후자	적지 적자전환
판매비와관리비(d)		10,000		9,124	△8.8%	9,845	7.9%	7,079	4,033 △43.0%
영업이익(e=c-d)		적지		적지 적자감소	적지 적자감소	적지 적자감소		적지 적자확대	
영업이익률(f=e/a)		xx.x%		xx.x%	22.9%p	xx.x%	0.6%p	xx.x%	xx.x% △17.3%p

* 자료: 조사신청서

라. 제조원가

< 단위당 제조원가 >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료비(a)		1,000		924	△7.6%	850	△8.0%	832	1,195 43.7%
노무비(b)		1,000		936	△6.4%	854	△8.8%	834	1,732 107.6%
경 비(c)		1,000		795	△20.5%	830	4.4%	821	702 △14.6%
제조원가(a+b+c)		1,000		872	△12.8%	842	△3.5%	829	1,043 25.9%

* 자료: 조사신청서

다.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1,000		2,023	107.3%	543	△73.7%	100	333 233.3%
연구개발		1,000		889	△11.1%	944	6.3%	722	333 △53.8%

* 자료: 조사신청서

바. 고용 및 임금

< 고용 및 임금 현황 >

(단위: 명, 천원)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연평균 고용 인원	생산직	100		90	△10.0%	90	0.0%	90	70 △22.2%
	일반직	100		73	△25.0%	100	33.3%	100	50 △50.0%
	계	100		86	△14.3%	93	8.3%	93	64 △30.8%
연평균 1인당 임금	생산직	10,000		11,905	19.0%	10,852	△8.8%	10,282	10,592 3.0%
	일반직	10,000		11,356	13.6%	10,011	△11.8%	8,789	8,249 △6.1%
	평균	10,000		11,604	16.0%	10,390	△10.5%	9,440	9,259 △1.9%

* 자료: 조사신청서

사. 주요 원자재 가격

< 주요 원자재 가격 >

(단위: 천원/톤)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평균펠프가격		730		645	△11.6%	785	21.7%	743	929 24.9%
소프트우드 펄프		729		695	△4.7%	805	15.8%	753	985 30.8%
하드우드 펄프		730		595	△18.5%	765	28.6%	734	872 18.8%
국내생산품가격		1,000		1,076	7.6%	1,042	△2.7%	1,059	1,123 6.0%

* 자료: 조사신청서

참고 3 **신청인이 제출한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피해의 인과관계 증빙자료**

1.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과 국내생산품 공장도판매가격 비교 >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조사신청물품 평균재판매가격(a)		1,000		987	△1.3%	929	△5.8%	928	980
- 대만		1,000		990	△1.0%	957	△3.3%	962	997
- 중국		1,000		992	△0.8%	691	△25.1%	672	790
- 일본		1,000		994	△0.6%	867	△12.8%	852	824
- 이탈리아		1,000		953	△4.7%	851	△10.7%	867	847
○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1,000		1,012	1.2%	1,074	6.1%	1,052	1,196
○ 국내생산품 판매가격(b)		1,000		1,076	7.6%	1,047	△2.7%	1,059	1,123
○ 차이(c=a-b)		xxx		xxx	재판매제한	xxx	재판매제한	xxx	재판매제한
- 대만		xxx		xxx	재판매제한	xxx	재판매제한	xxx	재판매제한
- 중국		xxx		xxx	△43.5%	xxx	재판매제한	xxx	재판매제한
- 일본		xxx		xxx	△53.6%	xxx	재판매제한	xxx	재판매제한
- 이탈리아		xxx		xxx	△77.9%	xxx	재판매제한	xxx	재판매제한
- 기타수입국		xxx		xxx	△28.5%	xxx	67.5%	xxx	xxx

* 자료: 조사신청서

(주) 재가판매는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된 것이며, 고가판매는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된 것임

< 국내생산품의 실제 판매가격과 적정판매가격 비교 >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국내생산품 적정판매가격(a)		1,000		886	△11.4%	856	△3.3%	842	1,043
- 제조원가		1,000		872	△12.8%	842	△3.5%	829	1,043
- 판매비		1,000		1,096	9.6%	1,079	△1.6%	1,044	1,039
○ 국내생산품 실제판매가격(b)		1,000		1,076	7.6%	1,047	△2.7%	1,059	1,123
○ 차이(a-b)		1,000		477	△52.3%	442	△6.2%	375	869

* 자료: 조사신청서

<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억제로 인한 수입상실 >

(단위: 천원/톤, 톤, 백만원)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산품 실제판매가격(a)		1,000		1,076	7.6%	1,047	△2.7%	1,059	1,123
적정판매단가(b)		1,000		886	△11.4%	856	△3.3%	842	1,043
단위당수입상실(c=b-a)		1,000		477	△52.3%	448	△6.1%	376	870
국내판매수량(d)		1,000		833	△16.7%	908	9.1%	676	387
수입상실(e=c×d)		1,000		397	△60.3%	407	2.6%	254	337

* 자료: 조사신청서

< 고객상실로 인한 수입상실 >

(단위: 톤, 천원/톤, 백만원)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적정판매량(a)		1,000		934	△6.6%	957	2.4%	725	756
실제 판매량(b)		1,000		833	△16.7%	908	9.1%	676	387
판매상실분량(c= a-b)		1,000		1,049	4.9%	1,012	△3.6%	782	1,174
판매단가(d)		1,000		886	△11.4%	856	△3.3%	842	1,043
수입상실(e=c×d)		1,000		929	△7.1%	867	△6.8%	658	1,224

* 자료: 조사신청서

(주) 적정판매량은 신청인의 클라신지 제품의 사업계획서상 '13년 목표시장점유율 xxx%를 적용하여 산정함

2.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 국내소비 현황 >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국내소비 (a=b+c)	물량	10,000	9,340	△6.6%	9,562	2.4%	7,253	7,555	4.2%
	금액	10,000	9,383	△6.2%	9,253	△1.4%	7,018	7,699	9.7%
총수입 (b=c+d)	물량	23,383	22,482	△3.9%	22,676	0.9%	17,274	19,995	15.8%
	금액	37,214	35,304	△5.1%	34,201	△3.1%	25,991	31,712	22.0%
조사신청물품 수입(c)	물량	12,687	13,637	7.5%	16,151	18.4%	11,994	15,399	28.4%
	금액	18,616	19,740	6.0%	22,019	11.5%	16,337	22,152	35.6%
대만산	물량	10,283	11,156	8.5%	12,026	7.8%	9,252	9,658	4.4%
	금액	14,427	15,498	7.4%	16,151	4.2%	12,484	13,516	8.3%
중국산	물량	529	761	43.9%	1,771	132.7%	1,146	2,972	159.3%
	금액	1,084	1,436	32.5%	2,505	74.4%	1,578	4,809	204.8%
일본산	물량	1,447	1,344	△7.1%	1,517	12.9%	1,110	1,715	54.5%
	금액	2,390	2,207	△7.7%	2,173	△1.5%	1,571	2,334	48.6%
이탈리아산	물량	428	376	△12.1%	837	122.6%	486	1,054	116.9%
	금액	715	599	△16.2%	1,190	98.7%	704	1,493	112.1%
기타수입(d)	물량	10,696	8,845	△17.3%	6,525	△26.2%	5,280	4,596	△13.0%
	금액	18,598	15,564	△16.3%	12,182	△21.7%	9,654	9,560	△1.0%
국내생산품 출하(e)	물량	1,000	833	△16.7%	908	9.1%	676	382	△42.7%
	금액	1,000	896	△10.4%	951	6.1%	716	435	△39.3%
조사신청물품 수입(c/a)		xx.x%	xx.x%	6.4%p	xx.x%	7.7%p	xx.x%	xx.x%	13.0%p
국내소비 점유율	대만산	xx.x%	xx.x%	5.6%p	xx.x%	2.1%p	xx.x%	xx.x%	0.1%p
	중국산	xx.x%	xx.x%	1.0%p	xx.x%	3.5%p	xx.x%	xx.x%	7.9%p
	일본산	xx.x%	xx.x%	0.0%p	xx.x%	0.5%p	xx.x%	xx.x%	2.5%p
	이탈리아산	xx.x%	xx.x%	△0.1%p	xx.x%	1.6%p	xx.x%	xx.x%	2.4%p
기타수입(d/a)	xx.x%	xx.x%	xx.x%	△4.1%p	xx.x%	△8.9%p	xx.x%	xx.x%	△4.0%p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국내생산품 출하(e/a)	xx.x%	xx.x%	xx.x%	△2.3%p	xx.x%	1.2%p	xx.x%	xx.x%	△8.9%p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자료: 조사신청서

3. 조사신청물품 수입이외의 요인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 조사신청물품과 기타국산 물품의 제판매가격 >

구분	년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월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수량	증감률
조사신청물품의 평균제판매가격(a)	1,000	987	△1.3%	1,012	1.2%	929	△5.8%	928	5.6%
	1,000	1,000	1.2%	1,074	6.1%	1,052	1.9%	1,196	13.8%
기타수입국 평균제판매가격(b)	xx.x%	xx.x%	15.0%	xx.x%	61.4%	xx.x%	xx.x%	xx.x%	37.6%
	xx.x%	xx.x%	3.1%p	xx.x%	15.4%p	xx.x%	xx.x%	xx.x%	10.4%p

* 자료: 조사신청서

참고 4 산업통상자원부[섬유화학탄소과] 의견

대만, 중국 및 일본 및 이탈리아산 클라신지
반덤핑 신청관련 품목 및 산업현황

비 공 개

비 공 개

참고 5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클리신지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서 - 비공개정보 목록 및 비공개 사유

페이지	비밀취급 요청정보	법적 근거	비공개 사유
3	(표) 신청인에 관한 사항	②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 매출액 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매출액은 영업기밀 회계자료로서 대외공개 시 경쟁력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
5-6	(표) 주요수입자 및 본문의 수입자명	③	* 비공개 요청항목 : 수입자명 수입량 및 수입비중 개인정보보호법에 강화에 따라 무역협회는 수입자 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신청인이 영업 파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자료이며, 수출자들이 해당 정보를 악용하여 수입량이 많은 수입상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신청인의 국내시장점유율을 상실하게 할 수 있으며, 수입량이 적은 수입상은 수출자에게 접근하여 수입물량 확대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6	(표) 주요수요자	③	* 비공개 요청항목 : 수요자명 수요량 및 수요량 비중 신청인의 고객을 포함한 영업기밀 자료로서 대외공개 시 경쟁력 하락요인 조래
7	(표) 국내생산자에 관한 사항	②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의 국내생산량 신청인은 국내에서 유일한 생산자이므로 대외공개 시 타 경쟁사가 악용하여 신청인의 시장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고 해당 자료는 신청인의 영업 및 회계 기밀 자료로 대외 공개가 불가함.
7-8	(표) 국내수급현황 및 본문의 국내수요량과 시장점유율	②	* 비공개 요청항목 : 국내수요 물량 및 금액 시장점유율 해당 정보는 신청인의 핵심역량에 관한 영업 및 회계 기밀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국내에서 유일한 생산자이므로 해당 정보 공개 시 신청인의 기밀 정보가 쉽게 노출되므로 해당 사항은 비공개가 불가함.
18-19	일본 정상가격 조정사항 중 해상운임	④	해당 정보는 신청인의 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정보의 공개 시 해당 자료를 제공한 자의 일본 내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
20, 23, 28, 33	일본/중국/이탈리아/대만 정상가격/산정에서 사용된 해상운임	② ⑤	신청인이 매분기 경쟁 인찰을 통해 결정된 해상운임. 가격정보로 공개 시 구매 경쟁력 약화소지가 있음.
18, 20, 21, 23, 24, 28, 29, 33, 34	일본/중국/이탈리아/대만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산정에 사용된 해상보험료 요율 및 금액	②	신청인의 실제 해상보험료 지급증빙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임

22	중국의 정상가격	④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의 중국내 정상가격 및 정보 입수 경로 해당 정보는 신청인의 해외 영업방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로 해당 사실이 공개될 경우 제공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제공자의 현지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23	중국 정상가격 조정요소 중 국내운송비	④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국내운송비를 조정하기 위한 중국 수출자의 위치 해당 정보는 신청인의 해외 영업방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로 해당 사실이 공개될 경우 제공자를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제공자의 현지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30, 31, 32	대만의 정상가격	⑤ ①	정상가격 중 제로비 (제로수입가격) (비공개사유: ⑤) : 동 자료는 유료 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자료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정상가격 중 부제로비-제로원가 (비공개사유: ①) : 신청인의 조사신청물품의 제조원가를 이용한 구성 가격으로 산출되어 제조원가 정보를 벤치마크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신청인의 생산노하우를 빼앗길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해당 정보는 비공개가 불가함.
18, 20, 21, 22, 23, 25, 28, 29, 30, 33	조정된 정상가격, 조정된 덤핑가격	① ② ④ ⑤	상기에 기술된 정상가격 조정요소 및 덤핑가격 조정요소의 이유로 비공개가 불가함.
35, 36, 39, 40, 49, 52, 53, 55-59, 64	조사신청물품 재판매가격 및 가격산정근거	②	재판매가격은 신청인의 대외공개하지 않는 회계자료인 통관세비용을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해당 정보는 영업 기밀 자료를 포함하므로 공개가 불가함.
35, 36, 39, 40, 49, 52, 53, 62, 56-60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②	신청인의 대외공개하지 않는 판매실적을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해당 정보는 영업 기밀 자료이므로 공개가 불가함.
39, 52, 56-58	조사신청물품 원화재판매가격과 국내생산품 가격 차이 비교	②	조사신청물품의 원화재판매가격과 국내생산품 가격의 차이비율을 공개할 경우 피신청인은 본인의 수출가격으로 원화재판매가격을 쉽게 추정한 후 가격 차이 비율을 이용하여 국내생산품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가 불가함.
36, 40, 57, 64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및 가격산정근거	②	신청인의 대외공개하지 않는 회계자료인 통관세비용을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해당 정보는 영업 기밀 자료를 포함하므로 공개가 불가함.
38, 42, 43, 55	국내생산품 출하 물량 및 금액	②	신청인의 대외공개하지 않는 판매실적을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해당 정보는 영업 기밀 자료이므로 공개가 불가함.

38, 55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재비율 및 금액	② ⑤	신청인의 국내생산품 출하는 대외공개 되지 않는 영업실적자료임. 또한, 신청인은 국내 시장의 유일한 생산자이므로 본 정보의 공개시 신청인의 생산량, 국내 시장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공적적 가격정책을 통한 수입량의 확대로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음.
37-39 54, 55	조사신청물품 및 국내생산품의 국내소재비율	② ⑤	본자료는 대외공개 되지 않는 영업실적자료임. 또한, 신청인은 국내 시장의 유일한 생산자이므로 본 정보의 공개시 신청인의 생산량, 국내 시장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공적적 가격정책을 통한 수입량의 확대로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음.
41-42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및 생산능력 산정근거	② ⑤	신청인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및 해당 정보에 대한 근거 자료는 비공개 회계자료로 회사 영업 및 회계 기밀 정보임. 또한, 본 자료의 공개시 경쟁자는 신청인의 생산규모 및 가동률에 따른 경쟁 추경치를 이용하여 고정제조원가 및 변동제조원가를 추정할 수 있어 사업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
42-44	신청인의 총출하, 자가소비, 기타출고 및 재고량에 관한 정보	② ⑤	신청인의 영업상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 기밀 정보임.
44-45	조사신청물품의 손익현황	②	판매량 및 재고량이 공개될 경우 기 공개자료인 수입항을 이용하여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 및 국내 전체 시장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공적적 가격정책을 통한 수입량의 확대로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음.
45-46	조사신청물품의 제조원가	②	해당 항목은 신청인의 영업상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회계 기밀 정보임. 동 정보의 공개시 피신청인은 벤치마크하거나 악용하여 신청인이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47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① ②	해당 항목은 신청인의 영업상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 신청인이 이를 벤치마크하거나 악용하여 신청인이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48	고용 및 임금 현황	① ②	해당 항목은 신청인의 영업상 기밀 정보뿐만 아니라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 신청인이 이를 벤치마크하거나 악용하여 신청인이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60-61	국내생산품의 적정판매가격 및 산정근거	① ②	신청인의 내부 비밀자료인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및 하이더로스 제부의 패용영업이익률을 이용하여 산정되었으며, 대외 공개 시 피신청인의 공적적 가격정책을 통한 수입량의 확대로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 하여 신청인의 영업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

61-62	가격하락 또는 가격인상 억제에 인한 수입상실	① ②	비공개 정보인 국내생산품 평균가격(실제가격), 적정판매가격 및 판매(출하)수량을 이용하여 산출되었으며 비공개가 불가피함 대외 공개 시 피신청인의 공적적 가격정책을 통한 수입물량의 확대로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 하여 신청인의 영업 경쟁력 상실을 초래 할 수 있음.
61-63	고객상실로 인한 수입상실	① ②	비공개 정보인 국내생산품 적정판매가격 및 판매(출하)수량을 이용하여 산출되었으며, 더구나 적정판매 많은 신청인의 사업계획서상의 목표시장점유율을 이용하였으므로 비공개가 불가피함.
	[첨부 3] 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신청인의 기타 이해관계자의 접근 불가능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밀 취급이 필요함.
	[첨부 4] 신청인의 주주명부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의 주주명부 공시되지 않은 개인주주 및 기타 법인 주주 주식수 및 지분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 정보가 누출될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첨부 7] 피 신청인의 연략처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피 신청인의 연략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와 함께 과거와 달리 무역협회는 수입자 수입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누출될 경우 수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첨부 9] 주요 수입자/수요자 연략처	③	* 비공개 요청항목 : 주요 수입자/수요자 연략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와 함께 과거와 달리 무역협회는 수입자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동 정보가 누출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첨부 13A] 신청인의 품절규격표준서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신청인의 품절규격표준서 신청인의 품절표는 고객에게만 요청시에 교부하는 자료로서 대외 공개시 제품경쟁력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첨부 13B] 클라신지 경쟁사 품질분석 비교표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클라신지 경쟁사 품질분석 비교표 신청인이 경쟁사와의 품질분석비교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표로서 대외 공개시 제품경쟁력 침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첨부 16A] 해상보험료 입증자료	②	* 비공개 요청항목 : 해상보험료 입증자료 신청인이 실제 해상보험료 지급증빙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임.
	[첨부 17] 해상운임 요율	② ④	* 비공개 요청항목 : 해상운임 요율표 일본/중국/이탈리아/대만 연평가격산정에서 사용된 해상운임: (비공개사유 ②) 신청인이 매년기 경쟁 입찰 을 통해 결정된 해상운임. 가격정보로 공개 시 구매 경쟁력 약화소지가 있음.

		나고야 -> 상하이 운임: (비공개사유 ④) 해당 정보는 신청인의 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등 정보의 공개 시 해당 자료를 제공한 자의 일본 내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첨부 18] 중국 국내판매 가격 입증자료	④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국내판매가격 입증자료 등 정보는 신청인의 고객들 통해 입수한 자료로서 자료제공자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첨부 18A] 중국 현지 가격 조사 (확인서)	④ * 비공개 요청항목 : 중국 현지 가격 조사 (확인서) 등 정보는 신청인의 고객들 통해 입수한 자료로서 자료제공자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첨부 23] 동아시아지역 필프수입가격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동아시아지역 필프수입가격 등 정보는 유료 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자료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첨부 29] 수입부대비용 입증자료	② * 비공개 요청항목 : 수입부대비용 입증자료 신청인이 원재료 수입 시 실제 지급한 지급증빙으로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임.
	[첨부 30] 국제필프가격	⑤ * 비공개 요청항목 : 국제필프가격 해당 자료는 유료 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자료로서 대외공개는 자료제공자의 동의 없이 금지되어 있음.
	[첨부 32] 코트라 가격 조사 협조 요청	④ * 비공개 요청항목 : 코트라 가격 조사 협조 요청 등 정보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 공개 시 부당한 개인 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음.
	[첨부 33] 코트라 대만 확인 요청 답변	④ * 비공개 요청항목 : 코트라 가격 조사 협조 요청 등 정보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 공개 시 부당한 개인 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음.
	[첨부 34] 한솔제지 적정 영업이익률 자료	② 신청인의 제출된 영업이익률 자료로, 해당부분은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
	[첨부 35] 한솔제지 글 라신지 사업계획서	⑤ 신청인의 내부 영업 비밀자료를 활용한 국내 시장 분석 및 업종 전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 시 이를 경쟁자가 악용한 시장 침해의 소지가 다분함.

* 비공개정보 구분 <관세법 시행규칙 제 15조>

- ① 제조원가
- ②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 ③ 거래선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무역조사실

무역조사실장 권오정

조사단

[국내산업피해조사]

조사단장 산업피해조사과장 한상덕
조사관 산업피해조사과 박종희
조사관 산업피해조사과 권일수

[덤핑률조사]

조사단장 덤핑조사과장 공석
조사관 덤핑조사과 원성진
조사관 덤핑조사과 나강운

KTC 指定調査対象供應商名簿

조사대상공급자

국가명 國家	공급자명 供應商名稱
대만 臺灣	청화펄프(Chung Hwa Pulp Corp.)
중국 中國	유피엠(UPM Specialty Papers)
일본 日本	오지 에프(Oji F-Tex Co., Ltd.)
	제펜 펄프(Japan Pulp & Paper)
이탈리아 義大利	참 पे이퍼(Cham Paper Group Italia S.p.A.)
	사피(Sappi Italy Operations S.p.A.)

**KOREA TRADE COMMISSION
DUMPING INVESTIGATION DIVISION**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IN ANTI-DUMPING INVESTIGATION**

☐ **APPLICANT:** _____

** Please fill in your company name.*

☐ **SUBJECT MERCHANDISE:** Glassine Paper

◦ **COUNTRY OF ORIGIN:** Taiw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Italy

◦ **PERIOD OF INVESTIGATION:** October 1, 2017 ~ September 30, 2018

☐ **SUBMISSION DUE DATE:** April 17, 2019

*** RETURN THE QUESTIONNAIRE RESPONSE TO:**

DUMPING INVESTIGATION DIVISION (OFFICE NO. 705)
KOREA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BLDG. 13-1, 402, HANNURI-DAERO, SEJONG-SI, 30118
REPUBLIC OF KOREA
ATTN.: MR. WON, SUNGJIN

I. GENERAL INSTRUCTIONS

This application requests information to enable the Korea Trade Commission ('the Commission') to determine whether to accept your participation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Commission will select suppliers to be investigated after an examination of all the submitted applications. The result of selection will be notified as soon as the examination is finished after the above-mentioned submission due date.

Your application should include all the information requested.

Your participation will be accepted 1) if a fully filled-in application is timely submitted, and 2) unless the number of respondents is so large that individual examinations would be unduly burdensome to the Commission and prevent the timely completion of the investigation.

If you fail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questions within the time provided, the Commission may not accept your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The Commission will determine an individual dumping margin for each selected supplier, while the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 established with respect to the selected suppliers will be applied to the suppliers which submitted the application in a timely manner but were not selected. In the case of suppliers which did not submit an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or did not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dumping margin may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best information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8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II. REQUEST FOR INFORMATION

1. Organization

(1) Company

- Name:
-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 Contact person:

(2) Legal Representative

- Name:
-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3) Corporate Structure and Affiliations

Provide information on your corporate structure and affiliations.

The purpose of the questions concerning operational and legal structures and affiliations is to provide the Commission with an understanding of your company and its role in the

manufacture, sale and distribution of the subject merchandise. The Commission requests information not only about your company but also about affiliates, because it may be necessary to use information gathered from affiliated parties to establish prices, selling and general expenses, and production costs.

2. Markets and Merchandise

Information on the quantity and value of sales is necessary for the Commission to determine whether to accept your participation and to include your company in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on imports of the subject merchandise.

State the total quantity and value of the subject merchandise that you sold during the period of investigation in the markets of Korea, your country (domestic market), and third-countries in the following format.

Market	Unit of Measure	Total Quantity	Total Value
<u>KOREA</u>			
1. Affiliated			
2. Unaffiliated			
Total			
<u>DOMESTIC</u>			
1. Affiliated			
2. Unaffiliated			
Total			
<u>3RD COUNTRY 1</u> <i>* Specify the country.</i>			
1. Affiliated			
2. Unaffiliated			
Total			
<u>3RD COUNTRY 2</u> <i>* Specify the country.</i>			
1. Affiliated			
2. Unaffiliated			
Total			
<u>3RD COUNTRY X</u> <i>* Specify the country.</i>			
1. Affiliated			
2. Unaffiliated			

Total			
-------	--	--	--

3. Accounting / Financial Practices

A detailed understanding of your accounting and financial practices will help to ensure an accurate verification, and is necessary for the Commission to analyze your company.

Describe your company's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practices, including your normal corporate accounting period.

4. Total volume of the subject merchandise produced by your company during the period of investigation.

- Quantity (unit:):

5. Names, addresses, tele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precise activities of all related companies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or sales (export and/or domestic) of the subject merchandise.

6. Please state whether your company and the related companies agree to their inclusion in the investigation, which implies responding to a questionnaire and accepting an on-the-spot verification. (Yes / No)

7. What is your motive to be selected as a respondent company?

[ANNEX]

CERTIFICATE OF ACCURACY

I, (name and title) , currently employed by (company name) , certify that (1) I have read the submission, and (2)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submission is, to the best of my knowledge, complete and accurate.

DATE: _____

(signature of certifying person)

產品範圍指南 (Guide to Product Scope) 中譯資料

本指南為問卷之 Section C (調查對象產品) 要求依照本指南提供產品範圍 (Product scope) 及管制分類號碼 (Control Code Number, CCC) 相關資訊。利害關係人在公告日起 4 週內對調查對象產品範圍及管制分類號碼 (CCN), 可以向貿易委員會 (傾銷調查課) 提交意見書 (包含證明資料), 此時貿易委員會與申請人協議調整調查對象產品。

C-1.1 產品範圍定義 (Product scope definition)

格拉新紙 (Glassine Paper) 係塗抹顏料及黏結劑 (binder) 後, 經超級壓光 (Super-calendering) 過程提高透明度之特殊紙, 包含利用相同原料及生產工程, 但工程條件不同之其他透明光澤紙及半透明光澤紙。

調查對象產品之稅則號碼 (HSK) 4806.40.1000, 4806.40.9000 僅供參考, 不用以決定相關產品是否為調查對象。

C-1.2 CCN 相關指南 (Instruction regarding CCN)

有關問卷中 CCN 項目之詳細分類 (Coding), 請使用下列產品特性分類 (並非確定, 可依利害關係人協議結果變動)。供應商必須提供公司使用之分類體系資料。

分類產品特性 1 (CODE Product Characteristic 1)

基重 (Basis Weight)

說明: 依照如下分類, 報告產品 1 平方米之重量。(測試方法: : ISO 536)

1 = 40 g/m² 以下

2 = 40 g/m² 以上 50 g/m² 以下

3 = 50 g/m² 以上 60 g/m² 以下

4 = 60 g/m² 以上 70 g/m² 以下

5 = 70 g/m² 以上 80 g/m² 以下

6 = 80 g/m² 以上

分類產品特性 2 (CODE Product Characteristic 2)

顏色 (Color)

說明: 依照如下顏色分類, 報告產品顏色。

W = White

B = Blue

O = 其他

分類產品特性 3 (CODE Product Characteristic 3)

透明度 (Transparency)

說明：依照如下透明度分類，報告產品透明度。(測試方法：ISO 2471)

1 = 30%以下

2 = 30%以上 60%以下

3 = 60%以上

分類產品特性 4 (CODE Product Characteristic 4)

形狀 (Form)

說明：說明產品是否屬於 sheet 或者 Roll。

S = Sheet

R = Roll

0 = 其他

CCN 例示) 基重 65g/m², 顏色 Blue, 透明度 50%, Roll 形狀之產品

→ 標示為 '4B2R'

序號	1	2	3	4
產品特性	基重	顏色	透明度 (Transparency)	形狀
	65g/m ²	Blue	50%	Roll
CCN	4	B	2	R

〈제품 범위 지침서(Guide to Product Scope)〉

이 지침서는 질문서의 섹션 C(조사대상제품)에 포함됩니다. 이 지침서에 따라 제품 범위(Product scope)와 CCN(Control Code Number; 통제코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관련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C-1.1 제품 범위 정의(Product scope definition)

조사대상물품인 글라신지(Glassine Paper)는, 안료와 바인더 등을 도포한 후 슈퍼캘린더링 공정을 거쳐 투명도를 높인 종이로, 원재료 및 생산공정은 유사하나 공정조건을 달리하여 생산한 그 밖의 투명광택지나 반투명광택지를 포함합니다.

조사대상제품은 관세분류번호(HSK) 4806.40.1000, 4806.40.9000 으로 분류됩니다. 관세분류번호(HSK)의 구분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관세분류번호로 조사대상제품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C-1.2 CCN에 관한 지침(Instruction regarding CCN)

질문서에 사용되는 CCN의 구성 항목에 대한 상세한 코딩(coding)을 위해서, 보고목적으로 사용되는 아래 코딩 목록을 이용하십시오. 아래의 코딩 체계(목록)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자와의 논의에 따라 아래 목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코딩 체계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제품 특징 1(CODE Product Characteristic 1)

평량 (Basis Weight)

설명 : 제품의 1제곱미터당 중량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보고하십시오. (Test방법 : ISO 536)

1 = 40 g/m² 이하

2 = 40 g/m² 초과 50 g/m² 이하

3 = 50 g/m² 초과 60 g/m² 이하

4 = 60 g/m² 초과 70 g/m² 이하

5 = 70 g/m² 초과 80 g/m² 이하

6 = 80 g/m² 초과

코드 제품 특징 2(CODE Product Characteristic 2)

색상 (Color)

설명 : 제품의 색상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보고하십시오.

W = White

B = Blue

O = 기타

코드 제품 특징 3(CODE Product Characteristic 3)

투명도 (Transparency)

설명 : 제품의 투명도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보고하십시오. (Test방법 : ISO 2471)

1 = 30% 이하

2 = 30%초과 60%이하

3 = 60% 초과

코드 제품 특징 4(CODE Product Characteristic 4)

형태 (Form)

설명 : 제품이 sheet인지 Roll인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설명하십시오.

S = Sheet

R = Roll

O = 기타

CCN 구성 예시) 평량 65g/m², 색상 Blue, 투명도 50%, Roll 형태인 제품 → '4B2R'로 표기

순번	1	2	3	4
불품 특성 구분	평량	색상	투명도 (Transparency)	형태
	65g/m ²	Blue	50%	Roll
CCN	4	B	2	R

한국 무역위원회 협평조사과

반덤핑 질의서

(구제 23-2019-1호)

조사대상물품

클라신지(Classine Paper)

공급국

대만, 중국, 일본, 이탈리아

조사대상기간

2017. 10. 1. ~ 2018. 9. 30.

담판서 제출기한

2019. 5. 7.

담판 조사관

원성진(Won Sungjin)

- 전화

82-44-203-5873

- 팩스

82-44-203-4815

- E-mail

ry044@mohtc.go.kr

담판서 제출처

(3013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ktc.go.kr>

부 록

차

Section A. 작성지침

1

A-1. 담판서 제출요령

A-2. 담판서 준비요령

Section B. 일반정보

6

B-1. 회사명 및 연락처

B-2. 법륜대리인

B-3. 기업구조 및 관계자(회사)

B-4. 유통경로

B-5. 판매과정

B-6. 회계 및 재무 정책

B-7. ERP 시스템

B-8. 제3국용 경유한 수출

B-9. 비관계자(회사)에 의해 공급된 조사대상물품의 판매

Section C. 조사대상물품

16

C-1. 조사대상물품

C-2. 통관규격

C-3. 수출 및 내수 물품 비교

C-4. 수출 및 한국 물품 비교

Section D. 경영통계

19

D-1. 판매

D-2. 은의계산서

D-3. 생산원재료과 생산능력

D-4. 재고

D-5. 관계 지판매회사에 대한 표 작성

Section E. 대한민국 판매(수출가격)

26

E-1. 대한민국 판매 및 조정

E-2. 한국수출판매의 파일 포맷(EFP)

E-3. 한국수출판매의 파일 포맷(CEP)

Section F. 내수시장판매

51

F-1. 내수판매 및 조정

F-2. 내수판매의 파일 포맷

F-3. 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

Section G.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

63

G-1. 일반원형

G-2. 일반사항

G-3. 담판형식

G-4. 매출원가

Section H. 한국 내 추가가공/조립원가

77

H-1. 일반원형

H-2. 일반사항

H-3. 담판형식

H-4. 추가가공원가 데이터 파일

Section I. 생산자표 준비 안내

85

부록 I. 용어해설

85

부록 II. 자료의 정확성 인증

92

부록 III. 공개권 작성지침

93

만일 귀사가 이 질의서의 표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질의서에 대한 담판서 작성용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어도 제출기한 10일 전에 담판조사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담판기한 연장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담판 기한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본 질의서 관련 질의 혹은 의문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본 질문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담판 조사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1. 담판서 제출요령

이래의 사항은 담판서 작성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련하여 귀사가 무역위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해당합니다.

본 질의서는 대한민국 관세법 및 WTO 관세법 협정에 따라 귀사가 조사대상물품을 한국에 장사가해보다 늦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질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관세법 및 WTO 관세법 협정에 따라 관세조사관 실시할 것입니다. 조사 시 제공되는 비밀 정보 혹은 비밀 보장 조건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역위는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해당 정보는 정보를 제출한 귀사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거나 조사, 예비 및 최종 판정에 심각한 방해를 하는 경우, 무역위는 별도로 입수한 자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귀사가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져 귀사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A. 작성지침

회사의 경영, 법적구조 및 관계자(회사)에 대한 질문의 목적은 무역위
가 조사업체(회사)의 생산,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회사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역위는 회사뿐 아니라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관
계자(회사)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가격, 판매 및
유통관리비나 생산원가를 산정하는데 관계자(회사)로부터 얻어진 정보
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나열된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회사는 물론, 개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회사뿐만 아니라 조사업체(회사)도 조사업체(회사)의 조사업체(회사)
를 의미해야 합니다. 관련 회사들은 A-1.7에서 A-2.9에 기술된 내용
에 따라 개별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조사업체(회사)의 생산,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회사의 조리
구조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구조에 대한 설명자료와 회사조직도(자
부별 인원 포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및 회사의 관계자(회사)가 조사업체(회사)의 생산, 제조 및 판
매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공장, 판매사무소, 연구개발시설 및 판
매사무소의 목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시설
의 주소 및 각각의 간략한 목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장파
판매사무소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조사업체(회사)의 생산 또는 상업화에 관련된 모든 국가에 있는 관계
회사 또는 모든 자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 팩스번호 및 이메일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들 관계자(회사)의 활동을 명시하여 주십시
오. 모든 경우에 회사와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회사가
이들 회사와 임원 또는 고위 관리자를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
히주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이들 회사와 상호관계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당사자 간의 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회사명 영문(한글) :
- 주소 :
- 전 화 :
- FAX :
- 이메일 :
- 웹사이트 :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회사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기입하고 이와 관련된 담당자의 성명 및
회사 내에서의 역할을 기입하십시오.

B-1. 회사명 및 연락처

합니다. 다만, 그러한 관계자(회사) 등이 매우 많은 경우 본 질문서
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담당 조사업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래에 나열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자
회사 및 모회사를 포함한 회사의 법적구조와 연계조직도를 제출하
고 그러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관계회사는 다
음에 열거된 회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a.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 이상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
b. 회사가 자회사로 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의결권이 있는 주
식이나 지분을 5% 이상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
c. 제3자에 의해서 회사가 함께 같이 물체를 받고 있는 다른 사람 또
는 법인

d. 회사에 의해 통제되거나 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모든
사람 또는 법인, 채무자, 밀접한 공급자, 합작회사 파트너, 그들의
임원과 관리자가 회사의 임원과 관리자를 겸하는 경우 그 회사, 회
사와 영업상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회사를 포함하여
주사가 바랍니다. 또한 회사를 통제하거나 또는 회사에 의하여 통제
되는 양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또는 회사를 포함하십시오.
동제는 사람 또는 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지시나 제안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볼
립니다.

c. 제3자에 의해서 회사가 함께 같이 물체를 받고 있는 다른 사람 또
는 법인
d. 회사에 의해 통제되거나 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모든
사람 또는 법인, 채무자, 밀접한 공급자, 합작회사 파트너, 그들의
임원과 관리자가 회사의 임원과 관리자를 겸하는 경우 그 회사, 회
사와 영업상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회사를 포함하여
주사가 바랍니다. 또한 회사를 통제하거나 또는 회사에 의하여 통제
되는 양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또는 회사를 포함하십시오.
동제는 사람 또는 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지시나 제안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볼
립니다.

B-4. 유통경로

8. 조사업체(회사)의 생산,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회사의 조리
구조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구조에 대한 설명자료와 회사조직도(자
부별 인원 포함)를 제출하십시오.

7. 회사, 회사의 자회사 및 모회사의 10대 지분소유자의 명단과 각자
의 지분을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5% 이상
소유한 자의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만일 위 자료 중 어느 하나를 밝
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6. 위에 언급한 관계자(회사)중 (종 부임을 포함하여) 조사업체(회사)의
개별, 생산, 판매 분야에 종사하는 자와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리스트와 관계의 성격 등을 설명하십시오.

8. 조사업체(회사)의 생산, 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회사의 조리
구조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구조에 대한 설명자료와 회사조직도(자
부별 인원 포함)를 제출하십시오.

7. 회사, 회사의 자회사 및 모회사의 10대 지분소유자의 명단과 각자
의 지분을 그리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5% 이상
소유한 자의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만일 위 자료 중 어느 하나를 밝
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6. 위에 언급한 관계자(회사)중 (종 부임을 포함하여) 조사업체(회사)의
개별, 생산, 판매 분야에 종사하는 자와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리스트와 관계의 성격 등을 설명하십시오.

1. 아래표의 기호를 일의 버리클로 사용하여 조사대상물품에 관한 모든 모델에 대하여 다음의 정보를 코드화하는 리스트로 제출하십시오
오. 제품 코드는 가능한 한 자세한 한 자제하여 하며 커사의 생산라인 및 ERP를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C.2. 물품규격

1. CCN의 구성방법은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커사의 제품 코딩 시스템에 의한 모델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2. 커사가 CCN의 구성에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조사개시일경에 관보에 게재된 달로부터 4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가와 판매가격에 어떠한 의미 가 있는지 설명하는 자료로 무역위원회 및 평조사파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C.1. 조사대상물품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별도의 지적 문서는 대상물품의 정의와 Control Code Number(이하 "CCN")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Section C. 조사대상물품

1. 조사대상물품의 한국수출과 관련된 유통구조를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한국수출과 관련된 회사의 이름을 나열하고 관계자(회사)의 이름을 나열하십시오. 조사대상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물품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고 또한 한국으로 수출 되는 물품의 모델과 제3국가를 나열하십시오. 이 경우에 물품의 부분부터 배럴 및 대금청구까지의 과정을 흐름도로 설명하십시오.
2. 만약 제3국에서 물품이 추가 가공 또는 조립되거나 어떤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3. 제3국을 통하여 한국으로 전입된 물품이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조립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수입 후 한국의 비관계자(회사)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B.8. 제3국을 경유한 수출

1. 조사대상물품의 한국수출과 관련된 유통구조를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한국수출과 관련된 회사의 이름을 나열하고 관계자(회사)의 이름을 나열하십시오. 조사대상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물품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고 또한 한국으로 수출 되는 물품의 모델과 제3국가를 나열하십시오. 이 경우에 물품의 부분부터 배럴 및 대금청구까지의 과정을 흐름도로 설명하십시오.
2. ERP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고, 서버의 수와 위치를 기술하십시오.

1. 커사의 매출과 비용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중심으로 ERP 시스템의 개요를 설명하십시오. 판매 데이터와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시스템은 무엇인지 현명하고 기술용 서술하십시오.

CCN	제품코드	수량	금액	CCN	제품코드	수량	금액	차이
한국 판매 제품				내수 판매 제품				

- (단위 :)
1. 커사가 판매하는 내수시장물품과 수출시장물품 중 동일한 CCN으로 분류되었으나, 시장에 따라 다른 제품 코드를 가지고 있는 판매권이 있는 경우, 아래 표를 작성 하십시오.
 2.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을 포함한 커사 및 커사의 관계자(회사)가 작성한 제품의 카탈로그나 브로슈어를 제시 하십시오.
 3. 무역위는 CCN을 기준으로 명명 마진을 계산할 것이나, 필요시 제품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제시 하십시오.

C.3. 수출 및 내수물품 비교

1. CCN의 구성방법은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커사의 제품 코딩 시스템에 의한 모델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1	CCN (CCN)	제품의 품계번호	한국 판매
2	제품코드 (PRODCOD)	제품코드	
3	제품명 (EXOTY)	한국에서의 모델명	제품명
4	제품명 (EXVAL)	한국에서의 모델명	제품명
5	제품명 (DMQTY)	내수에서의 모델명	제품명
6	제품명 (DMVAL)	내수에서의 모델명	제품명
7	제품명 (EXOTHQTY)	한국에서의 모델명	제품명
8	제품명 (EXOTHVAL)	한국에서의 모델명	제품명
9	제품명 (PRODESC)	제품의 품계 설명	

1. 본 조사의 해당되는 공급자에게 본 조사의서를 전달해 주십시오.
 2. 커사의 물건을 공급한 자가 커사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할 당시에 그 물품의 최종 판매처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 하십시오.
 3. 본 조사의 해당되는 공급자에게 본 조사의서를 전달해 주십시오.
- B.9. 비관계자(회사)에 의해 공급된 조사대상물품의 판매
- 이 이루어진 장소를 밝히십시오.
- 예제 인도된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원산지 및 그 부품의 조립

3) 기타 국가 수출 = 국가 1 + 국가 2 + 국가 3 + 기타
4) 국가 1 - 3은 수출액(수량)의 준말로 보고하십시오.

조성환

그러한 미발견의 계산서의 주요 항목은 조사대상기관과 조사 대상기간, 회계연도에 대해 아래와함으로 작성하였나.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하시오. 조사대상물품명에 대해서는 부가 설명을

D-2. 수익계산서

母音 發音 例文 母音 : U.
母音 發音 例文 : A.

[illegible]

2) 복지에 사용된 화폐단위를 계속 사용하십시오.

구분	연도	조사대상기업				
		A	U	A	U	A
내국기업	조사대상기업의 수					
	기업의 수					
	기업의 수					
	기업의 수					
	기업의 수					
외국기업	조사대상기업의 수					
	기업의 수					
	기업의 수					
	기업의 수					
	기업의 수					

SETLVS : 品 15 枚

SETVS : 品名

제도와 관련된 과수의 비면허 기술은 순매출액에의 기준 순매출액을 조수단수가한
과 조수단수가한 과전 3 회평균으로의 차별 이해당으로로 작성하십시오.
이 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원천 데이터 및 해당 데이터의 비인
정성을 설명하십시오. 아래 표의 사업부를 구분할 기준과 대상성이
어는 사업부에 속하는지를 적으십시오. 오해 표의 대상물류 매출액
은 EPSALTE 및 DM5ALE의 매출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만일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D-1. 母叫

Section D. 경영 통제

C4. 수출 및 한국산물품 비고

간사 계층의 구성	직무계층	현장 노동층의 구성

한글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자로서,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한글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 圖 8-1 各種 變換 之 關係.

							准备
							应付账款
							预付账款
							森林资源资产
							森林资源资产
							应收账款
							森林资源资产
							森林资源资产
							应收账款
							准备

(: 167)

<知은 正氣>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자회사 및 모든 관계회사에 대하여 다
응과 관은 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T INVEN)

2.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채고자선의 수를 요약하는 다음 표를 작성하십시오.

[illegible]

(: 古)

[illegible]

1. 다음 표와 같이 계고 금액과 수량을 제시하십시오.

D-4. 재고

이러한 계층을 산세화 하여서야 할 것으로.

5. 수확기, 원리 또한 제3차에서 생산을 시작하거나 생산능력을 증가

4. 귀사를 비롯한 귀사의 관계자(회사)가 판매한 생산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원산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3. 귀사가 조사대상물품들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관련 제조 업체별로 상기 표를 작성하십시오.

2. 생산능력과 기술력의 계량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기	간	2015	2016	2017	2018	조사대상 기간	비고의
1	생산물별						
2	생산량						
3	가동률(%)						
4	조사대상품종의 구비율(%)						

(: 古)

1. 다음 표와 같이 종 생산량과 조사대상물품의 구매량을 제시하십시오.

D-3. 생산량에 따른 생산비용

< 물물교환의지혜 >

항목	연도	2015	2016	2017	2018	POI
태풍의 발생	(1)					
관측역	(2)					
관측장소 명칭	(3-1-22)					
기초자료	(4)					
연구자료제출원기 /연구구대역	(5)					
기상자료	(6)					
태풍발생기	(7-4+5-8)					
태풍이탈	(8-3-7)					
관측역내관측장소명	(9)					
영역이탈	(10-8-9)					
태풍이탈	(11-12+13)					
이탈수위	(12)					
기타영역외수위	(13)					
영역외수위	(14+15+16)					
이탈수위	(15)					
기타영역외수위	(16)					
태풍관측기간	(17+10+11+13)					
참고	(18)					
태풍관측장소명	(19+17+18)					

(: 活)

이 장에서는 조사대상물품의 한국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며, 특히 한국에 수출된 제품의 판매가격과 그 산정방법에 대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권의서를 수평한 수출자는 생산자와 함께 본 단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정매출의 조사대상기간 내 포함여부는 상업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 원에 대한 정의는 부록I을 참고하십시오.

B.1. 대한민국 판매 및 조정

1. 귀사의 한국수출형태가 EP인 경우 "CEPSALE" 파일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CEP인 경우 "EPSALE"와 "CEPSALE" 파일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파일의 매출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십시오. EP와 CEP의 정의는 부록I을 참고하십시오.

2. 전체 매출액에서 "EPSALE"와 "CEPSALE" 파일에 보고된 매출액 중 산출한 파정을 설명하십시오.

3. 아래에 필드 설명에 따라 한국수출거래에 대해 "EPSALE"와 "CEPSALE" 파일을 완성하십시오. "EPSALE"와 "CEPSALE" 파일은 판매자료와 그에 대한 조정사항을 제시하십시오. 표본 거래에 대하여 조정사항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 한 세트를 제출하십시오.

4. 조정사항 중 관계자(회사)에 의해 발생한 항목이 있는 경우 조정 사항 별 관련된 관계자(회사) 목록을 제공하고 경사가격 여부를 입증하십시오.

5. 한국수출과 관련된 조정사항과 연관이 있는 모든 제정을 열거하고 관련 조정사항을 표시하는 차트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명 : SALDATE
설명 : 상업수출일자와 다른 경우에만 보고하십시오. 판매일 보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십시오.

필드번호 7 : 상업수출번호
필드명 : INVTNUM
설명 : 상업수출번호를 보고하십시오. 또한 수출번호의 생성체계와 번호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8 : 출하일
필드명 : SHIPDATE
설명 : 운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고객에게 출고된 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9 : 대금일금일
필드명 : PAYDATE
설명 : 판매대금 일금일금 보고하고 해당 일금일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원천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10 : 지급조건
필드명 : PAY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지급조건(예 : 일괄지급, 30일 후 지급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조건별 지급조건이 차이가 있다면 중간 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급조건을 고객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조기자금 할인이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면 위 지급 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1 : 인도조건
필드명 : DEL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인도조건(예 : FOB, C&F, CIF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 조건별 인도조건이 차이가 있다면 중간 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B.2. 한국수출판매의 파인 포맷(BP)

파인명 : EPSALE

필드번호 0 : 일련번호

필드명 : SN

설명 : 각 매출 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십시오. 이 번호는 타 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필드번호 1 : Control Code Number

필드명 : CCN

설명 : C1에 따라 CCN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한국 내에서 추가 가공되는 경우 수입 당시 제품용 기준으로 CCN 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드번호 2 : 제품코드

필드명 : PRODCOD

설명 : 회계관리 목적으로 귀사에서 부여한 제품 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 : 모델명

필드명 : MODEL

설명 : 출장에 표시되는 제품모델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 : HS코드

필드명 : HSCD

설명 : 한국시장 통관 시 보고되는 HS 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5 : 상업수출일자

필드명 : INVDATE

설명 : 판매 건별 상업수출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2 : 고객코드

필드명 : CUSTNUM

설명 : 각 판매 건별 고객코드를 보고하고 귀사의 고객 코드, 주소, 이름이 기재된 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13 : 고객구분

필드명 : CUSCAT

설명 : 아래의 코드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십시오.

1 = 제조업자

2 = 상사

3 = 도매상

4 = 소매상

5 - n = 기타

필드번호 14 : 유통경로

필드명 : CHANNTEL

설명 : B4에서 제시한 유통경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5 : 고객구분(관계자(회사)여부)

필드명 : CUSREL

설명 : 아래의 코드를 이용하여 관계자(회사)를 구분하십시오.

U = 비관계자(회사)

A = 관계자(회사)

필드번호 16 : 주문서 또는 계약 번호

필드명 : ORDNUM

설명 : 주문서 또는 계약번호를 보고하십시오. 주문번호의 생성체계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7 : 제품동량

필드명 : QTY

필드명 : UNIT

필드명 : UNIT

필드명 : UNIT

필드명 : UNIT

필드명 : UNIT

필드명 : UNIT

필드명 : UNIT

필드명 : UNIT

필드명 : UNIT

월드번호 31 : 간접세
월드명 : INDIRECT
월드번호 34 : 공장/물류창고에서 항구까지 내륙운반비
월드명 : INLFTT
월드번호 30 : 리베이트
월드명 : REBAT
월드번호 29 : 금액조정
월드명 : BRLADJ
월드번호 28 : 반등후 금액
월드명 : NETVAL
월드번호 27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26 : 반등금액
월드명 : CREDITURN
월드번호 25 : 반등수량
월드명 : CREDITQTY
월드번호 24 : 순충장금액
월드명 : NETSALES
월드번호 23 : 기타할인액
월드명 : OTHDISC
월드번호 22 : 수량할인액
월드명 : QTYDISC
월드번호 20 : 순장금액
월드명 : SALESAM
월드번호 19 : 수량단위
월드명 : QTY
월드번호 18 : 매출량
월드명 : QTY
월드번호 17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16 : 반등금액
월드명 : CREDITURN
월드번호 15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14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13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12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11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10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9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8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7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6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5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4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3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2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1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31 : 간접세
월드명 : INDIRECT
월드번호 34 : 공장/물류창고에서 항구까지 내륙운반비
월드명 : INLFTT
월드번호 30 : 리베이트
월드명 : REBAT
월드번호 29 : 금액조정
월드명 : BRLADJ
월드번호 28 : 반등후 금액
월드명 : NETVAL
월드번호 27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26 : 반등금액
월드명 : CREDITURN
월드번호 25 : 반등수량
월드명 : CREDITQTY
월드번호 24 : 순충장금액
월드명 : NETSALES
월드번호 23 : 기타할인액
월드명 : OTHDISC
월드번호 22 : 수량할인액
월드명 : QTYDISC
월드번호 20 : 순장금액
월드명 : SALESAM
월드번호 19 : 수량단위
월드명 : QTY
월드번호 18 : 매출량
월드명 : QTY
월드번호 17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16 : 반등금액
월드명 : CREDITURN
월드번호 15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14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13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12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11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10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9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8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7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6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5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4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3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2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월드번호 1 : 반등후 수량
월드명 : NETQTY

설명 : 커서가 조사대상물품을 향구까지 운송하기 위해 발생한 운반비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운송 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여러 항목이 동일 운송 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배 분한 경우 반송 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움업체와 맺은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고, 배움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운송 수단의 운송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5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필드명 : INHANDLE
설명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6 : 보험료
필드명 : ININSUR
설명 :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금액을 보고하고, 계산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7 : 해상운반비
필드명 : OCFREIGHT
설명 : 수출항에서 한국까지 배송을 위해 발생한 운반비를 보고하십시오. 운송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십시오. 해당 비용을 계산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8 : 해상보험료
필드명 : OCINSUR
설명 : 수출국 향구에서 한국 향구까지 발생한 해상보험료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해당 비용 계산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9 : 한국내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필드명 : KRCHARGE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월들링,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0 : 한국에서 물류창고까지 운반비
필드명 : KINLFPW
설명 : 한국물관 후 물류창고까지 발생한 운반비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1 : 한국내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KRWARE
설명 : 창고보관비용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은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회수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입니다.

필드번호 42 : 향구/물류창고에서 고객까지 운반비
필드명 : KINLFWC
설명 : 한국내 향구 또는 물류창고에서 고객까지 발생한 운반비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3 : 한국내 보험료
필드명 : KRINSUR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 금액을 보고하고, 계산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4 : 신용비용
필드명 : CREDIT
설명 : 단기자입이자율을 사용한 신용비용을 계산하십시오. 커서가 적용한 단기자입이자율 관련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신용비용은 개별 매출건의 입금일과 출하일의 차이로 계산되며,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의 평균회전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49 : 수수료
필드명 : COMM
설명 : 판매와 관련된 지불한 지급수수의 금액과 그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여러 종류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종류별로 별도의 필드에 보고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조건과 수수료가 결정되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회사인지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와 맺은 계약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0 : 판매대행사
필드명 : SELAGEN
설명 : 판매 대행업체의 이름 또는 내부 관리 코드를 보고하십시오. 여러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업체별 수수료율 및 관계자(회사) 여부를 표시한 리스트를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51 : 관세환급
필드명 : DTIDRAW
설명 : 관세환급액을 보고하고, 계산 방식을 보여주는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2 : 관세 및 불관비용
필드명 : DTCREAR
설명 : 수입물관시 관세 부담한 관세액과 불관 비용을 보고하고, 계산 방식을 보여주는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3 : 포장비
필드명 : PACK
설명 : 한국 수출을 위해 발생한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비에는 재료비, 인건비 및 가공비가 포함됩니다. 여러 공장에서 포장비가 발생한 경우 포장별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 장비비, 인건비, 가공비 별 계산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포장 장비비의 경우 소요되는 기계 리스트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47 : 판매보증비용
필드명 : WARR
설명 : 판매보증비용을 보고하십시오. 대상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보고하십시오. 직권 3 회계 연도 동안의 연도별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판매보증비용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비용의 산출방법과 근거를 명시하십시오. 이러한 비용이 조 사대상물품의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또는 여러 물품에 공통적으로 발생된 비용이라면 관련금액을 배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판매보증 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기타권별파일에 제시된 보증비용의 계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8 : 기술지원 및 서비스비용
필드명 : AFTERSAL
설명 : 기술서비스 비용을 보고하십시오. 대상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의 비용을 보고하십시오. 거래처에 제공 하는 서비스, 수리, 상담 등의 서비스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54 : 환율

필드명 : FXRATE

설명 : 송장금액을 회계장부 표시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을 기재

함시요. 외화환산과 관련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각국의 환율변동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수

출과 관련된 최근 2년 동안의 외화 및 공식 매도율과 매입율 자

표와 중앙은행환율을 제시하십시오. 또한 비공식 환율이 있다

면 그것을 기재하고 그 원천을 밝혀하십시오.

필드번호 55 : 파세가려

필드명 : CIFVAL

설명 : 한국 통관시 보고한 파세가려를 보고하십시오. CIF금액을 기준

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식과 증빙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6 : 수입상

필드명 : IMPORTER

설명 : 수입자를 기재하십시오.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확인 안 됨"으

로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57 : 제조자

필드명 : MFR

설명 : 수입자가 제조자가 아닌 경우 제조자 명을 표시하십시오. 제조자

를 표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조사대상물품을 공급한 공급자를 표

시하십시오.

- 38 -

필드명 : INVDATE

설명 : 판매 건별 송장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6 : 판매인

필드명 : SALDATE

설명 : 송장일자와 다른 경우에만 보고하십시오. 판매인 보고에 어려

움이 있는 경우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십시오.

필드번호 7 : 상업송장번호

필드명 : INVNUM

설명 : 상업송장번호를 보고하십시오. 또한 송장번호의 생성체제와 번

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8 : 출하일

필드명 : SHIPDATE

설명 : 운장 또는 보편창고에서 고객에게 출고된 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9 : 대금입금일

필드명 : PAYDATE

설명 : 판매대금 입금일을 보고하고 해당 입금일을 결정하기 위해 사

유된 원천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10 : 지급조건

필드명 : PAY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지급조건(예 : 일랑지급, 30일 후 지급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조건별로 지급조건이 차이가 있다면 둘 간

의 관계를 설명하고, 지급조건을 고객과 결정하는 파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조가지급 할인이나 지체상금 등 부과 한

다면 위 지급 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 40 -

- 41 -

B3. 한국수출판매의 파일 포맷(CFP)

아래에 항목설명에 따라 한국 내 최초 비관게자(회사)에 대한 판매 건

별트 "CEPSALR" 파일을 완성하십시오.

파일명 : CEPSALR

필드번호 0 : 입련번호

필드명 : SN

설명 : 각 매출 건별로 입련번호를 부여하십시오. 이 번호는 타 정보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필드번호 1 : Control Code Number

필드명 : CCN

설명 : C-1에 따라 CCN번호를 작성하십시오. 한국 내에서 추가가 유

되는 경우 수입 당시 제물을 기준으로 CCN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드번호 2 : 제품코드

필드명 : PRODCOD

설명 : 회계관리 목적으로 수입에서 부여한 제품 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 : 모델명

필드명 : MODEL

설명 : 송장에 표시되는 제품모델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 : HSCD

필드명 : HSCD

설명 : 한국 시장 통관시 보고되는 HSC 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5 : 상업송장일자

- 39 -

필드명 : DEL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인도조건(예 : FOB, C&F, CIF 등)을 입력하

십시오. 판매조건별로 인도조건이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2 : 고객코드

필드명 : CUSTNUM

설명 : 각 판매 건별 고객코드를 보고하고 귀사의 고객 코드, 주소, 이

름이 기재된 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13 : 고객구분

필드명 : CUSCAT

설명 : 아래의 코드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십시오.

1 = 제조업자

2 = 상사

3 = 도매상

4 = 소매상

5 - n = 기타

필드번호 14 : 유동정보

필드명 : CHANNEL

설명 : B-4에서 제시한 유동정보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5 : 고객구분(관게자(회사)여부)

필드명 : CUSREL

설명 : 아래의 코드를 이용하여 관게자(회사)를 구분하십시오.

U = 비관게자(회사)

A = 관게자(회사)

필드번호 16 : 주문서 또는 계약 번호

필드명 : ORDNUM

설명 : 주문서 또는 계약번호를 보고하십시오. 주문번호의 생성체계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17 : 제품종류

필드명 : CRA

설명 : 제품의 등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8 : 매출량

필드명 : QTY

설명 : 매출량을 보고하십시오. 각 출하 기준 혹은 상한수량의 행별
필 수량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수량의 단위가 달라 단위기준으
로 환산이 필요한 경우, 환산된 수량은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
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19 : 수량단위

필드명 : QTY

설명 : 수량단위를 입력하십시오. 판매와 비용 발생시 여러 단위가 사
용되는 경우 주요 단위와 관련된 단위기준으로 데이
터를 보고하고, 별개의 필드를 추가하여 발생 단위기준의 값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0 : 송장금액

필드명 : SALESAM

설명 : 최초의 고객에 대한 거래동화기준 세후 매출액을 보고하고 단
위를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21 : 조가치무할인액

필드명 : EPAY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조가치무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
객별 및 유동경로별 다른 할인 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를 포함하여 커서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준 거래

필드번호 25 : 반품수량

필드명 : CREDITTY

설명 : 반품수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6 : 반품금액

필드명 : CREDITURN

설명 : 반품금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7 : 반품수량

필드명 : NETQTY

설명 : 반품수 수량을 보고하십시오.(즉, QTY - CREDITTY)

필드번호 28 : 반품수 금액

필드명 : NETVAL

설명 : 반품수 순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즉, NETSALES - CREDITURN)

필드번호 29 : 금액조정

필드명 : BILLADJ

설명 : 송장에서 직접 차감되는 할인(필드번호 21에서 23) 및 리베이
트(필드번호 30) 이외의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금액조정 및
할인이 있는 경우,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과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오. 금액조정의 유형이 다양한 경우 추가필드를 삽입하여 보고
하고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정은 양, 감액시
키는 경우는 음의 부호로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0 : 리베이트

필드명 : REBAT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판매 건물 리베이트를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동경로별 다른 리베이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커서의 리베이트 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준
거래를 통해 리베이트금액 산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필드번호 24 : 순송장금액

필드명 : NETSALES

설명 : 필드 21에서 23에 보고된 금액을 매출액(필드 20)에서 차감한
순 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3 : 기타할인액

필드명 : OTH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기타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추가 필드를 삽입하여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동경로별 다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커서의 할
인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준 거래를 통해 할인액 산출 방법
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사
를 제공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
감하여 커서가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드번호 22 : 수량할인액

필드명 : QTYDISC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수량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필 수량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수량의 단위가 달라 단위기준으
로 환산이 필요한 경우, 환산된 수량은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
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드 번호 21 : 수량단위

필드명 : QTY

설명 : 수량단위를 입력하십시오. 판매와 비용 발생시 여러 단위가 사

용되는 경우 주요 단위와 관련된 단위기준으로 데이

터를 보고하고, 별개의 필드를 추가하여 발생 단위기준의 값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0 : 송장금액

필드명 : SALESAM

설명 : 최초의 고객에 대한 거래동화기준 세후 매출액을 보고하고 단

위를 표시하십시오.

필드번호 19 : 수량단위

필드명 : QTY

설명 : 수량단위를 입력하십시오. 판매와 비용 발생시 여러 단위가 사

용되는 경우 주요 단위와 관련된 단위기준으로 데이

터를 보고하고, 별개의 필드를 추가하여 발생 단위기준의 값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8 : 매출량

필드명 : QTY

설명 : 매출량을 보고하십시오. 각 출하 기준 혹은 상한수량의 행별

필 수량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수량의 단위가 달라 단위기준으

로 환산이 필요한 경우, 환산된 수량은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

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17 : 제품종류

필드명 : CRA

설명 : 제품의 등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16 : 매출액

필드명 : NETVAL

설명 : 반품수 순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즉, NETSALES - CREDITURN)

필드번호 28 : 반품수 금액

필드명 : NETVAL

설명 : 반품수 수량을 보고하십시오.(즉, QTY - CREDITTY)

필드번호 27 : 반품수량

필드명 : NETQTY

설명 : 반품수 수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6 : 반품금액

필드명 : CREDITURN

설명 : 반품금액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5 : 반품수량

필드명 : CREDITTY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조가치무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고

객별 및 유동경로별 다른 할인 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를 포함하여 커서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준 거래

를 통해 리베이트금액 산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필드번호 30 : 리베이트

필드명 : REBAT

설명 : 송장에서 차감되지 않는 판매 건물 리베이트를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동경로별 다른 리베이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커서의 리베이트 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준
거래를 통해 리베이트금액 산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필드번호 33 :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INWARE

설명 : 창고보관비용을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은 공
장에서 발생하는 보관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금액
을 제외합니다. 커서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시스템의 운
영 방식과 창고의 위치를 설명하십시오. 고객을 위해 창고 용
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 리스트와 함께 계
공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창고가 타 회
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운영회사와 커서의 관계를 설명하

필드번호 31 : 간접세

필드명 : INDIRECT

설명 : 각 판매 건물과 관련된 발생한 간접세를 보고하고, 어느 계
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설명하십시오. 각자의 세금항목에 대하
여 세금의 부과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
을 첨부하십시오. 또한 각 세금항목의 계산방법, 정산방법, 담
부와 관련된 서무도 첨부하십시오.

필드번호 32 : 송장에서 물류창고까지 내물운반비

필드명 : INLFTW

설명 : 커서의 공장에서 창고(또는 중간 경유지)까지의 운반비금액을
보고하십시오. 공장에서의 항구까지의 운반비는 필드 번호 34번
에 보고하십시오. 운송업체(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송업체와 맺은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
출하고, 배송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여러 항목이 동일
운송 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배부한 경우 별개 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본
사 소유의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3 :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INWARE

설명 : 창고보관비용을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은 공
장에서 발생하는 보관비용 및 고객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금액
을 제외합니다. 커서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시스템의 운
영 방식과 창고의 위치를 설명하십시오. 고객을 위해 창고 용
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 리스트와 함께 계
공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창고가 타 회
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운영회사와 커서의 관계를 설명하

참시오.

필드번호 34 : 공장/물류창고에서 항구까지 내륙운반비

필드명 : INLFT

설명 : 컨서가 조사대상물품을 항구까지 운송하기 위해 발생한 운반비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운송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여러 항목이 동일 운송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매부

한 경우 발생단위에 근거하여 배부방법에 대한 설명

를 제공하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송업체와 맺은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고, 배송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본

사 소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방

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5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필드명 : INHANDLE

설명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

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6 : 보험료

필드명 : INSUR

설명 :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금액을 보고하고, 계산방식을 설

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7 : 해상운반비

필드명 : OCREIGHT

설명 : 수출항에서 한국까지 배송을 위해 발생한 운반비를 보고하십시오

오. 운송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십

시오. 해당 비용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8 : 해상보험료

필드명 : OCINSUR

설명 : 단기자음이자를 사용한 신용비용을 계산하십시오. 귀사가 적

계별 매출권의 일일원과 출원인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용한 단기자음이자를 관련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신용비용은

계별 매출권의 평균회전일수를 기준으로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45 : 신용기간

필드명 : CREPRD

설명 : 위 신용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일수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6 : 은행수수료

필드명 : BANCARGE

설명 : 한국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시 발생한 은행수료를 보고

하십시오. 은행수료의 항목이 다양한 경우 각 항목 별 설명

을 제공하십시오. 은행별 수수료가 다른 경우 은행별 내역을

보여주는 자표를 제출하고 이 필드에 보고된 비용의 계산 방식

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7 : 판매보증비용

필드명 : WARR

설명 : 판매보증비용을 보고하십시오. 배상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

당 금액을 제외한 후 보고하십시오. 적된 3 회계 연도 동안의

인도별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판매보증비용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비용의 산출방법과 근거를 명시하십시오. 이러한 비용이 조

사대상물품의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또는 여러 물품에

공동적으로 발생된 비용이라면 관련금액을 배분한 방법에 대한

여 설명하십시오. 판매보증 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 등의 문

서를 제출하십시오. 거래건별파일에 제시된 보증비용의 계산내

역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8 : 기술지원 및 서비스비용

필드명 : AFTERAL

설명 : 수출국항구에서 한국항구까지 발생한 해상보험료 금액을 보고

하십시오. 해당 비용계산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9 : 한국내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필드명 : KRCHARGE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핸들링,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금액을 보

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0 : 한국내 항구에서 물류창고까지 운반비

필드명 : KINLFPW

설명 : 한국물류관 후 물류창고까지 발생한 운반비 금액을 보고하고, 해

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1 : 한국내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KRWARE

설명 : 창고보관비용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

은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회수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입

니다.

필드번호 42 : 항구/물류창고에서 고객까지 운반비

필드명 : KINLFWC

설명 : 한국내 항구 또는 물류창고에서 고객까지 발생한 운반비 금액

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3 : 한국내 보험료

필드명 : KRINSUR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 금액을 보고하고, 계산 방식을 설

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4 : 신용비용

필드명 : CREDIT

설명 : 단기자음이자를 사용한 신용비용을 계산하십시오. 귀사가 적

계별 매출권의 일일원과 출원인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용한 단기자음이자를 관련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신용비용은

계별 매출권의 평균회전일수를 기준으로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45 : 신용기간

필드명 : CREPRD

설명 : 위 신용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일수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6 : 은행수수료

필드명 : BANCARGE

설명 : 한국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시 발생한 은행수료를 보고

하십시오. 은행수료의 항목이 다양한 경우 각 항목 별 설명

을 제공하십시오. 은행별 수수료가 다른 경우 은행별 내역을

보여주는 자표를 제출하고 이 필드에 보고된 비용의 계산 방식

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47 : 판매보증비용

필드명 : WARR

설명 : 판매보증비용을 보고하십시오. 배상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

당 금액을 제외한 후 보고하십시오. 적된 3 회계 연도 동안의

인도별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판매보증비용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비용의 산출방법과 근거를 명시하십시오. 이러한 비용이 조

사대상물품의 일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무역별도 별도의

필드에 보고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조건과 수수료가 결정되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가 판매회사인지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수수료 지급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0 : 판매대행사

필드명 : SELAGEN

설명 : 판매 대행업체의 이름 또는 내부 관리 코드를 보고하십시오.

여러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일체별 수수료율 및 관계자(회

사) 여부를 표시한 리스트를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51 : 관세 및 물관비용

필드명 : DTICREAR

설명 : 수입통관시 선제 부당한 관세액과 물관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고하고, 계산방식을 보여주는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52 : 포장비

필드명 : PACK

설명 : 한국 수출을 위해 발생한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비에는

제표비, 인건비 및 가공비가 포함됩니다. 여러 공장에서 포장

비가 발생한 경우 공장별 가중평균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

장 자체비, 인건비, 가공비 별 계산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포장

자체비의 경우 소요되는 자체 리스트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명 : SALDATE
필드번호 5 : 판매일

설명 : 판매건별 송장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명 : INVDAT
필드번호 4 : 상업송장일자

설명 : 송장에 표시되는 제품모델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명 : MODEL
필드번호 3 : 모델명

설명 : 회계관리 목적으로 회사에서 부여한 제품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명 : PRODCOD
필드번호 2 : 제품코드

합니다.

되는 경우 수입당시 제품용 기준으로 CCN 번호를 작성하여야

설명 : C-1에 따라 CCN 번호를 작성하십시오. 한국 내에서 추가 가공
필드명 : CCN

필드번호 1 : Control Code Number

또 동일한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설명 : 각 매출건별트 일련번호를 부여하십시오. 이 번호는 타 정보에

필드명 : SN

필드번호 0 : 일련번호

파일명 : DMSALE

F-2 내수판매의 파일 포맷

관련 조정사항을 표시하는 차트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10 : 인도조건

필드명 : DEL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인도조건(예 : FOB, C&F, CIF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정보로 인도조건이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9 : 지급조건

필드명 : PAYTERM

설명 : 거래처와 합의한 지급조건(예 : 일괄지급, 30일 후 지급 등)을 입력하십시오. 판매정보로 지급조건이 차이가 있다면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조기지급 할인이나 지체상금을 부과 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필드번호 8 : 매입일금일

필드명 : PAYDATE

설명 : 판매대금 일금일용 보고하고 해당 일금일을 결정하기 위해 사
필드번호 7 : 출하일

필드명 : SHIPDATE

설명 : 공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고객에게 출고된 일자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6 : 상업송장번호

필드명 : INVNUM

설명 : 상업송장번호를 보고하십시오. 또한 송장번호의 생성제거와 연
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5 : 상업송장번호

설명 : 송장일자와 다른 경우에만 보고하십시오. 판매일 보고에 여러
움이 있는 경우 담당 조사관과 연락하십시오.

십시오.

설명 : 회사가 제조자가 아닌 경우 제조자 명을 표시하십시오. 제조자
를 포르는 경우 회사에게 대상물품을 공급한 공급자를 표시하

필드번호 37 : 제조자

필드명 : MFR

설명 : 수입자를 기재하십시오.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확인 안 됨"으로 표시하십시오.

필드명 : IMPORTER

필드번호 56 : 수입상

설명 : 한국 통관시 보고한 파세가격을 보고하십시오. CIF금액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식과 증빙을 제출하십시오.

필드명 : CIFVAL

필드번호 55 : 파세가격

먼 그것을 기재하고 그 원천을 밝히십시오.

표와 중앙은행환율을 제시하십시오. 또한 비공식 환율이 있다
출과 관련된 최근 2년 동안의 외화의 공식매도율과 매입률 자

수에는 각국의 환율변동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수
하십시오. 외화환산과 관련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설명 : 송장금액을 회계장부 표시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을 기재
필드명 : EXRATE

필드번호 54 : 환율

장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비, 인건비 및 가공비가 포함됩니다. 한국 내에서 이뤄지는 포
설명 : 한국 내에서 발생한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비에는 재료

필드명 : KPACK

필드번호 53 : 한국 내 포장비

6) 동상 대한민국 수출물량의 5%미만인 경우를 송신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나 실질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3. 내수가격과 관련된 조정사항과 연관이 있는 모든 계정을 열거하고

경상가격 여부를 입증하십시오.

목이 있는 경우 조정사항별 관련된 판매자(회사)리스트를 제공하고
세트를 제출하십시오. 조정사항 송 판매자(회사)에 의해 발생한 항
하십시오. 표한거래에 대하여 조정사항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 한
2. "DMSALE" 파일에는 건별 판매자료와 그에 대한 조정사항을 제시

파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전체 매출액에서 "DMSALE" 파일에 보고된 매출액을 구별해 내는

이 부분에서는 회사가 판매자(회사) / 비판매자(회사)에게 직접 판매
한 건별 매출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F-1. 내수판매 및 조정

조사대상기간 내에 포함되는 판매인지 여부는 상업송장일용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매일에 대한 정의는 부록1을 참고하십시오.

의하하십시오.

해당할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온 질문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내에 문
나 한국을 제외한 타국가로의 수출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매가 없거나 출판하지 않은 경우, 무역역Section C의 구성가격이 판
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판매가격과 가격책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판매가격과 가격책

Section F에서는 내수시장에서 조사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사의

Section F. 내수시장 판매

핀드번호 11 : 고객코드
핀드명 : CUSTNUM
설명 : 각 판매권별 고객코드를 보고하고 귀사의 고객코드, 주소와 이
름이 기재된 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십시오.

핀드번호 12 : 고객구분
핀드명 : CUSCAT
설명 : 아래의 코드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십시오.

1 = 제조업자
2 = 상사
3 = 도매상
4 = 소매상
5 - n = 기타

핀드번호 13 : 유통형태
핀드명 : CHANNEL
설명 : B4에서 제시한 유통 형태를 보고하십시오.

핀드번호 14 : 고객구분(판매자(회사)여부)
핀드명 : CUSRET
설명 : 아래의 코드를 이용하여 판매자(회사)를 구분하십시오.

U = 비판매자(회사)
A = 판매자(회사)

핀드번호 15 : 주문서 또는 계약 번호
핀드명 : ORDNUM
설명 : 주문서 또는 계약번호를 보고하십시오. 운영번호의 생성체제와
번호별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핀드번호 16 : 계통동부
핀드명 : GRA
설명 :

핀드번호 22 : 기타할인액
핀드명 : OTHDISC
설명 : 운영에서 차감되는 기타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추가필드를 삽입하여 작성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형태별 다
른 할인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
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준 거래를 통해 할인의 산출방법
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
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운영형태 직접 추려하여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핀드번호 23 : 순충당금액
핀드명 : NETSALES
설명 : 필드 20에서 22에 보고된 금액을 매출액(필드 19)에서 차감한
순 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

핀드번호 24 : 반품수량
핀드명 : CREDQTY
설명 : 반품수량을 보고하십시오.

핀드번호 25 : 반품금액
핀드명 : CREDITURN
설명 : 반품금액을 보고하십시오.

핀드번호 29 : 리베이트
핀드명 : REBAT
설명 : 운영에서 차감되지 않는 판매 리베이트를 보고하십시오.
고객별 및 유통형태별 다른 리베이트 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귀사의 리베이트 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준
거래를 통해 리베이트금액 산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출하십시오.

핀드번호 30 : 물리적 특성 차이
핀드명 : PHYDIFF
설명 : 각 모델별로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판명하기 위한 조정금액을
보고 하십시오. 조정금액은 두 모델의 차이에 대한 조정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산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물리적 특성 차이에 대

핀드번호 26 : 반품수
핀드명 : NETQTY
설명 : 반품수 수량을 보고하십시오.(즉, QTY - CREDQTY)

핀드번호 27 : 반품금
핀드명 : NETVAL
설명 : 반품수 순매출액을 보고하십시오.(즉, NETSALES - CREDITURN)

핀드번호 28 : 금액조정
핀드명 : BILRADJ
설명 : 운영에서 직접 차감되는 할인(핀드번호 20서 22) 및 리베이트
(핀드번호 29) 이외의 운영에서 차감되지 않는 금액조정 및 할
인이 있는 경우,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과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금액 조정의 유형이 다양한 경우 추가필드를 삽입하여 보고하
고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정은 양, 감액시키
는 경우는 음의 부호로 보고하십시오.

핀드번호 29 : 리베이트
핀드번호 30 : 물리적 특성 차이
핀드명 : PHYDIFF
설명 : 각 모델별로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판명하기 위한 조정금액을
보고 하십시오. 조정금액은 두 모델의 차이에 대한 조정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산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물리적 특성 차이에 대

핀드번호 20 : 조가지급할인액
핀드명 : EPAYDISC
설명 : 운영에서 차감되는 고객별 조가지급할인액을 보고하십시오. 그
래별 및 유통형태별 다른 할인 정책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귀사의 할인관련 정책을 설명하십시오. 표준 거래를
통해 할인의 산출방법을 설명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할인관련
고객과 맺은 계약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할인
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항목으로서, 해당 운영형태
직접 추려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핀드번호 19 : 운영금액
핀드명 : SALESAM
설명 : 최초의 고객에 대한 세후 매출액을 보고하고 단위를 표시하십
시오.

한 세부목차를 항목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귀사가 추정하는 각 차이별로,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31 : 간접세

필드명 : INDTAX

설명 : 각 판매 간접세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세를 보고하고, 어느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설명하십시오. 각각의 세금항목에 대하여

여 세금의 부과와 관련된 관계별명의 한글 또는 영문 설명은 필수로 기재하십시오. 또한 각 세금항목의 계산방법, 정산방법, 납부와 관련된 서류도 첨부하십시오.

필드번호 32 : 공장에서 물류창고까지 내부운반비

필드명 : INLFTW

설명 : 귀사의 공장에서 창고(또는 중간 경유지)까지의 운반비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운송 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십시오. 여러 항목이 동일 운송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대부분 경유 발생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십시오. 운사 소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 계산방법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3 : 물류창고비용

필드명 : INWARE

설명 : 창고 보관비용을 보고하십시오. 이 필드에 보고되는 비용은 공장

에서 발생하는 보관비용 및 그외로부터 회수가되는 금액을 제외하는 비용입니다. 귀사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창고의 위치를 설명하십시오. 그대를 위해 창고 용역을 제공하는 창고의 위치를 제공하는 그대 리스트와 함께 제공 용역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창고가 타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운영 회사와 귀사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귀사가 이 필드에 보고된 비용을 계산한 방식을 첨부파일로 제출하십시오.

필드번호 34 : 운정/물류창고에서 그외까지 내부운반비

필드명 : INLFTP

설명 : 귀사가 조사대상물품을 그외까지 운송하기 위해 발생한 운반비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운송형태(수단)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십시오. 여러 항목이 동일 운송수단으로 운반되어 운반비를 대부분 경유 발생단위에 근거하여 배부하고 배부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운송을 위해 사용한 배송업체와 맺은 계약서 및 운임표를 제출하고, 배송업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본

필드번호 35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필드명 : INHANDLE

설명 : 물품취급비, 하역 및 기타부대비용 금액을 보고하고 해당 금액

을 산출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필드번호 36 : 보험료

필드명 : ININSUR

설명 :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보험료금액을 보고하고, 계산 방식을

필드번호 37 : 신용비용

필드명 : CREDIT

설명 : 단기차입이자율을 사용한 신용비용을 계산하십시오. 귀사가

적용한 단기차입이자율 관련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신용비용은 개별 매출건의 인금일과 출하일의 차이로 기준으로 계산하되,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의 평균회전일수를 기준으로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드번호 42 : 수수료

필드명 : COMM

설명 :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지급수수료와 그 조건을 제시하지

오. 여러 종류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종류별로 별도의 필드에

필드번호 43 : 판매 대행사

필드명 : SELAGEN

설명 : 판매 대행업체의 이름 또는 내부관리코드를 보고하십시오. 여

필드번호 44 : 포장비

필드명 : PACK

설명 : 내수판매를 위해 발생한 포장비를 보고하십시오. 포장비에는

필드번호 45 : 제조자

필드명 : MFR

설명 : 귀사가 제조자가 아닌 경우 제조자 명을 표시하십시오. 제조자

를 모르는 경우 귀사에게 대상물품을 공급한 공급자를 표시하

필드번호 41 : 기술지원 및 서비스비용

필드명 : AFTERSAL

설명 : 기술서비스 비용 금액을 보고하십시오. 배상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보고하십시오. 거래처에 제공되는

서비스, 수리, 상담 등의 서비스 내역을 설명하십시오.

회사의 판매자(회사)가 회사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한 후 추가가 공하여 비조사대상물품을 생산, 판매 한 경우는 판매자(회사)가 동 제 물품 소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외의 경우 판매자(회사)가 해당 조사대상물품을 재판매 한 것으로 봅니다.

1. 내수시장에서 회사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한 판매자(회사)리스트를 제공하고, 판매자(회사)를 통한 재판매 비율을 제출하십시오.

2. 한국 외에 위치한 회사의 판매자(회사)가 회사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DMSALE"를 제출하여야 합니다.(A-2.9 참조). 이때, 매출액은 재판매한 판매자(회사)가 최초의 비판매자(회사)에게 판매한 금액을 보고하여야 하며, 재판매한 판매자(회사)가 지출한 비용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3. 판매자(회사)가 판매보증 서비스, 기술 지원 서비스, 운송 등의 서비스를 비판매자(회사)에게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제공되는지 설명하십시오.

4. 내수시장에서 회사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소비한 판매자(회사)리스트를 제공하고, 해당 판매 비율을 제출하십시오. 판매자(회사)에 대한 판매에 적용되는 가격정책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가격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관리비 및 이윤은 동 제물품 이 마진 내수시장에서 판매된 것과 같은 상황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귀사가 구성가격을 제출하는 경우 계산에 사용된 원천자료와 함께 제 산 방식 원 명 자료를 제출하시고 아래의 표를 작성하십시오. 아래 표의 필드는 "COM" 파일의 필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CCN	COM	판매 및 일반관리비	비용비율	CV profit	CV

4. 제조원가와 생산원가의 보고대상기간

본장의 제조원가, 생산원가에 대한 답변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귀사의 의해서 발생한 정상적인 회계기록과의 실제원가에 근거해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5. 가중평균 제조원가, 생산원가

생산원가, 제조원가는 각 CCN별 생산수량을 가중요소로 하여 평균화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이상의 생산시설에서 동 물품을 생산한다면 생산원가, 제조원가는 각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가중평균하여야 합니다.

G-2. 일반사항

다음 항목의 질문에 대해서 완전하고 자세한 답변을 하십시오.

1. 제품 설명

7) 만약 귀사의 회계연도가 조사대상기간과 3개월 이하로 차이가 난다면, 귀사의 회계연도에 근거한 자료로 제출한 것(인)의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역위의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십시오.

연월	부일요소1			부일요소2			부일요소3		
	수량	금액	COM 대비 비율	수량	금액	COM 대비 비율	수량	금액	COM 대비 비율

(단위 :)

-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주요 투입요소 3개에 대해(예 : 원재료, 에너지 비용 등) 다음의 양식에 맞춰 구매수량 및 금액을 제출하십시오. 주요 투입요소는 생산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원가 요소를 의미합니다.
-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을 위한 특정 원재료, 노무, 전기 또는 다른 동력, 기계와 설비, 하청계약,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투입요소를 나열하고 이 중 판매자(회사)로부터 조달되는 투입요소를 구분하십시오.
- 조사대상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생산품, 스크랩 혹은 부산물 등이 생산된다면 이를 나열하십시오.
- 생산공정을 통하여 공정산출물 또는 작업토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조사대상물품의 생산공정에 대한 흐름도를 제공하십시오.
- 회사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생산하는 모든 종류의 생산품을 구분하여 주십시오.

조사대상물품의 생산공정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2. 생산과정

귀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십시오.

3. 구성가액(Constructed Value)

구성가액은 귀사가 한국시장에 판매한 조사대상물품의 CCN별 가중평균 생산원가에 내수시장의 이윤을 더한 금액입니다. 구성가액은 정상

2. 생산원가(Cost of production)

생산원가는 귀사에 의해서 판매된 조사대상물품의 CCN별 가중평균 생산원가를 의미합니다. 무역위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 한국 및 기타국 시장에서 판매된 모든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단위당 매출원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역위는 내수판매를 위한 구성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생산원가와 내수판매가격을 비교할 것입니다.

1. 제조원가(Cost of manufacturing)

본 장은 귀사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내수판매, 한국 및 기타국으로의 수출판매와 관련된 생산원가 및 구성가액 보고내용을 설명합니다. 작성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본 질문서를 받은 후 10영업일 내에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십시오.

G-1. 일반설명

1. 담변방법의 기준

제조원가,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은 회사의 정상적인 회계기록에 기초해서 산정하고 그 기록은 수출국(또는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C에 대한 담변은 단위당 제조원가,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 기록 및 관련 재무제표와도 일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 기록 및 관련 재무제표와도 일치하여야 하고, Section C에 대한 담변은 단위당 제조원가, 생산원가 및 구성가격의

G.3. 담변 형식

- f. 조사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 원가계산기간이 조기가동기간에 해당 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조기가동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정사항을 제출하십시오.
- e. 재무회계 목적과 원가회계 목적상 각각 다르게 평가되는 생산원가가 있다면 모두 설명하십시오.
- d.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산물 또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원가회계제도 하에서 동 물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하십시오.
- c. 각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처리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설명 하십시오.
- b.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산물 또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원가회계제도 하에서 동 물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 하십시오.
- a.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산물 또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원가회계제도 하에서 동 물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설명 하십시오.

1. 감사보고서상의 손익계산서의 원가와 회사 회계 장부(시산표, 보조

시산표).

b. 회사의 손익계산서와 관련평조사를 위하여 제출한 원가사이에 차이 를 설명하는 자료를 아래의 지침에 따라 제출하십시오. 자료는 회 사의 재무제표에서 시작하여, 최종 보고된 원가 데이터까지 단계별 접근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 원천 데이터를 표시하

vi. 판매비(회사가 제출한 수직에 대한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vii. 판매비(회사가 제출한 수직에 대한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viii. 판매비(회사가 제출한 수직에 대한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v. 일반관리비(회사가 장손과 장익으로 처리한 항목을 포함한 계정 과목별 금액을 제공) iv. 연구개발비

iii. 제조간접비(회사가 제출한 간접비금액에 대한 계정과목별 금액을 제공) ii. 노무비

i. 원재료 시오.

a. 다음의 각 원가요소에 대해 단위당 제조원가와 생산원가를 계산하

v. 각 회계기간동안 생산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유리한 차이 또는 불

iv. 표준 또는 예산원가(예 : 투입가격과 사용량)가 계산되는 방법 및

iii. 각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 ii. 각 차이를 계산하고 기록하는 대상기간

i. 회사의 원가계산제도 하에서 기록되고 있는 차이분석의 종류

iii. 회사의 원가회계제도와 관련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록 및 관리 보

a. 회계제도에 대한 답변시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십시오.

3. 원가계산제도 및 회계정책

vi. 비관계자(회사)로부터 구매된 투입요소별 평균구매단가, 조사대상

v. 투입요소별 조사대상기간 동안 비관계자(회사)로부터 구매된 총수

iv. 관계자(회사)인 공급사의 COP(제조원가와 판매및일반관리비의 합

iii. 평균구매단가 ii. 투입요소 및 관계자(회사) 별 조사대상기간 동안 총 구매금액

i. 투입요소 및 관계자(회사) 별 조사대상기간 동안 총 구매수량

요소 별로 다음의 표를 완성하십시오.

요소 별로 다음의 표를 완성하십시오.

구분	공급자의	관계	수평	수평	수평	수평	수평	수평	수평
요소1	관계자(회사)	A	(a)	(b)	(c=a/b)	(d)	(e=a/d)	(f)	(g=a/f)
비관계자(회사)	비관계자(회사)	U	(e)	(f)	(g=f/e)	(h)	(i=f/h)	(j)	(k=f/j)
공급자의	공급자의	공급자의	공급자의	공급자의	공급자의	공급자의	공급자의	공급자의	공급자의

(단위 :)

<10은 물음표이다>

1. 생산공정
 - a. 귀사의 추가가공 공정내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b. 동 설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 리스트를 제공하고 제품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c. 조사대상물품의 추가가공 공정에 대한 흐름도를 제출하십시오.
 - d. 추가가공 공정을 통하여 공정산출물 또는 작업토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e.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을 위한 특정 원재료, 노무, 전기 또는 다른 동력, 기계와 설비, 하청계약,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투입요소 리스트를 제출하십시오.
 - f. 주요 투입요소 중 판매자(회사)로부터 구매할 내역이 있는 경우 투입요소 리스트를 제출하고 아래의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 판매자(회사)가 귀사에 청구한 금액
 - * 판매자(회사)가 비판매자(회사)에게 청구한 내역 또는 귀사가 비판매자(회사)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구매할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보고
 - 위의 판매자 청구금액 및 추가가공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원원자료

2. 원가예산제도 및 회계정책
 - a. 귀사의 원가회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또한 추가가공시 발생하는 원가를 식별하여 장부에 보고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 b. 각 공정별 직접, 간접 코스트 센터리스트를 제공하고, 각 코스트 센터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설명하십시오.
 - c. 만약 귀사의 원가회계제도가 표준원가 또는 예산원가에 기초하고 있다면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 i. 귀사의 원가예산제도 하에서 기록되고 있는 차이분석의 종류
 - ii. 각 차이를 계산하고 기록하는 대상기간
 - iii. 각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
 - iv. 표준 또는 예산원가(예, 투입가액과 사용량)가 계산되는 방법 및 귀사가 이러한 표준 또는 예산원가를 개정하는 빈도 그리고 가장 최근 조사대상물품과 관련된 투입요소의 가격 및 투입량정보를 계산한 일자
 - v. 각 회계기간 동안 생산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유리한 차이 또는 불리한 차이의 처리(조원도 차이 포함) (예 : 매출원가에 배분,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에 안분 등)
 - d. 재무회계시스템과 원가회계시스템이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원가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3. 원가내역
 - a. 귀사의 단위당 추가가공원가의 계산내역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답하십시오.
 - i. 원재료
 - a. 다음의 각 원가요소에 대해 단위당 추가가공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귀사가 사용하는 원가 및 제무회계기록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ii. 다음의 회계 기록 및 관련 제무회계표와도 일치하여야 하고, 귀사에서 사용하는 회계 기록 및 관련 제무회계표와도 일치하여야 하고, 귀사가 사용한 시스템은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가가공원가 계산시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합니다. 만약 표준원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추가가공원가 계산시에도 역시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야 합니다.
 - 귀사는 단위당 추가가공원가를 귀사의 실제 회계기록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1. 답변방법의 기술
 - 귀사의 추가가공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 a. 다음의 각 원가요소에 대해 단위당 추가가공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귀사가 사용하는 원가 및 제무회계기록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i. 원재료
 - a. 다음의 각 원가요소에 대해 CCN에 대하여, 재로비, 노무비, 변동 및 고정제조경비 산출방식을 설명하십시오. 귀사가 표준원가를 사용하는 경우, 원가차이를 배부하는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 b. 판매 및 일반관리비용의 비율을 계산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 c. 순금융비용비율을 계산한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 항목명	항목코드	항목명
1	Control code	제출 코드
2	PROD COD	제품 코드
3	MODEL	제품 모델명
4	QTY SOLD	POI물량 (한국시장에서 판매된 조사대상물량의 매출량)
5	COM	POI물량 (한국시장에서 판매된 각 모델별의 단위당 COM)
6	SELL	한국판매액의 판매되어 발생한 비용
7	G&A	한국판매액의 판매되어 발생한 비용
8	FINANC	한국판매액의 판매되어 발생한 비용
9	R&D	한국판매액의 판매되어 발생한 비용
10	OTHER	기타 비용
11	SELL REL	6에서 10까지의 합계
12	SELL UNIT	단위당 판매관련 비용
13	COP UNIT	단위당 생산원가

파일이름 : EXFUCOP

필드명 : TOTCOMUNIT
설명 : 필드17 / 필드5

필드명 : DIRLAB
필드번호 8 : 직접노무비

필드명 : TOTSCRAP

필드번호 7 : 부산물

필드명 : DIRMAT
필드번호 6 : 직접재료비

필드명 : QTYPROD
설명 :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생산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5 : 생산수량

필드명 : QTY SOLD
설명 :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매출량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4 : 매출량

필드명 : MODEL
설명 : 용량에 표시되는 제품모델명을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3 : 모델명

필드명 : PROD COD
설명 : 회계관리 목적으로 회사에서 부여한 제품 코드를 보고하십시오.

필드번호 2 : 제품코드

필드명 : CCN
설명 : C-1에 따라 CCN번호를 작성하십시오.

필드번호 1 : Control Code Number

파일이름 : EXFUCOM

5. 파일은 각 자료에 분리, 연계, 공간 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경우 담당 조사원과 연락하십시오.

4. 데이터와 표는 MS-EXCEL 또는 동 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한 파일 포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의 표 양식이 필요한

경우 담당 조사원과 연락하십시오.

3. 담당자는 HWP, MS-WORD 또는 동 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한 파일 포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의 표 양식이 필요한

2. 모든 제출자료는 리스트를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제출일	
회사명	

1. 출력하여 제출한 자료는 CD 또는 USB로 다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 아래와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귀사는 모든 데이터를 다음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Section 1. 전산자료 준비 안내

필드번호 18 : 단위당 제품제조원가

설명 : 필드11 + 필드12 + 필드13 + 필드14 - 필드15 - 필드16

필드명 : TOTCOM

필드번호 17 : 제품제조원가

필드명 : ENDWTP

필드번호 16 : 기타 제품물

필드명 : TROTWTP

필드번호 15 : 타계정 출고

필드명 : TRINWTP

필드번호 14 : 타계정 입고

필드명 : PURCHWTP

필드번호 13 : 구매 제품물

필드명 : BEGWTP

필드번호 12 : 기초 제품물

설명 : 필드6 - 필드7 + 필드8 + 필드9 + 필드10

필드번호 11 : 제조원가

필드명 : SUBTOTPROD

필드명 : FOH

필드번호 10 : 고정제조경비

필드명 : VOH

필드번호 9 : 변동제조경비

원의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설명과 정의의를 첨부합니다.

관계자(회사)

아래에 행한다는 경우 관계자(회사)로 볼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가족 구성원 (2) 회사의 임원 또는 관리자 (3) 동업자 (4) 고용주와 그들의 고용인 (5) 연결된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5% 이상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6) 상대방을 통제하는 자와 통제 받는 상대방 (7) 직접 지배를 행사하는 자와 직접 지배 또는 공동 지배를 받는 자는 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원장이 귀사의 국내 시장의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영리적 위치에 있는 경우 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단계차이 조정

거래단계별 차이가 존재하는 지 판단하기 위해, 무역위는 유통시스템, 거래 분류, 판매활동 및 판매 관련 비용 발생 수준을 조사합니다. 대개는 유통경로가 다른 구매자들이나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다른 판매 활동을 하는 판매자가 있는 경우 다른 거래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거래단계를 차이가 만드는 거래단계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거래단계가 차이가 있는 경우 판매활동의 반드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온 온라인로 고객을 도매상, 소매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거래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임은 맞으나 반드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역위는 판매자의 판매 과정 전체를 고려하여 다른 거래단계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성가액(CV)

원천적으로 최초의 비관계자(회사)에 대한 판매가 한국 내 수입 전에 일어나는 판매의 경우 수출가액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제조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한국에 수출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 제조자의 판매가 원천 또는 계산의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초의 비관계자(회사)에 대한 무역상의 판매가 대상이 됩니다.

무역위는 수출가액과 구성수출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송장금액에 판매 관련 부대비용 등의 조정사항을 고려합니다. 이에 더해 구성수출가액의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한 판매 관련 비용, 추가가공원가 및 수익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한국 내 판매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한국 내 판매자(회사)의 활동과 관련 있습니다. 이를 비용 중 제조자나 수출자에 의해 보장 받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은 조정사항에서 제외됩니다.

이용 가능한 자료

이해관계자가 자료(정보) 접근을 또는 제약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자료(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신중하게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판정이나 최종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제출된 것이 발견되면 그 정보는 무시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덤핑조사과정에 원천적인 이해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덤핑

수출국 내에서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 (내수판매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및 정상적인 거래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으로 인하여 정상가격을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봅니다. 정상가격은 원산국에서의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판매 및 일반관리의비와 내수시장에서 발생하는 적정이익을 더해 산정 합니다.

비관계자(회사)

관계자(회사)로 정의할 수 있다면 비관계자(회사)로 간주됩니다. : 위의 관계자(회사)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생산원가(COP)

생산원가는 제조원가와 판매 및 일반관리의비를 포함합니다. 제부비용은 판매 및 일반관리의비의 일부입니다. 제조원가와 판매 및 일반관리의비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수출가액(FEP)과 구성수출가액(CEP)

한국으로 판매된 제품의 가격은 수출가액과 구성수출가액, 두 종류의 구성가액을 비교합니다. 수출가액과 구성수출가액 모두 국외의 최초 비관계자(회사)에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조비

구입자의 상표로 판매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를 말합니다.

무역대상표시 생산(OTM)

제조비는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에 발생한 모든 제조비를 포함합니다.

정상가격(Normal Value)

정상가격은 수출국에서 독립교역이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지급되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기초합니다. 수출국에서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경우의 정상가격은 다른 판매자나 생산자의 가격에 기초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은 제3국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CV) 설명 참조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는 간접노무비, 간가상비, 동력비, 수선유지비 등 조사대상물품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제조원가(COM)

제조원가는 제조비,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로 구성됩니다. 원재료

2010	200	300
2011		2012

2010	2011	2012
US\$ 100,000	US\$ 200,000	US\$ 300,000

이러한 해에 걸쳐 판권자를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판권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은 판권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모양 정도를 작성하기 위해 아래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2. 위사가 비공개된 담판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정보나 실제로 미팅 중인 기업에 대한 어떤 판단정보도 취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담판서에 사할별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는 공개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사유를 설명하라는 취지

1. 완성된 비공개문 답변서를 근거로 커사가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되
는 모든 정보를 삭제하여 공개문에 포함하십시오.

국가를 타면서 자선 사업 등의 사회에 따라 착수해주시요.

본 회의에서 대한 공개는 답변서는 모든 수출자, 수입자 및 한국 생산자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공개는 답변서는 비공개로 제출된 정보의 신원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부록 III. 각성 지침

(10) (17)

본인은 "회사"에 소속된 "직제, 이름"로서, 계층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아닌 원변환을 증명합니다.

부록 II. 자료의 처리에 관한 내용

무역위원회는 보물 정사적인 상거래에서 수출자나 생산자의 기적이

易如母

물상(정상)적인 상거래

臣等謹將該部議處各員分別開列
 欽此
 臣等謹將該部議處各員分別開列
 欽此

旧古天院

수확기초와 정산기초간 발생한 미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case별 물량의 차이, 수확비용과 간접비, 인건비, 판매가격차, 수확기간차, 운송, 보험, 환율변, 학제비용, 포장, 신용, A/S 비용, 복기산과 환산금리율, 파환한 가격미리액의 영향을 주며 요소의 차이가 고되므로 우 합니다. 판매시에서 파환을 요구하는 생산자 및 수확자는 가격미리액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ਫਰੀਦ

한편 평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조사개시문고문에 정의되어 있습
니다.

물류의 변화

바, 자선 노무비와 제조간접비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다. 다만, 현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현실을 만들어낸 만큼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한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한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

SC&A (SC&A)

관매 및 원관관리비는 생산원가의 일부분이며 원료 구입하여 제사하여
근 계층을 제외하고 비용비중을 포함합니다.

$$\begin{aligned} \text{제조원가} &= \text{재료비} + \text{직접 노동비} + \text{제조 경비비} \\ \text{생산원가} &= \text{제조원가} + \text{판매 및 일반관리비} \end{aligned}$$
$$|H| \leq |H_1| + |H_2| = 10 + 10 = 20$$

기립 정보가 단일 수직으로 표시되는 경우 백분율을 적용하여 변화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립정보 예시 : 회사의 COM이 USD 1000/Ton인 경우 비공개본의 요약 정보는 USD 1100/Ton으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기립정보이드로 설계지에서 +/- 10% 범위 안에서 조정되었음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기립정보가 수치가 아닌 문장인 경우, 요약하거나 이를 등을 제외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립정보 예시 : "A사로부터 수직가가 20% 낮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문장의 경우 비공개본의 요약정보는 "[고객 중 한곳]으로부터 수직가가 20% 낮다는 사실을 들었다"로 요약 될 수 있다.